

2024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4. 8.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추진 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I	특수교육의 개요	11
	1. 특수교육의 정의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15
II	2024년 특수교육 현황	19
	1. 주요 현황	21
	2. 특수학교 현황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27
	4. 순회교육 현황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29
III	2024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31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33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33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33
	(2) 특수학교 학생	34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6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37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38
	2) 특수교육기관 확충	39
	(1) 특수학교	39
	(2) 특수학급	42



CONTENTS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45
4)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47
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50
6) 장애 발견 진단·배치 체계 구축	53
7)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59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양성	59
(2)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직 연수	68
8)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71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75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75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76
3)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80
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82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86
1)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86
2)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89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91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93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02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09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13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113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17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118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118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120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122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3

5)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125
6)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130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132

Appendix **부록**

I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135
II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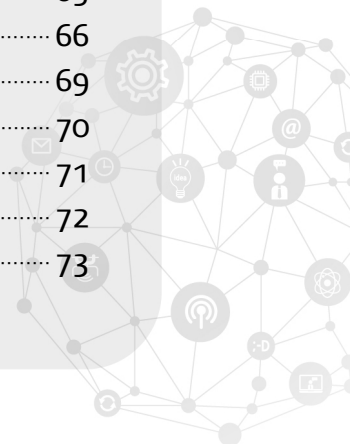


CONTENTS

표목차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14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15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15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15
〈표 1·5〉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15
〈표 1·6〉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수	15
〈표 1·7〉 연도별 학급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6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16
〈표 1·9〉 연도별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7
〈표 2·1〉 2024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21
〈표 2·2〉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2
〈표 2·3〉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3
〈표 2·4〉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23
〈표 2·5〉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24
〈표 2·6〉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현황	24
〈표 2·7〉 시·도별 설립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25
〈표 2·8〉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26
〈표 2·9〉 특수학급 현황	27
〈표 2·10〉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27
〈표 2·11〉 순회교육 현황	28
〈표 2·1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28
〈표 2·1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29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33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3〉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35
〈표 3·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36
〈표 3·6〉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6
〈표 3·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37
〈표 3·8〉 학교급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7

〈표 3·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38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39
〈표 3·11〉 설립별 및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39
〈표 3·12〉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40
〈표 3·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41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42
〈표 3·15〉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43
〈표 3·16〉 학교급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44
〈표 3·17〉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46
〈표 3·18〉 유아 특수교육기관 현황	47
〈표 3·19〉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47
〈표 3·20〉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48
〈표 3·21〉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49
〈표 3·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51
〈표 3·23〉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52
〈표 3·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54
〈표 3·25〉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55
〈표 3·26〉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56
〈표 3·27〉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57
〈표 3·2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58
〈표 3·29〉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60
〈표 3·30〉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칭하는 대학원) 현황	63
〈표 3·31〉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65
〈표 3·32〉 국·사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66
〈표 3·33〉 특수교육 담당 교원 자격 소지 현황	69
〈표 3·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70
〈표 3·3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71
〈표 3·36〉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72
〈표 3·37〉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73



CONTENTS

표목차

〈표 3·3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73
〈표 3·39〉 연도별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	74
〈표 3·4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75
〈표 3·41〉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77
〈표 3·42〉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현황	78
〈표 3·43〉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79
〈표 3·44〉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81
〈표 3·4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83
〈표 3·46〉 2023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	83
〈표 3·47〉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84
〈표 3·48〉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84
〈표 3·49〉 병원학교 운영 현황	87
〈표 3·50〉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현황	88
〈표 3·51〉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89
〈표 3·52〉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90
〈표 3·5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90
〈표 3·54〉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 활동 현황	91
〈표 3·55〉 특수학교 진로·직업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94
〈표 3·5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95
〈표 3·5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96
〈표 3·58〉 2024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97
〈표 3·59〉 2024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98
〈표 3·60〉 2024년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99
〈표 3·61〉 2024년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100
〈표 3·6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101
〈표 3·63〉 치료지원 현황	102
〈표 3·6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103
〈표 3·65〉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104
〈표 3·66〉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현황	105
〈표 3·67〉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106

〈표 3·68〉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107
〈표 3·69〉 2023년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0
〈표 3·70〉 2023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1
〈표 3·71〉 2023년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1
〈표 3·72〉 2023년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1
〈표 3·73〉 2023년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2
〈표 3·74〉 2024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114
〈표 3·7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115
〈표 3·76〉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116
〈표 3·77〉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117
〈표 3·78〉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119
〈표 3·79〉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용도서 관련 사업	121
〈표 3·80〉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122
〈표 3·81〉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3
〈표 3·82〉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125
〈표 3·83〉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127
〈표 3·84〉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130
〈표 3·85〉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131
〈표 3·86〉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133
〈표 3·87〉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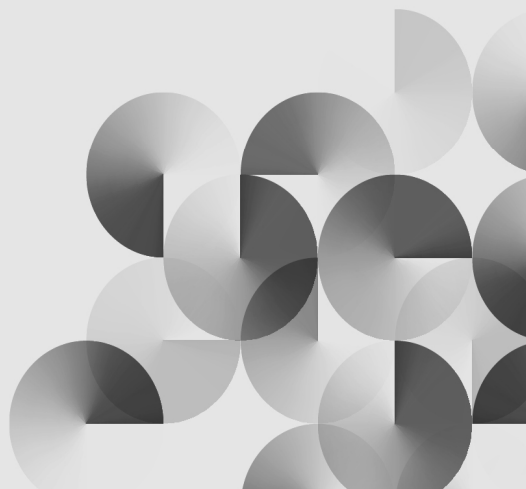


2024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I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I.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령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A)	'24(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5,907	
학교 과정 별	장애영아	680	742	656	549	582	532	439	369	359	407	63	
	유치원	4,219	4,744	5,186	5,437	5,630	5,989	6,536	7,197	8,248	8,781	-35	
	초등학교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48,448	51,585	54,283	2,698
	중학교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21,462	23,005	25,013	2,008
	고등학교	22,973	23,422	23,943	23,655	22,584	21,502	20,655	20,169	19,867	20,725	22,040	1,315
	전공과	4,063	4,460	4,602	4,989	5,165	5,382	5,445	5,393	5,311	5,200	5,058	-142
특수학교 수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644	
교원 수*	17,922	18,339	18,772	19,327	20,039	20,773	22,145	23,494	24,962	25,599	27,084	1,485	

* 국·공·사립,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67	'72	'77	'82	'87	'92	'97	'03	'06	'0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학교 수	22	38	51	65	95	103	114	137	143	150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72	'77	'82	'87	'92	'97	'00	'08	'15	'17	'18	'19	'20	'21	'22	'23	'24
학생 수	5,188	7,342	10,679	17,373	20,600	22,789	24,196	23,400	25,531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28,942	30,027

〈표 1·5〉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76	'80	'85	'90	'95	'08	'12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학급 수	350	355	1,601	3,181	3,440	6,352	8,927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표 1·6〉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82	'86	'91	'96	'08	'09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학생 수	7,665	30,876	28,795	26,087	37,857	39,380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61,993	65,966

〈표 1·7〉 연도별 학급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학급,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급 수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특수학교 학급	4,843	4,968	125	2.6	5,114	146	2.9	5,255	141	2.8	5,443	188	3.6	5,582	139	2.6
일반학교 특수학급	11,105	11,661	556	5.0	12,042	381	3.3	12,712	670	5.6	13,287	575	4.5	13,931	644	4.8
특수교육 지원센터	72	50	-22	-30.6	59	9	18.0	56	-3	-5.1	61	5	8.9	69	8	13.1
계	16,020	16,679	659	4.1	17,215	536	3.2	18,023	808	4.7	18,791	768	4.3	19,582	791	4.2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5	26,094 (29.6)	46,351 (52.6)	15,622 (17.7)	61,973 (70.4)	88,067 (100)
2016	25,961 (29.5)	46,645 (53.0)	15,344 (17.4)	61,989 (70.5)	87,950 (100)
2017	26,199 (29.3)	47,564 (53.2)	15,590 (17.4)	63,154 (70.7)	89,353 (100)
2018	26,337 (29.0)	48,848 (53.8)	15,595 (17.2)	64,443 (71.0)	90,780 (100)
2019	26,459 (28.5)	50,812 (54.7)	15,687 (16.9)	66,499 (71.5)	92,958 (100)
2020	26,615 (27.9)	52,744 (55.3)	16,061 (16.8)	68,805 (72.1)	95,420 (100)
2021	27,288 (27.8)	54,266 (55.3)	16,600 (16.9)	70,866 (72.2)	98,154 (100)
2022	28,233 (27.2)	57,948 (55.9)	17,514 (16.9)	75,462 (72.8)	103,695 (100)
2023	29,236 (26.7)	61,993 (56.5)	18,474 (16.8)	80,467 (73.3)	109,703 (100)
2024	30,390 (26.3)	65,966 (57.1)	19,254 (16.6)	85,220 (73.7)	115,610 (100.0)

〈표 1·9〉 연도별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2017	2,026 (2.3)	3,358 (3.8)	48,084 (53.8)	10,777 (12.1)	2,269 (2.5)	11,422 (12.8)	2,038 (2.3)	2,040 (2.3)	1,626 (1.8)	5,713 (6.4)	89,353 (100)
2018	1,981 (2.2)	3,268 (3.6)	48,747 (53.7)	10,439 (11.5)	2,221 (2.4)	12,156 (13.4)	2,081 (2.3)	1,627 (1.8)	1,758 (1.9)	6,502 (7.2)	90,780 (100)
2019	1,937 (2.1)	3,225 (3.5)	49,624 (53.4)	10,200 (11.0)	2,182 (2.3)	13,105 (14.1)	2,204 (2.4)	1,409 (1.5)	1,763 (1.9)	7,309 (7.9)	92,958 (100)
2020	1,908 (2.0)	3,132 (3.3)	50,693 (53.1)	9,928 (10.4)	1,993 (2.1)	13,917 (14.6)	2,404 (2.5)	1,226 (1.3)	1,785 (1.9)	8,434 (8.8)	95,420 (100)
2021	1,826 (1.9)	3,026 (3.1)	51,788 (52.8)	9,695 (9.9)	1,874 (1.9)	15,215 (15.5)	2,450 (2.5)	1,114 (1.1)	1,799 (1.8)	9,367 (9.5)	98,154 (100)
2022	1,753 (1.7)	2,961 (2.9)	53,718 (51.8)	9,639 (9.3)	1,865 (1.8)	17,024 (16.4)	2,622 (2.5)	1,078 (1.0)	1,948 (1.9)	11,087 (10.7)	103,695 (100)
2023	1,745 (1.6)	2,907 (2.6)	55,867 (50.9)	9,522 (8.7)	1,831 (1.7)	19,275 (17.6)	2,645 (2.4)	1,037 (0.9)	1,956 (1.8)	12,918 (11.8)	109,703 (100)
2024	1,698 (1.5)	2,842 (2.5)	57,883 (50.1)	9,263 (8.0)	1,785 (1.5)	22,194 (19.2)	2,600 (2.2)	1,065 (0.9)	1,979 (1.7)	14,301 (12.4)	115,610 (100.0)

통계 자료 분석

○ 학생 수 변화 추이

-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15,610명으로 2023년보다 5,907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는 85,220명(73.7%)으로 2023년보다 4,753명(5.9%)이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학생 비율이 각각 1.6%p, 0.6%p 증가함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교원 변화 추이

- 2024년 특수학교는 총 195교로 2023년보다 1교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총 13,931학급으로 2023년보다 644학급이 증가함
- 특수교육교원은 총 27,084명으로 2023년보다 1,485명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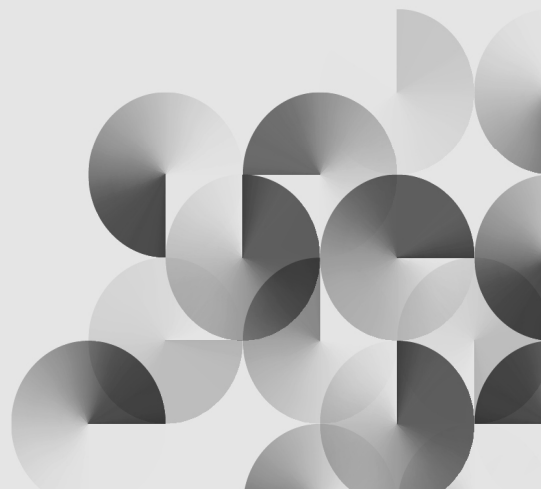


2024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II

2024년 특수교육 현황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II. 2024년 특수교육 현황

※ 기준일: 2024. 4. 1.

1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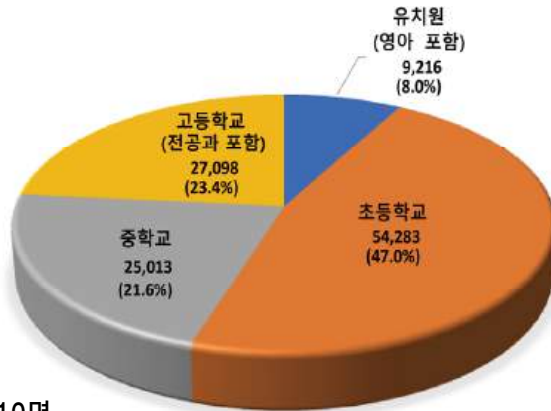
〈표 2·1〉 2024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단위: 명, 교, 학급)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30,027	65,966	19,254	363	115,610		
학생 수	장애 유형별	시각장애	1,025	213	459	1	1,698
		청각장애	535	666	1,630	11	2,842
		지적장애	14,777	37,299	5,798	9	57,883
		지체장애	3,784	3,097	2,308	74	9,263
		정서·행동장애	73	1,154	558	-	1,785
		자폐성장애	8,742	11,876	1,574	2	22,194
		의사소통장애	201	1,405	994	-	2,600
		학습장애	6	632	427	-	1,065
		건강장애	12	100	1,867	-	1,979
		발달지체	872	9,524	3,639	266	14,301
		계	30,027	65,966	19,254	363	115,610
학교 과정 별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장애영아	107	-	-	363	470
		유치원	905	5,803	2,038	-	8,746
		초등학교	10,316	35,042	8,925	-	54,283
		중학교	6,904	13,778	4,331	-	25,013
		고등학교	6,895	11,185	3,960	-	22,040
		전공과	4,900	158	-	-	5,058
		계	30,027	65,966	19,254	363	115,610
학교 및 센터 수	195	12,166		197	12,558		
		9,512	8,352				
학급 수	5,582	13,931	18,255	69	37,837		
특수학교(급) 교원 수*	10,441	14,904	-	1,739	27,084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	5,355	11,001	369	-	16,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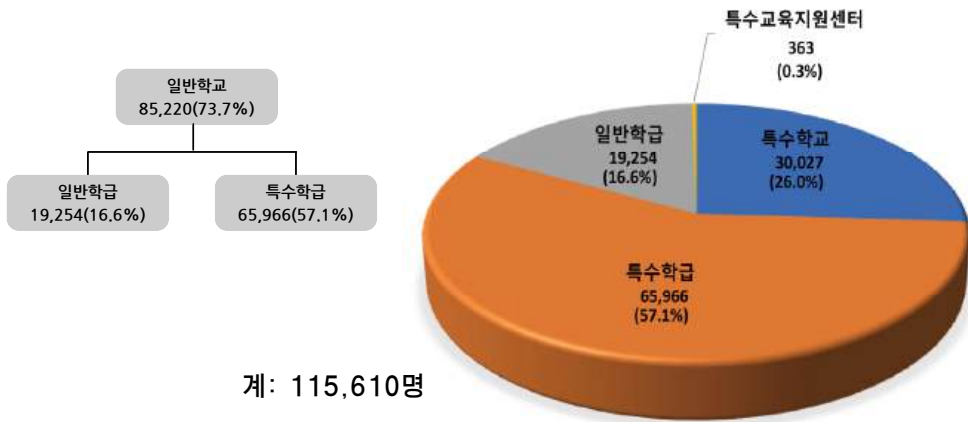
* 국·공·사립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계: 115,610명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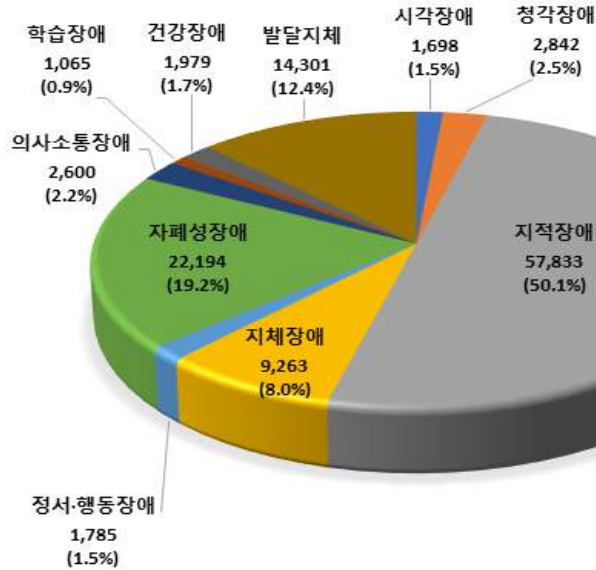
계: 115,610명

<표 2·2>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30,027 (26.0)	65,966 (57.1)	19,254 (16.6)	85,220 (73.7)	363 (0.3)	115,610 (100.0)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계: 115,610명

<표 2·3>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계
1,698 (1.5)	2,842 (2.5)	57,833 (50.1)	9,263 (8.0)	1,785 (1.5)	22,194 (19.2)	2,600 (2.2)	1,065 (0.9)	1,979 (1.7)	14,301 (12.4)	115,6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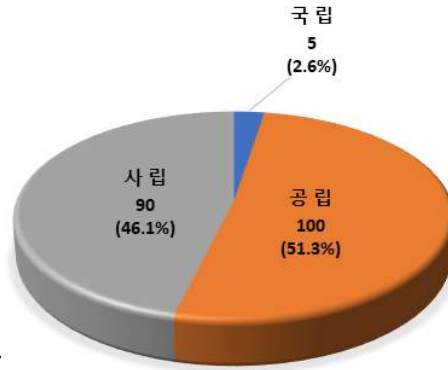
<표 2·4>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계
중도중복장애	지적장애	49	53	587	11	700
	자폐성장애	4	5	15	11	35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3			3

2 특수학교 현황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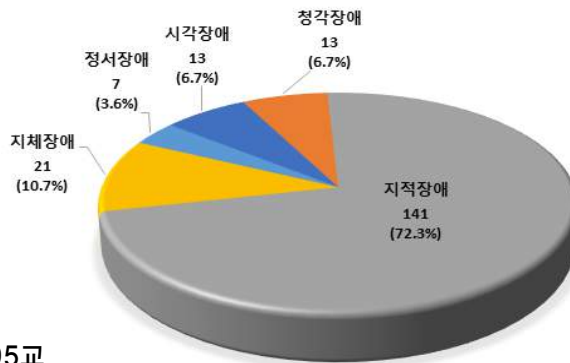
계: 195교

<표 2·5>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립	5	166	851	319
공립	100	3,412	18,506	6,351
사립	90	2,004	10,670	3,771
계	195	5,582	30,027	10,441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현황]



계: 195교

<표 2·6>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학교 수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교 수	13	13	141	21	7	195

〈표 2·7〉 시·도별 설립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설립별 학교 수				장애유형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11	18	32	3	4	16	6	3	32
부산	-	8	7	15	1	1	12	1	-	15
대구	-	5	6	11	1	1	6	2	1	11
인천	-	6	4	10	1	1	7	1	-	10
광주	-	4	2	6	1	-	4	1	-	6
대전	-	4	2	6	1	-	4	1	-	6
울산	-	2	2	4	-	1	3	-	-	4
세종	-	2	-	2	-	-	2	-	-	2
경기	2	14	22	38	-	2	32	3	1	38
강원	-	8	1	9	1	1	7	-	-	9
충북	-	4	7	11	2	1	5	2	1	11
충남	-	8	2	10	-	-	9	1	-	10
전북	-	6	4	10	1	1	6	2	-	10
전남	-	4	5	9	1	-	8	-	-	9
경북	-	3	5	8	-	-	7	-	1	8
경남	-	9	2	11	-	-	11	-	-	11
제주	-	2	1	3	-	-	2	1	-	3
계	5	100	90	195	13	13	141	21	7	195

〈표 2·8〉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단위: 교)

시도	학교 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서울	32	6	24	28	28	27	26
부산	15	5	9	12	13	11	9
대구	11	-	4	10	10	11	11
인천	10	1	7	9	10	9	8
광주	6	4	6	6	6	6	5
대전	6	3	4	6	6	6	6
울산	4	-	3	4	4	4	4
세종	2	2	2	2	2	2	2
경기	38	2	31	33	35	35	28
강원	9	-	5	9	9	9	8
충북	11	1	9	10	10	10	10
충남	10	1	4	9	9	10	9
전북	10	1	4	9	9	9	9
전남	9	-	6	9	9	9	9
경북	8	-	5	8	8	8	8
경남	11	-	7	11	11	11	11
제주	3	-	3	3	3	3	3
계	195	26	133	178	182	180	166

※ (유)·초·중·고등학교 통합 운영 학교는 학교과정별 각각 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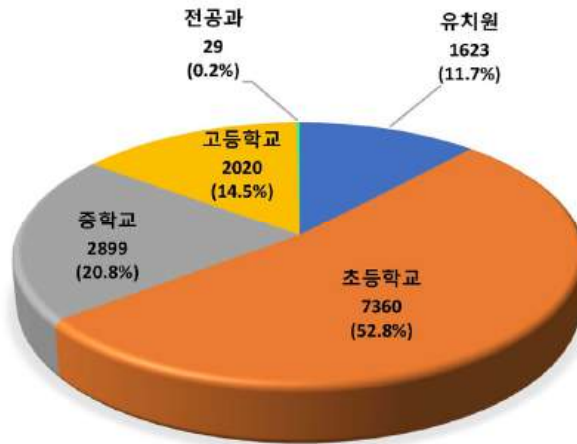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표 2·9〉 특수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치원	1,252	1,623	5,803	1,687
초등학교	4,938	7,360	35,042	7,669
중학교	2,142	2,899	13,778	3,078
고등학교	1,163	2,020	11,185	2,411
전공과	17	29	158	59
계	9,512	13,931	65,966	14,904

[학교급별 특수학급 현황]



계: 13,931개

〈표 2·10〉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치원	1,376	1,822	2,038
초등학교	3,601	8,598	8,925
중학교	1,951	4,114	4,331
고등학교	1,424	3,721	3,960
계	8,352	18,255	19,254

4 순회교육 현황

〈표 2·11〉 순회교육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영어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877	134	63	-	1,074	165	469	193	247	1,074	305	315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481	143	4	18	646	62	265	140	179	646	215	227
특수교육 지원센터	424	50	41	2,381	2,896	1,033	1,057	495	311	2,896	-	1,662*
계	1,782	327	108	2,399	4,616	1,260	1,791	828	737	4,616	520	2,204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기간제 교사 169명 포함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표 2·1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단위: 명, 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수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 학급 수	배치 인력 현황		
			교사	일반직 공무원	기타 (치료사, 지원인력 등)
197	363	69	1,739	47	572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표 2·1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		취업		비진학 · 미취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전공과)	진학률	취업자 수	취업률		
고등학교	특수학교	2,032	1,218	59.9	58	7.1	756
	특수학급	3,263	1,876	57.5	515	37.1	872
	일반학급	952	625	65.7	50	15.3	277
	소계	6,247	3,719	59.5	623	24.6	1,905
전공과	특수학교	2,259	41	1.8	1,041	46.9	1,177
	특수학급	107	4	3.7	88	85.4	15
	소계	2,366	45	1.9	1,129	48.6	1,192
계	8,613	3,764	43.7	1,752	36.1	3,097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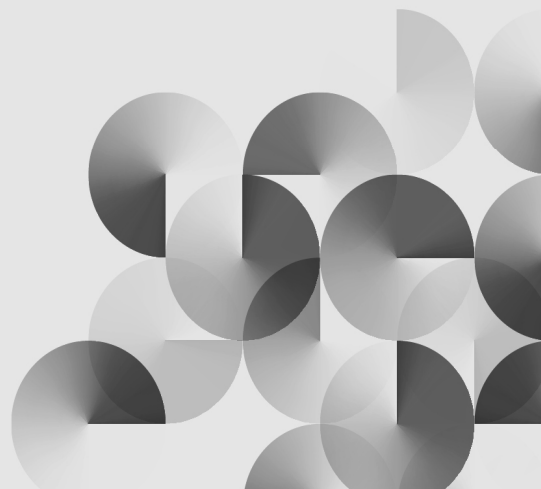


2024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III

2024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33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75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86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113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18





Ⅲ. 2024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2024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0%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명, %)

시도	전체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61,350	366,546	197,457	209,263	834,616	975	6,730	3,243	3,598	14,546	1.6	1.8	1.6	1.7	1.7
부산	32,992	147,256	76,081	72,134	328,463	662	3,551	1,587	1,635	7,435	2.0	2.4	2.1	2.3	2.3
대구	29,277	117,297	61,730	60,979	269,283	497	2,650	1,167	1,528	5,842	1.7	2.3	1.9	2.5	2.2
인천	34,507	151,413	80,381	76,208	342,509	707	3,919	1,761	1,774	8,161	2.0	2.6	2.2	2.3	2.4
광주	18,969	78,581	42,748	42,669	182,967	202	1,532	820	907	3,461	1.1	1.9	1.9	2.1	1.9
대전	17,719	71,679	39,145	39,987	168,530	303	1,567	718	1,008	3,596	1.7	2.2	1.8	2.5	2.1
울산	12,799	62,609	32,684	31,586	139,678	225	1,400	642	788	3,055	1.8	2.2	2.0	2.5	2.2
세종	5,913	32,836	15,969	13,916	68,634	200	607	211	161	1,179	3.4	1.8	1.3	1.2	1.7
경기	139,541	741,956	385,444	360,518	1,627,459	2,223	13,993	6,192	6,173	28,581	1.6	1.9	1.6	1.7	1.8
강원	12,464	65,917	37,070	37,086	152,537	226	1,454	746	823	3,249	1.8	2.2	2.0	2.2	2.1
충북	13,871	78,673	42,729	40,902	176,175	499	2,188	1,081	1,188	4,956	3.6	2.8	2.5	2.9	2.8
충남	20,670	112,387	60,683	59,777	253,517	520	2,826	1,249	1,280	5,875	2.5	2.5	2.1	2.1	2.3
전북	16,048	82,630	48,282	49,031	195,991	425	2,116	958	1,049	4,548	2.6	2.6	2.0	2.1	2.3
전남	14,695	82,696	46,781	46,460	190,632	292	2,065	1,017	1,114	4,488	2.0	2.5	2.2	2.4	2.4
경북	27,189	117,423	62,968	64,930	272,510	433	2,864	1,313	1,631	6,241	1.6	2.4	2.1	2.5	2.3
경남	37,047	172,881	94,573	90,371	394,872	542	3,773	1,856	1,991	8,162	1.5	2.2	2.0	2.2	2.1
제주	5,422	38,897	20,296	19,028	83,643	285	1,048	452	450	2,235	5.3	2.7	2.2	2.4	2.7
계	500,473	2,521,677	1,345,021	1,314,845	5,682,016	9,216	54,283	25,013	27,098	115,610	1.8	2.2	1.9	2.1	2.0

*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학생을 포함

※ 연도별 비율: 1.5%(2019), 1.6%(2020), 1.7%(2021), 1.8%(2022), 1.9%(2023), 2.0%(2024)

(2) 특수학교 학생

- 2024년 4월 기준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30,027명으로 2023년의 28,942명에 비해 1,085명이 증가함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학생 수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28,942	30,027

- 시도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설립 분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

〈표 3·3〉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계
서울	311	238	1,448	913	4	1,426	7	-	1	183	4,531
부산	73	25	874	313	11	662	13	2	-	91	2,064
대구	53	43	1,115	257	10	347	37	1	-	164	2,027
인천	86	38	1,014	204	5	591	26	-	1	23	1,988
광주	87	19	653	162	3	327	3	1	-	52	1,307
대전	106	9	529	121	1	335	1	-	-	13	1,115
울산	12	17	474	58	6	212	-	-	-	16	795
세종	2	2	101	35	2	119	2	-	1	15	279
경기	33	27	2,803	563	6	1,940	49	-	1	67	5,489
강원	45	5	505	72	2	253	3	-	2	32	919
충북	116	68	754	156	6	304	7	-	1	50	1,462
충남	2	5	790	199	-	411	2	-	1	31	1,441
전북	43	7	674	141	-	251	12	-	-	62	1,190
전남	43	13	770	106	6	275	10	-	1	16	1,240
경북	-	4	1,007	98	4	394	17	-	3	9	1,536
경남	11	12	991	319	7	660	3	2	-	44	2,049
제주	2	3	275	67	-	235	9	-	-	4	595
계	1,025	535	14,777	3,784	73	8,742	201	6	12	872	30,027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851명(2.8%), 공립학교 18,506명(61.6%), 사립학교 10,670명(35.5%)임
 -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3·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사립학교 위탁비율
서울	481	1,851	2,199	4,531	48.5
부산	-	1,487	577	2,064	28.0
대구	-	1,225	802	2,027	39.6
인천	-	1,594	394	1,988	19.8
광주	-	1,048	259	1,307	19.8
대전	-	863	252	1,115	22.6
울산	-	532	263	795	33.1
세종	-	279	-	279	-
경기	370	2,862	2,257	5,489	41.1
강원	-	854	65	919	7.1
충북	-	682	780	1,462	53.4
충남	-	1,228	213	1,441	14.8
전북	-	693	497	1,190	41.8
전남	-	662	578	1,240	46.6
경북	-	468	1,068	1,536	69.5
경남	-	1,779	270	2,049	13.2
제주	-	399	196	595	32.9
계	851(2.8)	18,506(61.6)	10,670(35.6)	30,027(100.0)	35.5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2024년 4월 기준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65,966명으로 2023년의 61,993명에 비해 3,973명이 증가함
 -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비해 644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함

〈표 3·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학생수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61,993	65,966

- 학교급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5,803명, 초등학교 35,042명, 중학교 13,778명, 고등학교 11,343명(전공과 포함)임

〈표 3·6〉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585	-	585	11	3,958	-	3,969	11	1,665	9	1,685	18	1,180	209	1,407	40	7,388	218	7,646
부산	-	231	-	231	6	1,914	2	1,922	-	705	4	709	7	517	79	603	13	3,367	85	3,465
대구	-	207	-	207	6	1,270	-	1,276	6	483	-	489	5	361	5	371	17	2,321	5	2,343
인천	-	434	-	434	6	2,435	-	2,441	-	862	4	866	-	673	50	723	6	4,404	54	4,464
광주	-	116	-	116	6	829	-	835	10	343	9	362	14	226	51	291	30	1,514	60	1,604
대전	-	208	-	208	-	1,028	-	1,028	-	365	10	375	-	324	42	366	-	1,925	52	1,977
울산	-	160	-	160	-	923	-	923	-	360	-	360	-	326	-	326	-	1,769	-	1,769
세종	-	163	-	163	-	386	-	386	-	106	-	106	-	71	-	71	-	726	-	726
경기	-	1,697	4	1,701	-	9,780	21	9,801	-	3,813	160	3,973	-	3,158	134	3,292	-	18,448	319	18,767
강원	6	152	-	158	6	1,014	-	1,020	-	381	-	381	6	271	-	277	18	1,818	-	1,836
충북	3	354	-	357	9	1,369	-	1,378	9	553	3	565	13	401	16	430	34	2,677	19	2,730
충남	5	407	-	412	5	2,054	-	2,059	4	760	41	805	4	622	18	644	18	3,843	59	3,920
전북	-	238	-	238	12	1,300	-	1,312	-	459	17	476	7	361	27	395	19	2,358	44	2,421
전남	-	223	-	223	2	1,581	-	1,583	-	634	18	652	-	476	23	499	2	2,914	41	2,957
경북	-	173	-	173	-	1,862	11	1,873	-	631	100	731	-	466	161	627	-	3,132	272	3,404
경남	-	359	-	359	2	2,619	12	2,633	4	901	123	1,028	7	716	117	840	13	4,595	252	4,860
제주	-	78	-	78	6	597	-	603	12	203	-	215	11	146	24	181	29	1,024	24	1,077
계	14	5,785	4	5,803	77	34,919	46	35,042	56	13,224	498	13,778	92	10,295	956	11,343	239	64,223	1,504	65,966

*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58명(대구 20명, 인천 12명, 경기 126명) 포함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 2024년 4월 기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9,254명으로 2023년의 18,474명에 비해 780명이 증가함

〈표 3·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학생 수	15,648	15,622	15,344	15,590	15,595	15,687	16,061	16,600	17,514	18,474	19,254

- 학교급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유치원 2,038명, 초등학교 8,925명, 중학교 4,331명, 고등학교 3,960명임

〈표 3·8〉 학교급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25	101	126	3	1,098	24	1,125	4	433	118	555	7	257	249	513	14	1,813	492	2,319
부산	-	80	214	294	2	880	2	884	-	327	63	390	10	256	72	338	12	1,543	351	1,906
대구	-	63	197	260	-	663	3	666	4	228	44	276	7	180	74	261	11	1,134	318	1,463
인천	-	85	119	204	-	757	4	761	-	411	16	427	-	270	33	303	-	1,523	172	1,695
광주	-	8	33	41	-	222	1	223	3	118	29	150	5	96	35	136	8	444	98	550
대전	-	16	22	38	-	229	-	229	-	93	10	103	-	86	35	121	-	424	67	491
울산	-	24	26	50	-	218	-	218	-	105	5	110	-	104	6	110	-	451	37	488
세종	-	15	-	15	-	101	-	101	-	31	-	31	-	27	-	27	-	174	-	174
경기	-	104	104	208	-	2,164	19	2,183	-	854	107	961	-	739	145	884	-	3,861	375	4,236
강원	-	34	10	44	-	184	2	186	-	112	13	125	16	99	20	135	16	429	45	490
충북	-	51	21	72	1	301	2	304	1	158	13	172	2	167	25	194	4	677	61	742
충남	-	42	17	59	1	246	1	248	2	79	23	104	2	74	22	98	5	441	63	509
전북	-	62	78	140	3	395	-	398	-	179	33	212	4	123	58	185	7	759	169	935
전남	-	36	18	54	-	97	1	98	-	71	24	95	-	33	11	44	-	237	54	291
경북	-	93	116	209	-	575	16	591	-	173	69	242	-	155	77	232	-	996	278	1,274
경남	-	67	87	154	1	486	4	491	2	230	66	298	2	202	101	305	5	985	258	1,248
제주	-	39	31	70	2	217	-	219	-	68	12	80	10	48	16	74	12	372	59	443
계	-	844	1,194	2,038	13	8,833	79	8,925	16	3,670	645	4,331	65	2,916	979	3,960	94	16,263	2,897	19,254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2024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69학급이며, 장애영아 수는 363명임
- 연령별로 1세 미만 32명, 1세 90명, 2세 241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260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103명임

〈표 3·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단위: 학급, 명)

시도	센터 설치 장애영아 학급 수	연령별 지원 영아 수				교육유형별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교육 영아 수	계
서울	11	5	18	27	50	50	-	50
부산	-	-	-	-	-	-	-	-
대구	3	1	3	5	9	9	-	9
인천	6	1	9	4	14	11	3	14
광주	-	-	-	-	-	-	-	-
대전	4	-	6	7	13	13	-	13
울산	-	1	1	1	3	-	3	3
세종	-	-	-	-	-	-	-	-
경기	34	7	27	55	89	23	66	89
강원	1	-	-	4	4	1	3	4
충북	5	9	5	8	22	17	5	22
충남	-	-	1	4	5	-	5	5
전북	1	1	1	-	2	1	1	2
전남	-	-	-	-	-	-	-	-
경북	-	4	8	15	27	10	17	27
경남	2	-	1	4	5	5	-	5
제주	2	3	10	107	120	120	-	120
계	69	32	90	241	363	260	103	363

2)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4년 4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95교로 2023년 대비 1교 증가하였음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학교 수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 전국 195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5교, 공립 100교, 사립 90교로 국·공립학교 비율이 53.8%임
- 전국 195개 특수학교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3교, 지적장애학교 141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2.3%임

〈표 3·11〉 설립별 및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3	88	6	1	100
사립	10	9	52	14	5	90
계	13	13	141	21	7	195

※ 장애유형별 구분은 주 장애유형을 말함

- 전국 195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38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32교, 부산광역시 15교 등의 순임

〈표 3·12〉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4	16	6	3	32
부산	1	1	12	1	-	15
대구	1	1	6	2	1	11
인천	1	1	7	1	-	10
광주	1	-	4	1	-	6
대전	1	-	4	1	-	6
울산	-	1	3	-	-	4
세종	-	-	2	-	-	2
경기	-	2	32	3	1	38
강원	1	1	7	-	-	9
충북	2	1	5	2	1	11
충남	-	-	9	1	-	10
전북	1	1	6	2	-	10
전남	1	-	8	-	-	9
경북	-	-	7	-	1	8
경남	-	-	11	-	-	11
제주	-	-	2	1	-	3
계	13	13	141	21	7	195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립 특수학교, 그 외 시도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11	18	32
부산	-	8	7	15
대구	-	5	6	11
인천	-	6	4	10
광주	-	4	2	6
대전	-	4	2	6
울산	-	2	2	4
세종	-	2	-	2
경기	2	14	22	38
강원	-	8	1	9
충북	-	4	7	11
충남	-	8	2	10
전북	-	6	4	10
전남	-	4	5	9
경북	-	3	5	8
경남	-	9	2	11
제주	-	2	1	3
계	5	100	90	195

■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예술·체육 및 직업교육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설립 지원
-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 특수학급

■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4년 4월 기준 전국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13,931학급으로 2023년보다 644개 학급이 증가함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학급 수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 학교급별 특수학급은 유치원 1,623학급, 초등학교 7,360학급, 중학교 2,899학급, 고등학교 2,049학급(전공과 포함)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52.8%를 차지함
- 설립별 특수학급은 국립 46학급, 공립 13,583학급, 사립 302학급으로 총 13,931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7.8%를 차지함

〈표 3·15〉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151	-	151	2	852	-	854	2	328	3	333	3	244	45	292	7	1,575	48	1,630
부산	-	62	-	62	1	374	1	376	-	139	1	140	1	82	12	95	2	657	14	673
대구	-	55	-	55	2	269	-	271	1	96	-	97	1	64	2	67	4	484	2	490
인천	-	114	-	114	1	450	-	451	-	149	1	150	-	111	7	118	1	824	8	833
광주	-	29	-	29	1	179	-	180	2	70	2	74	2	35	8	45	5	313	10	328
대전	-	62	-	62	-	200	-	200	-	81	2	83	-	52	8	60	-	395	10	405
울산	-	42	-	42	-	177	-	177	-	72	-	72	-	60	-	60	-	351	-	351
세종	-	46	-	46	-	75	-	75	-	25	-	25	-	14	-	14	-	160	-	160
경기	-	506	1	507	-	1,942	3	1,945	-	785	31	816	-	543	22	565	-	3,776	57	3,833
강원	1	38	-	39	1	229	-	230	-	91	-	91	1	58	-	59	3	416	-	419
충북	1	90	-	91	2	318	-	320	2	123	2	127	3	75	3	81	8	606	5	619
충남	1	112	-	113	1	451	-	452	1	164	8	173	1	117	4	122	4	844	12	860
전북	-	73	-	73	2	301	-	303	-	105	5	110	1	66	5	72	3	545	10	558
전남	-	72	-	72	1	411	-	412	-	170	5	175	-	94	4	98	1	747	9	757
경북	-	51	-	51	-	427	2	429	-	145	22	167	-	83	33	116	-	706	57	763
경남	-	99	-	99	1	586	2	589	1	197	29	227	1	132	26	159	3	1,014	57	1,074
제주	-	17	-	17	1	95	-	96	2	37	-	39	2	21	3	26	5	170	3	178
계	3	1,619	1	1,623	16	7,336	8	7,360	11	2,777	111	2,899	16	1,851	182	2,049	46	13,583	302	13,931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9학급(대구 2학급, 인천 3학급, 경기 24학급) 포함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24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4.8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5.8명임

〈표 3·16〉 학교급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1	5.5	5.3	5.5	3.9	4.6	5.1	4.8	3.6	4.9	5.2	5.2
부산	3.4	5.4	5.5	6.2	3.7	5.1	5.1	6.3	3.6	5.2	5.3	6.3
대구	3.5	5.4	5.3	6.9	3.8	4.7	5.0	5.5	3.7	4.9	5.2	6.4
인천	3.7	5.2	5.3	6.4	3.8	5.4	5.8	6.1	3.8	5.4	5.6	6.3
광주	2.8	4.6	4.8	6.3	4.0	4.6	4.9	6.5	3.6	4.6	4.9	6.4
대전	3.4	5.2	5.5	6.6	3.4	5.1	4.5	6.1	3.4	5.1	4.8	6.4
울산	4.0	4.6	4.8	6.6	3.8	5.2	5.0	5.4	3.8	5.1	4.9	6.0
세종	4.4	5.5	5.3	4.5	3.5	5.1	4.2	5.1	3.6	5.2	4.6	4.8
경기	3.2	5.9	5.8	6.2	3.4	5.0	4.9	5.8	3.3	5.2	5.1	6.0
강원	3.3	3.9	4.5	5.1	4.1	4.4	4.2	4.7	4.0	4.3	4.3	4.9
충북	3.0	4.3	4.8	6.0	3.9	4.3	4.4	5.3	3.8	4.3	4.6	5.7
충남	3.7	4.8	5.0	5.4	3.6	4.6	4.7	5.3	3.6	4.6	4.8	5.3
전북	3.0	5.3	5.1	5.9	3.3	4.3	4.3	5.5	3.2	4.5	4.6	5.7
전남	2.1	4.7	5.3	6.2	3.1	3.8	3.7	5.1	3.0	4.0	4.1	5.6
경북	3.4	4.9	5.2	7.1	3.4	4.4	4.4	5.4	3.4	4.4	4.6	6.2
경남	2.4	4.2	5.0	5.8	3.6	4.5	4.5	5.3	3.5	4.4	4.7	5.5
제주	3.4	5.0	5.1	6.3	4.6	6.3	5.5	7.0	4.3	5.9	5.3	6.6
평균	3.2	5.1	5.3	6.1	3.6	4.8	4.8	5.5	3.5	4.8	4.9	5.8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 향후 과제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등 장애유형별 또는 특정 분야별 특수학급 설치·운영 추진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4년 4월 기준 특수학교 37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69학급, 총 106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107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363명으로 총 470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 연령별 현황은 1세 미만 37명, 1세 129명, 2세 304명으로 총 470명임

〈표 3·17〉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학급)

시도	연령별 지원 영아 수				배치기관별 지원 영아 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합계			
	1세 미만	1세	2세	계	영아 학급 수	영아를 배치한 유치원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영아를 배치한 유치원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센터 지원 영아 수									순회 지원 영아 수	계				
서울	5	25	41	71	9	-	21	11	50	-	50	20	-	71
부산	1	8	13	22	8	1	22	-	-	-	-	8	1	22
대구	1	3	5	9	-	-	-	3	9	-	9	3	-	9
인천	1	11	7	19	2	-	5	6	11	3	14	8	-	19
광주	1	5	11	17	6	2	17	-	-	-	-	6	2	17
대전	2	10	16	28	4	-	15	4	13	-	13	8	-	28
울산	1	1	1	3	-	-	-	-	-	3	3	-	-	3
세종	-	5	3	8	2	-	8	-	-	-	-	2	-	8
경기	8	30	58	96	3	1	7	34	23	66	89	37	1	96
강원	-	-	4	4	-	-	-	1	1	3	4	1	-	4
충북	9	5	9	23	1	-	1	5	17	5	22	6	-	23
충남	-	5	7	12	1	3	7	-	-	5	5	1	3	12
전북	1	2	1	4	1	-	2	1	1	1	2	2	-	4
전남	-	-	1	1	-	1	1	-	-	-	-	-	1	1
경북	4	8	16	28	-	1	1	-	10	17	27	-	1	28
경남	-	1	4	5	-	-	-	2	5	-	5	2	-	5
제주	3	10	107	120	-	-	-	2	120	-	120	2	-	120
계	37	129	304	470	37	9	107	69	260	103	363	106	9	470

■ 향후 과제

-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진단·등록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를 통해 적기에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연계 강화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아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 특수학급 확대

4)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4년 4월 기준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33교 280학급(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0교 61학급 포함),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1,252교 1,623학급으로 총 1,385교 1,903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표 3·18〉 유아 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교, 학급)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교 수	133	10	1,252	1,385
학급 수	280	61	1,623	1,903

- 2024년 4월 기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905명(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24명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에 5,803명, 유치원 일반학급 2,038명으로 총 8,746명임

〈표 3·19〉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유아 수	905	224	5,803	2,038	8,746

- 2024년 4월 기준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비는 공립유치원 6,629명, 사립유치원 1,198명으로 총 7,827명이 지원받고 있음
- 1인당 월 교육비 평균은 공립유치원 198.4천 원, 사립유치원 507.2천 원임

〈표 3·20〉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시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서울	610	236	101	684
부산	311	150	214	460
대구	270	150	197	401
인천	519	207	119	407
광주	124	150	33	550
대전	224	150	22	381
울산	184	180	26	450
세종	178	310	-	-
경기	1,801	259	108	480
강원	186	201	10	405
충북	405	150	21	557
충남	449	150	17	603
전북	300	150	78	515
전남	259	200	18	680
경북	266	150	116	451
경남	426	230	87	541
제주	117	350	31	550
합계 및 전국 평균	6,629	198.4	1,198	507.2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표 3·21〉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부('24.4.1.기준)			보건복지부('23.12.31.기준)			계	
	유치원		소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133	1,252	1,376	2,761	177	1,464	727	2,368	5,129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강화
- 유아단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4년 4월 기준, 전국에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은 교사 1,739명, 일반직 47명, 치료사와 지원인력을 포함한 기타 인력 572명으로 총 2,358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연간 예산 총액은 약 2,274억 원임

〈표 3·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원)

시도	센터 수	교사			일반직			기타				계	연간 예산 (총액)
		정 규	계 약	소 계	정 규	계 약	소 계	치 료 사	사회 복무 요원	기타	소 계		
서울	11	103	11	114	-	-	-	-	-	38	38	152	14,223
부산	6	67	21	88	8	-	8	-	2	4	6	102	25,015
대구	6	97	11	108	4	-	4	-	11	2	13	125	7,309
인천	6	107	-	107	-	-	-	7	-	3	10	117	7,528
광주	3	39	7	46	1	-	1	-	4	11	15	62	17,944
대전	5	56	-	56	6	-	6	3	1	4	8	70	9,268
울산	3	36	7	43	2	-	2	38	1	6	45	90	8,331
세종	1	19	-	19	2	-	2	-	2	21	23	44	5,957
경기	27	375	-	375	9	-	9	41	1	57	99	483	27,503
강원	18	65	6	71	1	-	1	32	-	6	38	110	7,272
충북	11	100	3	103	4	-	4	13	-	14	27	134	24,111
충남	15	102	3	105	4	1	5	40	1	28	69	179	16,001
전북	15	88	1	89	2	-	2	2	-	20	22	113	12,160
전남	23	75	-	75	-	-	-	23	2	18	43	118	7,767
경북	23	136	-	136	-	-	-	11	-	24	35	171	10,834
경남	21	155	2	157	3	-	3	65	1	7	73	233	16,908
제주	3	47	-	47	-	-	-	8	-	-	8	55	9,296
계	197	1,667	72	1,739	46	1	47	283	26	263	572	2,358	227,427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188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55개를 운영하고 있음

〈표 3·23〉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시도	통합교육지원단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지원단 수	구성인원 수	센터 수	거점 영역
서울	11	188	5	시각(2), 청각(2), 지체중복(1)
부산	6	61	6	시각(1), 청각(1), 지체(1), 발달(1), 진로직업(1), 장애영유아(1)
대구	6	149	3	시각(1), 청각(1), 자폐성(1)
인천	6	100	4	시각(1), 청각(1), 지체·중도중복·건강장애(1), 장애영유아(1)
광주	3	72	1	시청각(1)
대전	4	50	1	시청각(1)
울산	3	20	1	시청각(1)
세종	1	18	-	-
경기	25	332	5	시각(1), 청각(1), 시청각(1), 지체중복(1), 건강(1)
강원	18	172	2	시각(1), 청각(1)
충북	10	123	4	시각(2), 청각(1), 발달(1)
충남	14	136	1	시청각(1)
전북	14	166	3	시각(1), 청각(1), 지체(1)
전남	23	211	3	시청각(3)
경북	22	190	4	시청각(4)
경남	19	205	10	시청각(2), 전환교육(4), 시청각·전환교육(1), 장애영유아·전환교육(2), 시청각·장애영유아·전환교육(1)
제주	3	22	2	시청각(2)
계	188	2,215	55	

■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학교-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담당 교육전문직, 교사, 행정직원 등 전문인력 배치·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지원 확대

6) 장애 발견 진단·배치 체계 구축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학생 51,583명 중 45,969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배치율은 89.1%이며, 2,319명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통한 교육 지원 필요 소멸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취소되었음

〈표 3·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단위: 명, %)

시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배치 비율	선정 취소자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서울	1,655	1,372	3,299	3,034	1,323	1,155	73	67	6,350	5,628	88.6	6
부산	643	613	1,456	1,331	1,343	1,066	-	-	3,442	3,010	87.4	136
대구	646	641	952	883	990	842	11	10	2,599	2,376	91.4	76
인천	667	510	2,070	1,920	1,252	1,118	13	13	4,002	3,561	89.0	253
광주	641	628	749	606	455	317	-	-	1,845	1,551	84.1	89
대전	324	323	930	857	272	240	21	21	1,547	1,441	93.1	65
울산	275	210	892	654	345	290	8	5	1,520	1,159	76.3	38
세종	114	113	353	329	132	114	-	-	599	556	92.8	32
경기	1,816	1,444	7,980	7,259	2,721	2,413	116	111	12,633	11,227	88.9	963
강원	326	321	731	721	344	331	5	5	1,406	1,378	98.0	57
충북	451	447	1,153	1,121	458	423	23	23	2,085	2,014	96.6	113
충남	378	370	1,662	1,414	249	199	4	4	2,293	1,987	86.7	108
전북	386	371	1,088	1,012	631	546	1	1	2,106	1,930	91.6	61
전남	352	336	1,382	1,257	215	194	-	-	1,949	1,787	91.7	120
경북	357	345	1,408	1,288	838	704	28	26	2,631	2,363	89.8	69
경남	597	595	2,018	1,797	813	646	9	7	3,437	3,045	88.6	87
제주	191	189	446	346	286	228	216	193	1,139	956	83.9	46
계	9,819	8,828	28,569	25,829	12,667	10,826	528	486	51,583	45,969	89.1	2,319
영아	128	115	-	-	-	-	528	486	656	601	91.6	104
유	748	710	4,581	4,007	2,880	2,245	-	-	8,209	6,962	84.8	802
초	3,280	2,685	13,244	11,606	5,291	4,462	-	-	21,815	18,753	86.0	853
중	3,058	2,726	6,493	6,046	2,655	2,373	-	-	12,206	11,145	91.3	320
고	2,605	2,592	4,251	4,170	1,841	1,746	-	-	8,697	8,508	97.8	240

※ 기간: 2023년 4월 ~ 2024년 3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자 수 포함

-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23명이며, 이 중 만 6세는 231명, 만 7세는 85명, 만 8세 이상은 107명으로 나타남

〈표 3·25〉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단위: 명)

시도	만 6세		만 7세		만 8세 이상		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26	7	4	-	5	1	35	8
부산	50	12	16	2	23	11	89	25
대구	97	28	42	15	42	22	181	65
인천	2	1	-	-	8	4	10	5
광주	-	-	-	-	-	-	-	-
대전	1	-	-	-	-	-	1	-
울산	-	-	-	-	-	-	-	-
세종	2	-	1	1	-	-	3	1
경기	16	2	5	1	12	4	33	7
강원	4	-	-	-	-	-	4	-
충북	-	-	-	-	1	-	1	-
충남	-	-	4	-	-	-	4	-
전북	4	1	5	2	5	2	14	5
전남	4	1	1	-	7	3	12	4
경북	11	4	-	-	1	1	12	5
경남	14	4	7	1	2	1	23	6
제주	-	-	-	-	1	1	1	1
계	231	60	85	22	107	50	423	132

※ 2024. 6. 1. 기준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은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가 2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28.4%로 나타남

〈표 3·26〉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단위: 명, %)

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계
	인근에 특수교육 기관이 없어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타	
서울	-	3	14	16	1	1	35
부산	-	33	9	7	39	1	89
대구	-	15	71	83	12	-	181
인천	-	5	1	-	-	4	10
광주	-	-	-	-	-	-	-
대전	-	-	1	-	-	-	1
울산	-	-	-	-	-	-	-
세종	-	1	-	-	-	2	3
경기	-	6	10	8	1	8	33
강원	-	2	-	1	1	-	4
충북	-	1	-	-	-	-	1
충남	-	4	-	-	-	-	4
전북	1	-	6	-	7	-	14
전남	-	6	1	1	1	3	12
경북	-	-	1	-	11	-	12
경남	-	7	9	4	3	-	23
제주	-	-	-	-	-	1	1
계	1 (0.2)	83 (19.6)	123 (29.1)	120 (28.4)	76 (18.0)	20 (4.7)	423 (100.0)

※ 2024. 6. 1.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특수학교 30,027명 중 28,866명(96.1%), 특수학급 65,966명 중 40,615명(61.6%), 일반학급 19,254명 중 7,652명(39.7%),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363명 중 121명(33.3%)임

〈표 3·27〉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장애유형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체장애	633	724	911	11	2,279
뇌병변장애	3,333	2,534	1,320	92	7,279
시각장애	940	186	354	-	1,480
청각장애	538	630	1,473	14	2,655
언어장애	304	1,996	538	-	2,838
지적장애	14,071	22,254	1,924	1	38,250
자폐성장애	8,953	12,172	1,024	1	22,150
정신장애	14	15	1	-	30
신장장애	26	5	28	1	60
심장장애	1	12	13	-	26
호흡기장애	1	4	13	-	18
간장애	-	9	12	-	21
안면장애	-	2	4	-	6
장루·요루장애	1	9	23	1	34
뇌전증장애	51	63	14	-	128
계	28,866 (96.1)	40,615 (61.6)	7,652 (39.7)	121 (33.3)	77,254 (66.8)

- 전국에 193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운영위원은 1,771명,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는 1,790회임

〈표 3·2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단위: 개, 명, 회)

시도	위원회 수	구성원									운영실적 ('23. 3. ~ '24. 2.)
		교장 (감)	특수 교사	대학 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계	
서울	12	16	40	2	29	-	10	-	9	106	155
부산	6	12	14	6	16	3	2	3	10	66	46
대구	6	10	9	5	19	3	5	-	2	53	67
인천	6	9	17	-	12	-	5	4	9	56	77
광주	3	3	3	3	14	2	3	-	1	29	59
대전	3	5	8	1	17	1	1	1	3	37	35
울산	3	3	6	1	9	1	4	-	6	30	50
세종	1	2	2	2	6	-	1	-	-	13	14
경기	26	61	61	4	49	3	26	4	20	228	317
강원	18	23	57	3	22	-	12	2	10	129	120
충북	11	13	23	5	25	4	13	10	13	106	121
충남	15	25	41	8	42	3	17	7	12	155	131
전북	15	23	59	3	26	9	15	3	14	152	107
전남	23	33	101	9	21	5	12	7	28	216	124
경북	23	29	61	10	37	12	19	5	17	190	195
경남	19	28	46	5	31	10	19	10	18	167	131
제주	3	6	7	2	11	2	5	2	3	38	41
계	193	301	555	69	386	58	169	58	175	1,771	1,790

■ 향후 과제

- 영유아 건강검진과 조기교육 연계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병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정보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7)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양성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초등교육(초등)/표시과목(중등)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유치원/초등):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중등):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 성적 기준: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 2021. 6. 23. 이후, 교원자격검정 대상자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시 교사 자격 취득 불가
- 2024년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6개 대학이고, 승인 인원은 1,396명임
 - ※ 교육대학원은 총정원으로 관리되므로 연도별 교원양성정원이 유동적임

〈표 3·29〉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4년도 입학정원	2024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국립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6	46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부산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남대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청원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13	1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체육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한국교원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9	9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소계	7		9	183	183	
사립	가야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6	26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가톨릭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19	19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19	19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건양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50	5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경주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학과	4	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광주여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전공	22	22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전공	18	18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4년도 입학정원	2024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극동대	교육과	특수교육학과 초등특수교육전공	24	2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나사렛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남부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단국대 (죽전)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직과정	재활상담학과		38	3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한의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미술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대전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상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백석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60	6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신라대	교직과정	체육학부 특수체육전공		20	2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남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유원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용인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4년도 입학정원	2024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우석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34	3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원광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위덕대	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인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부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소계	29		42	1,266	1,213	
계	36		51	1,449	1,396	

※ 경주대학교가 서라벌대학교와 신경주대학교로 통합('24.3.1.)됨에 따라 특수체육교육학과 폐지 및 2023학년도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입학생에 한해 학사 운영

※ 한국국제대학교 폐교('23.8.31.)에 따라 특수교육전공 재적생('23년 승인정원 40명)에 대해 인근 교원양성대학에 특별편입학 추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15호 관련)

- 2024년 승인정원 기준, 14개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30〉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2024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국립공주대	중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부산대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서울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창원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소계	5	8	
사립	대구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전공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아주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남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설립별	대학원명	2024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용인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우석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화여대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조선대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소계	9	11
계	14	19	

※ 출처: 2024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2024년 승인정원 기준, 7개의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31〉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교육대학명	형태	수업형태	2024학년도 운영전공	비고
국립	서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야간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	재교육과정
	대구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계절·야간	초등특수교육, 뇌기반 특수체육	재교육과정
	경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계절·야간	특수교육	재교육과정
	춘천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계절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공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주간·계절	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전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진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계	7			9	

※ 출처: 2024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대학원의 종류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규정

- 2024년 승인정원 기준, 19개의 국·사립대학교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32〉 국·사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2024학년도 운영전공	비고	
국립	국립공주대	중등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초등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직업교육전공		
	국립한국교통대	특수교육 ABA전공		
	전남대	특수교육전공		
	한국교원대	특수교육전공		
한경국립대	특수교육전공			
소계	5	8		
사립	가톨릭대	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직업특수교육전공		
	강남대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고신대	특수교육전공		
	광운대	특수교육		
	광주여대	특수교육전공		
	나사렛대	특수교육학		
	남부대	특수교육전공		
	단국대(죽전)	유아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직업재활교육		
		장애인평생교육		
		학습장애·난독증교육		
	대구대	초등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		
		지적학습발달장애교육		
		감각운동발달장애교육		
	동의대	유아특수보육		
	순천향대	특수체육교육전공		
	위덕대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인제대	특수교육전공		
	중부대	특수교육전공		
소계	14	25		
계	19	33		

※ 출처: 2024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음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현장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전공 교수 확보
- 미래사회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특수교사 양성 및 지원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강화
- 예비교원의 장애유형별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양성체제 개선

(2)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직 연수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직속기관인 시도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통해 특수교육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육 교사 자격연수(유·초·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가 99.4%, 특수학급이 98.2%, 전체 98.7%로 나타남

〈표 3·33〉 특수교육 담당 교원 자격 소지 현황

(단위: 명, %)

시도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				특수학급				합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서울	1,599	1,593	6	99.6	1,722	1,720	2	99.9	3,321	3,313	8	99.8
부산	743	725	18	97.6	706	704	2	99.7	1,449	1,429	20	98.6
대구	724	719	5	99.3	508	508	-	100.0	1,232	1,227	5	99.6
인천	705	704	1	99.9	865	864	1	99.9	1,570	1,568	2	99.9
광주	484	484	-	100.0	329	329	-	100.0	813	813	-	100.0
대전	416	414	2	99.5	427	427	-	100.0	843	841	2	99.8
울산	292	292	-	100.0	357	356	1	99.7	649	648	1	99.8
세종	106	104	2	98.1	157	157	-	100.0	263	261	2	99.2
경기	2,432	2,416	16	99.3	4,534	4,338	196	95.7	6,966	6,754	212	97.0
강원	399	396	3	99.2	419	411	8	98.1	818	807	11	98.7
충북	581	574	7	98.8	624	619	5	99.2	1,205	1,193	12	99.0
충남	588	583	5	99.1	864	851	13	98.5	1,452	1,434	18	98.8
전북	474	474	-	100.0	563	562	1	99.8	1,037	1,036	1	99.9
전남	497	497	-	100.0	760	752	8	98.9	1,257	1,249	8	99.4
경북	599	599	-	100.0	783	773	10	98.7	1,382	1,372	10	99.3
경남	830	828	2	99.8	1,075	1,069	6	99.4	1,905	1,897	8	99.6
제주	236	228	8	96.6	211	198	13	93.8	447	426	21	95.3
계	11,705	11,630	75	99.4	14,904	14,638	266	98.2	26,609	26,268	341	98.7

* 특수학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는 제외

- 2024년 현재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1,438개로서 15,658명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약 10억 3천만 원임

〈표 3·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천 원)

시도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회원 수	지원 예산
서울	36	588	29,815
부산	116	880	104,620
대구	142	972	92,000
인천	108	949	91,167
광주	93	1,159	64,274
대전	42	563	44,274
울산	25	234	19,270
세종	30	291	10,000
경기	257	2,335	24,000
강원	67	692	89,000
충북	87	1,001	70,760
충남	128	1,138	73,330
전북	62	604	71,466
전남	43	843	70,500
경북	79	1,609	93,157
경남	103	1,530	67,239
제주	20	270	13,240
계	1,438	15,658	1,028,112

■ 향후 과제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 과정 질 제고 및 연수과정 다양화
 -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등
-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교과 연수 제공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회복 연수 확대

8)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40,867천 원, 초등학교 33,275천 원, 중학교 34,107천 원, 고등학교 40,796천 원임
- 신설 특수학급의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62,862천 원, 초등학교 55,965천 원, 중학교 58,599천 원, 고등학교 61,773천 원임

〈표 3·3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천 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서울	47,947	57,512	27,814	67,379	31,153	70,718	37,494	77,059
부산	47,204	82,163	37,472	68,718	42,760	77,179	52,807	87,807
대구	23,748	55,668	27,648	51,395	31,208	54,958	37,188	60,938
인천	36,979	50,495	28,521	67,014	30,492	69,273	33,415	78,520
광주	67,483	117,483	41,291	91,291	42,934	52,934	51,248	-
대전	50,339	70,339	25,286	45,286	26,394	46,394	30,963	50,963
울산	38,969	52,070	32,767	54,762	34,225	55,810	39,984	60,869
세종	48,974	58,974	50,116	60,116	50,190	60,190	59,592	69,592
경기	26,506	49,225	37,325	69,317	31,527	47,291	37,922	56,882
강원	21,035	45,934	22,856	47,675	26,420	51,284	26,902	52,135
충북	23,388	50,692	17,372	50,280	17,434	50,000	26,039	50,000
충남	40,910	58,442	36,926	53,603	41,340	67,958	49,003	75,603
전북	49,050	70,050	38,772	59,772	39,304	60,304	40,261	61,261
전남	37,105	57,105	28,077	48,077	28,214	48,214	35,632	55,632
경북	41,510	58,607	53,742	63,758	48,870	56,535	53,566	68,044
경남	44,377	69,377	27,963	52,963	29,808	54,808	37,938	62,938
제주	49,218	64,526	31,722	-	27,554	72,326	43,583	81,906
평균	40,867	62,862	33,275	55,965	34,107	58,599	40,796	61,773

※ 특수학급 운영비: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 지원인력(인건비 제외),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3조 6,657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3.9%의 비율을 나타냄

〈표 3·36〉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비율
				전체(A)	전체(A) 중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서울	11,160,500,000	375,047,081	137,000,757	23,398,844	17,930,072	2,745,929	828,455	912,011	539,933,077	4.8
부산	5,247,851,073	146,437,337	77,818,975	23,167,997	4,159,555	1,057,812	114,696	225,500	248,822,317	4.7
대구	4,085,070,223	115,313,181	49,016,319	8,769,609	-	-	342,845	65,000	173,506,954	4.2
인천	5,442,337,436	110,267,376	78,349,168	2,544,587	1,639,190	451,861	244,358	222,996	192,080,346	3.5
광주	2,982,372,871	57,440,513	41,588,606	8,167,110	1,230,656	1,706,726	312,822	3,152,310	112,368,087	3.8
대전	2,824,932,448	64,426,275	45,094,284	10,039,503	3,351,113	480,219	332,947	356,714	120,729,942	4.3
울산	2,323,344,480	55,874,880	35,860,261	1,343,677	917,403	80,000	36,676	513,714	93,709,208	4.0
세종	1,106,181,080	29,150,844	8,552,096	1,426,000	-	530,197	68,770	2,048,736	41,776,643	3.8
경기	22,057,431,638	515,406,470	124,294,926	34,837,092	16,000,000	7,370,717	896,737	3,837,000	686,642,942	3.1
강원	4,228,906,500	71,550,000	33,804,272	37,987,181	5,930,000	469,130	425,812	773,629	145,010,024	3.4
충북	3,803,092,427	86,702,102	33,523,770	16,036,793	40,358	612,873	454,548	265,620	137,595,706	3.6
충남	5,183,489,904	151,130,266	57,279,498	10,883,432	2,629,464	519,900	690,514	1,232,275	221,735,885	4.3
전북	4,728,900,000	97,814,686	71,964,945	9,405,703	4,978,632	1,634,051	240,975	543,335	181,603,695	3.8
전남	4,917,000,000	90,306,840	47,309,517	5,374,239	3,173,266	-	187,400	60,000	143,237,996	2.9
경북	5,644,493,684	121,923,501	74,214,770	25,997,751	4,442,835	396,450	409,058	2,255,961	225,197,491	4.0
경남	7,312,981,660	159,405,123	97,332,478	60,751,804	1,001,606	3,317,655	778,832	9,664,298	331,250,190	4.5
제주	1,603,923,199	37,101,000	24,747,746	6,259,695	205,000	787,843	210,067	1,443,008	70,549,359	4.4
계	94,652,808,623	2,285,297,475	1,037,752,388	286,391,017	67,629,150	22,161,363	6,575,512	27,572,107	3,665,749,862	3.9

※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자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2024년도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 3조 6,657억, 국립 특수학교 633억, 국립학교 특수학급 46억을 합하여 총 3조 7,337억 원임

〈표 3·37〉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단위: 천 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시도	2,285,297,475	1,037,752,388	286,391,017	22,161,363	6,575,512	27,572,107	3,665,749,862	
국립	특수학교	36,241,963	10,518,069	14,784,205	1,606,181	159,374	5,600	63,315,392
	특수학급	2,508,681	2,038,385	65,312	35,900	6,600	29,225	4,684,103
계	2,324,048,119	1,050,308,842	301,240,534	23,803,444	6,741,486	27,606,932	3,733,749,357	

- 2024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2,296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42천 원 감소함

〈표 3·3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 원)

연도	특수교육 예산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
2018	2,759,503,150	90,780	30,398
2019	2,984,447,992	92,958	32,105
2020	3,134,043,528	95,420	32,845
2021	3,188,731,273	98,154	32,487
2022	3,305,625,487	103,695	31,878
2023	3,679,244,503	109,703	33,538
2024	3,733,749,357	115,610	32,296

- 2024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3조 7,638억 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약 370억 원 증가된 금액이며, 2024년 6월 기준 교육예산의 4.4%를 차지함

〈표 3·39〉 연도별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

(단위: 천 원, %)

연도	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2017	57,003,830,743	2,664,432,153	4.7
2018	63,872,934,485	2,783,412,270	4.4
2019	70,743,520,000	3,039,704,368	4.3
2020	72,097,627,000	3,174,800,528	4.4
2021	70,429,061,000	3,248,756,273	4.6
2022	83,362,762,000	3,343,304,487	4.0
2023	92,102,436,000	3,726,768,503	4.0
2024	86,045,510,000	3,763,794,357	4.4

*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 고등·평생지원특별회계 예산

** 시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 향후 과제

-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특수교육 정책 추진 및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기준 유치원 863명, 초등학교 842명, 중학교 360명, 고등학교 177명으로 총 2,242명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음

〈표 3·4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8	41	19	13	131
부산	97	32	8	4	141
대구	33	50	14	4	101
인천	53	7	7	-	67
광주	32	5	4	1	42
대전	5	3	1	-	9
울산	29	34	7	2	72
세종	2	1	-	-	3
경기	93	201	69	27	390
강원	27	39	14	12	92
충북	31	18	15	11	75
충남	38	60	24	8	130
전북	62	62	29	14	167
전남	53	29	45	14	141
경북	76	107	56	41	280
경남	113	99	40	22	274
제주	61	54	8	4	127
계	863	842	360	177	2,242

■ 향후 과제

- 통합학급 내 모든 학생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통합교육 협력교수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를 확대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 2023.3.29 별표 2 일부개정)
 -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56,306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통합학교 관리자 교(원)장 11,265명이 특수(통합)교육 연수 과정에 참여함
-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 및 일반·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을 위해 '정다운학교' 173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2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표 3·41〉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3~15시간 미만	15~29시간	30~59시간	60시간 이상	계
서울	4,900	954	573	663	7,090
부산	828	1,082	867	1,117	3,894
대구	501	838	982	669	2,990
인천	880	1,074	793	1,221	3,968
광주	129	420	446	442	1,437
대전	58	65	106	1,664	1,893
울산	279	625	398	465	1,767
세종	261	109	109	108	587
경기	5,778	2,527	2,101	2,222	12,628
강원	1,150	150	229	141	1,670
충북	550	745	460	614	2,369
충남	1,023	731	856	373	2,983
전북	647	313	802	432	2,194
전남	697	312	737	381	2,127
경북	1,136	873	570	655	3,234
경남	1,453	1,206	722	1,004	4,385
제주	397	210	340	143	1,090
계	20,667	12,234	11,091	12,314	56,306

※ 2023학년도 통합학급 담당교사 기준

〈표 3·42〉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현황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교(원)장 수	전체 통합학교 교(원)장 수
서울	1,164	1,308
부산	713	750
대구	521	555
인천	592	653
광주	267	325
대전	295	338
울산	269	277
세종	121	136
경기	2,649	2,721
강원	424	508
충북	466	507
충남	622	706
전북	643	670
전남	591	675
경북	857	895
경남	874	960
제주	197	206
계	11,265	12,190

〈표 3·43〉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	5	4	2	16
부산	2(1)	5(1)	4	1	12(2)
대구	2(1)	12	2	2	18(1)
인천	2	1	1(1)	1	5(1)
광주	4	-	-	-	4
대전	-	1	2	-	3
울산	3	9(1)	-	1	13(1)
세종	-	4	-	2	6
경기	10	13	4	5(1)	32(1)
강원	-	-	2(1)	2	4(1)
충북	2	4	1	1	8
충남	7	4	-	1	12
전북	3(1)	9(1)	1	-	13(2)
전남	2	3(1)	1	-	6(1)
경북	5	3	4(1)	3	15(1)
경남	-	1(1)	-	-	1(1)
제주	1	2	2	-	5
계	48(3)	76(5)	28(3)	21(1)	173(12)

※ 괄호 안의 학교 수는 연구학교 수

■ 향후 과제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해 정다운학교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실행력 향상을 위해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 추진 및 통합교육연구회 조직·운영 활성화
-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 통합학교에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사 배치 기준 마련

3)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방송(유아: 애니메이션, 초등: ‘대한민국 1교시’, 중등: 드라마)을 민관 협력으로 제작·보급하여 일반 국민의 장애인식개선 및 학교 현장의 장애이해교육을 지원함
 - 2023년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18,818개교로, 전체의 94.1%임

〈표 3·44〉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단위: 표, %)

시도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율
서울	2,088	1,986	95.1
부산	983	934	95.0
대구	772	753	97.5
인천	925	887	95.9
광주	572	555	97.0
대전	543	525	96.7
울산	416	416	100.0
세종	165	160	97.0
경기	4,646	4,326	93.1
강원	970	827	85.3
충북	785	769	98.0
충남	1,055	913	86.5
전북	1,262	1,157	91.7
전남	1,336	1,240	92.8
경북	1,521	1,419	93.3
경남	1,641	1,641	100.0
제주	310	310	100.0
계	19,990	18,818	94.1

※ 2023. 12. 31. 기준

■ 향후과제

- 각급학교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보급 추진
-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백일장, 교사 대상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관련 법규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3항, 제4항)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96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내외부 위원 2,748명을 구성함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등 총 4,941교에 현장지원을 실시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접수를 위한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연계하여 운영함

〈표 3·4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단위: 개, 명)

시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수
서울	11	192
부산	6	82
대구	6	127
인천	6	77
광주	3	57
대전	3	49
울산	3	48
세종	2	28
경기	29	427
강원	17	208
충북	11	174
충남	15	203
전북	14	178
전남	23	333
경북	23	292
경남	21	241
제주	3	32
계	196	2,748

※ 인권지원단 구성(최소 8명 이상): 센터장(담당과장) 1명, 장학사(연구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1명, 상담전문인력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표 3·46〉 2023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

(단위: 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모니터링 학교 수	147	130	270	562	580	591	486	254	474	521	500	426	4,941

- 2024년 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강좌는 198개임
- 2024년 일반교육교원 대상 전체 연수과정 8,191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443개임

〈표 3·47〉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강좌 수	11	5	3	6	5	17	3	1	26	12	12	21	14	32	18	10	2	198

〈표 3·48〉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일반교육교원 대상 연수과정 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연수과정 수
서울	650	36
부산	805	23
대구	1,065	9
인천	378	6
광주	327	27
대전	655	35
울산	388	18
세종	193	17
경기	409	57
강원	196	13
충북	136	17
충남	383	23
전북	679	27
전남	65	39
경북	417	35
경남	1,034	46
제주	411	15
계	8,191	443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온라인·대면)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전공과) 총 74,866명 중 21,451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함
 - － 주요 결과로서 학교폭력 영역은 따돌림 9.9%, 언어폭력 7.9%, 신체 폭력 5.5% 순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학습권리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1.4%가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학교생활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2.3%가 ‘도움 제공자로부터 착·탈의 지원 시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6%가 ‘도움 제공자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속상했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함
- 대면 조사의 경우, 후속 조치 지원에 동의하여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88명임
 - － 대면 조사 결과 56건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 유형은 학교폭력 영역에서 비장애학생 52건, 장애학생 2건, 교사 2건, 학습권리 및 학교생활 영역은 해당 사항이 없었음
 -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체 87건 중 상담 52건, 물리적 분리 23건, 교육 프로그램 지원 8건, 치료지원 2건, 지원인력 지원 2건이었으며, 가해자 조치는 전체 76건 중 상담 16건, 사과 15건, 물리적 분리 10건, 특별교육 10건, 교육 프로그램 지원 25건이었음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구성원(교직원, 학생 등)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 및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주요 현황 진단·분석 및 예방·대응 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4년 4월 기준 건강장애학생은 1,979명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2024년 35교로, 48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월평균 이용 건강장애학생 수는 426명임

〈표 3·49〉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명)

시도	병원학교명	월평균 이용 학생 수	담당 인력 수
서울(10)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병원학교	12	의료사회복지사 1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병원학교	22	의료사회복지사 1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학교	7	특수교사 1, 일반교사 1, 예술치료사 1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48	일반교사 1
	서울대학교 통합케어센터 어린이병원학교	33	일반교사 1, 평생교육사 1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	35	의료사회복지사 1
	서울아산병원 병원학교	24	의료사회복지사 1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49	일반교사 1, 심리상담사 1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원학교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3	일반교사 1
부산(3)	동아대학교병원 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대구(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대동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11	특수교사 1
인천(1)	인하대학교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광주(1)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학마을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대전(1)	충남대학교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경기(5)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의료사회복지사 1
	국립암센터 병원학교	5	특수교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학교	5	특수교사 2, 치료사 2
	파주시티재활요양병원 병원학교	10	특수교사 2
	한서중앙병원 병원학교	6	특수교사 2
강원(1)	강릉아산병원 병원학교	8	특수교사 1
충북(2)	충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충북관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충남(2)	국립공주병원어울림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단국대학교병원학교	8	특수교사 1
전북(1)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한누리병원학교	11	일반교사 1
전남(2)	느티나무병원학교	13	특수교사 1
	여미사랑병원학교	20	특수교사 2
경남(2)	경상대학교병원어린이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53	특수교사 2
제주(1)	제주대학교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계	35	426	48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에서 원격수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등은 2,222명임

〈표 3·50〉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현황

(단위: 학급, 명, 일)

원격수업시스템 명	학급 수	강사 수	전체 학생 수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개별학생 연평균 이용일 (23.6.1.~24.5.31.)
			건강 장애	기타	계		
꽃밭무지개교실	14	14	245	69	314	244	121
꿈사랑학교	39	26	464	132	596	506	194
스쿨포유	34	34	1,027	285	1,312	1,414	150
계	87	74	1,736	486	2,222	-	-

■ 향후 과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제공 및 학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병원학교 유관기관 및 관계자 간 협력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4년 4월 기준 특수학교에 설치된 305개 순회·과건학급에서 315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교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1,074명이며, 기관별로 가정 877명, 시설 134명, 병원 63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65명, 초등학교 469명, 중학교 193명, 고등학교 247명임

〈표 3·51〉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급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과건·겸임	877	134	63	-	1,074	165	469	193	247	1,074	305	315

- 2024년 4월 기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215개의 순회·과건학급에서 227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급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646명이며, 기관별로 가정 481명, 시설 143명, 병원 4명, 일반학교 18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 62명, 초등학교 265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79명임

〈표 3·52〉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급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481	143	4	18	646	62	265	140	179	646	215	227

- 2024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1,662명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학생 수는 총 2,896명이며, 기관별로 가정 424명, 시설 50명, 병원 41명, 일반학교 2,381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033명, 초등학교 1,057명, 중학교 495명, 고등학교 311명임

〈표 3·5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급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교육지원센터	424	50	41	2,381	2,896	1,033	1,057	495	311	2,896	1,662*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169명 포함

■ 향후 과제

-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전담인력 확대 및 순회교육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국 1,184개 기관에서 1,020개 기관과 연계하여 2,948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82,99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852개 기관에서 652개 기관과 연계하여 1,58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3,79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3·5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현황

(단위: 기관, 개, 명)

시도	문화예술				체육			
	운영 기관 수	연계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운영 기관 수	연계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서울	49	129	318	14,044	38	42	122	2,173
부산	193	33	524	5,189	103	9	234	3,545
대구	124	58	195	4,968	78	35	164	4,413
인천	80	11	80	1,018	27	8	29	607
광주	9	30	56	2,765	8	7	24	768
대전	23	17	50	2,612	17	5	32	1,072
울산	12	17	82	2,483	7	4	13	583
세종	12	19	46	1,077	8	18	39	462
경기	213	194	330	10,248	180	99	180	4,776
강원	54	54	79	4,046	24	33	45	1,335
충북	21	36	49	2,469	11	15	20	1,540
충남	38	218	500	15,810	20	75	164	2,617
전북	132	77	235	3,510	136	121	225	2,744
전남	55	38	157	4,161	48	49	118	2,427
경북	88	68	113	5,351	103	77	96	2,729
경남	67	11	111	2,803	9	9	22	1,399
제주	14	10	23	436	35	46	56	606
계	1,184	1,020	2,948	82,990	852	652	1,583	33,796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강화
- 관계기관 협력 확대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건강 증진 도모
- 장애학생 문화체육예술 분야 인재 발굴·양성 및 우수사례 확산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지원,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33교) 내실화 지원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을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53교)’ 운영

〈표 3·55〉 특수학교 진로·직업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단위: 교, 명)

시도	예술·체육분야 중점 교육과정		직업교육 중점학교		초·중·고 진로 연계교육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서울	2	48	3	59	17	1,994
부산	-	-	1	79	13	142
대구	1	190	1	168	5	433
인천	3	160	2	134	7	1,240
광주	1	56	1	31	3	369
대전	-	-	-	-	3	325
울산	2	143	3	151	3	208
세종	1	85	1	20	1	16
경기	8	1,128	6	193	23	2,050
강원	1	39	-	-	9	197
충북	4	551	2	51	6	927
충남	4	383	9	357	8	336
전북	10	973	2	49	3	169
전남	6	392	-	-	9	928
경북	2	251	3	102	4	260
경남	2	294	1	31	2	225
제주	-	-	-	-	3	595
계	47	4,693	35	1,425	119	10,414

〈표 3·5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개관 연도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장애유형	사업직종
2010	대구5교통합	대구	사립	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사무용지, 세탁, 홍보판촉물제작 등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도자기, 천연비누, 제과·제빵, 천연염색 등
2011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이료
	대전해광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공예, 운동화 전문세탁 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원예, 천연비누, 조립, 임가공, 직업체험 등
2012	꽃동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제과·제빵 등
	미추홀학교	인천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전기회로접속장치, 조명장치, 휴게음식점 등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포장·충전, 세탁 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도자기, 원예, 공예 등
2013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목장갑, 도자기, 공예품 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비누, 공예품, 원예 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향초 등
	울산해인학교	울산	공립	지적장애	자동차 부품제조, 세차, 신발세탁 등
	창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양과·대추즙, 직업체험 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장갑, 핸드페인팅, 직업체험 등
	태백리온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부천상록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스팀세차, 스팀세차, 클린서비스, 임가공업 등
	부천해림학교*	경기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가공, 소독, 직업체험 등
	2014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 임가공업 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면장갑, 가구, 임가공 등
2015	안동영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2016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직업체험 등
2017	한국경진학교	경기	국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버섯재배·유통, 임가공업, 직업체험 등
2018	서산성봉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건조식품, 위생용품 제조
	부산해마루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농업생산물, 농산물 건조식품, 직업체험 등
2019	소림학교	전남	사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웰빙건강음료 제조·판매, 외주사업장 등
	상희학교*	경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2023	청주혜원학교*	충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예산꿈빛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연수세트, 캠핑용 나무제품 등
	대전해든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탁, 음·식료품 등
	아름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커피전문점)

*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사업직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024년 현재 교육부 지정 34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9교가 운영 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5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지정연도 및 운영학교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	
서울	상암교	경복교		(문원교) (서울문화교)	(경기교)			관악교							3(3)
부산			부산전자 공업교												1
대구	대구과학 기술교					대구농업 마이스터교									2
인천			강남영상 미디어교			박문여교		인화여교				(계산 공업교)			3(1)
광주	광주전자 공업교														1
대전		동대전교											(김미중 대전전자 디자인교)		1(2)
울산															-
세종															-
경기	성남테크노 과학교 이천제일교	인양공업교 은평교 (포천일교) (안성교)	수원 정보 과학교			(오산 정보교)									5(3)
강원			영서교												1
충북	제천제일교		청주 농업교				충북산업 과학교								3
충남	공주생명 과학교	금산산업교 논산공업교	당진 정보교 서천교	(온양농화교) (천안공업교)	(태안교)	주산 산업교 (부여 정보교)		(청양교)	(서산 중앙교)						6(6)
전북							이리교				(전북 유니텍교)			(군산여자 산업교)	1(2)
전남	목포 공업교		전남 기술 과학교				순천 공업교								3
경북		김해생명 과학교						(인동교)							1(1)
경남		김해생명 과학교													1
제주	제주교	함덕교										(서귀포산업 과학교)			2(1)
계	9	9(2)	8	(4)	(2)	3(2)	3	2(2)	(1)	-	(1)	(2)	(2)	(1)	34(19)

※ ()안의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고용 관계부처 연계 강화
 -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기 제공 및 체계적 진로·직업교육 이력 관리를 위해 구축한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 2024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032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8명으로 취업률은 7.1%임

〈표 3·58〉 2024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의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327	257	1	-	1	1	-	-	-	2	4	6	2	-	3	20	28.6
부산	146	66	-	6	-	-	-	-	-	-	-	-	-	-	-	6	7.5
대구	140	108	-	1	-	-	-	-	1	-	-	-	-	-	-	2	6.3
인천	122	58	-	-	-	-	-	-	-	-	-	-	-	-	-	-	-
광주	96	47	-	1	-	-	-	1	-	-	-	-	-	-	1	3	6.1
대전	74	55	-	-	-	-	-	-	-	-	-	-	-	-	-	-	-
울산	52	34	-	-	-	-	-	-	-	-	-	-	-	-	-	-	-
세종	4	4	-	-	-	-	-	-	-	-	-	-	-	-	-	-	-
경기	372	127	-	4	-	-	1	-	-	-	3	6	1	-	-	15	6.1
강원	64	46	-	-	-	-	-	-	-	-	-	-	-	-	1	1	5.6
충북	101	78	-	-	-	-	1	-	-	2	-	2	1	-	-	6	26.1
충남	76	47	-	-	-	-	-	-	-	-	-	-	-	-	-	-	-
전북	89	47	-	-	-	-	-	-	-	-	-	-	-	-	1	1	2.4
전남	94	46	-	-	-	-	-	1	-	-	-	-	-	-	-	1	2.1
경북	107	74	-	-	-	-	-	-	-	-	-	-	-	-	-	-	-
경남	137	114	-	-	-	-	-	-	1	1	-	-	-	-	-	2	8.7
제주	31	10	-	-	-	-	-	-	-	-	-	1	-	-	-	1	4.8
계	2,032	1,218	1	12	1	1	2	2	2	5	7	15	4	-	6	58	7.1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4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263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15명으로 취업률은 37.1%임

〈표 3·59〉 2024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377	128	4	5	-	-	9	-	7	17	36	3	7	7	15	110	44.2
부산	177	117	1	5	-	-	2	-	1	-	3	1	1	1	7	22	36.7
대구	128	109	-	-	-	-	-	-	-	-	1	-	-	-	1	2	10.5
인천	182	120	-	5	-	-	1	-	-	-	6	-	1	-	5	18	29.0
광주	90	70	1	-	-	-	-	-	-	-	1	-	-	-	1	3	15.0
대전	116	85	-	1	-	-	1	-	-	1	2	1	-	-	1	7	22.6
울산	69	56	-	-	-	-	-	-	-	-	-	3	-	-	1	4	30.8
세종	20	12	-	1	-	-	-	-	-	-	2	-	-	2	-	5	62.5
경기	982	504	10	34	-	1	42	-	5	14	17	10	17	3	22	175	36.6
강원	79	36	-	3	-	-	-	-	-	2	1	1	1	1	2	11	25.6
충북	142	72	1	7	-	-	1	-	-	7	3	1	6	1	7	34	48.6
충남	196	110	1	12	-	-	4	-	-	5	3	-	5	1	8	39	45.3
전북	108	66	1	2	-	-	4	-	-	4	-	-	2	-	-	13	31.0
전남	147	88	-	2	-	-	-	-	-	2	-	-	-	1	6	11	18.6
경북	171	118	-	4	-	-	2	-	1	6	4	1	4	-	-	22	41.5
경남	232	147	5	8	2	-	4	-	-	3	4	-	8	-	3	37	43.5
제주	47	38	-	-	-	-	-	-	-	1	1	-	-	-	-	2	22.2
계	3,263	1,876	24	89	2	1	70	-	14	62	84	21	52	17	79	515	37.1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4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952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0명으로 취업률은 15.3%임

〈표 3·60〉 2024년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제과·제빵	의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	소계	
서울	156	99	-	-	-	1	-	-	-	-	2	1	1	-	5	10	17.5
부산	91	62	-	1	-	-	1	-	-	-	2	-	-	-	-	4	13.8
대구	62	55	-	-	-	-	-	-	-	-	-	-	-	-	-	-	-
인천	63	30	-	2	-	1	-	-	-	-	-	-	-	-	3	6	18.2
광주	35	29	1	-	-	-	-	-	-	-	1	-	-	-	-	2	33.3
대전	35	26	-	-	-	-	-	-	-	-	-	1	-	-	1	2	22.2
울산	27	23	-	-	-	-	-	-	-	-	-	-	-	-	1	1	25.0
세종	3	3	-	-	-	-	-	-	-	-	-	-	-	-	-	-	-
경기	188	109	-	-	-	-	-	-	-	-	2	1	-	-	-	3	3.8
강원	29	18	-	1	-	1	-	-	-	-	-	-	1	-	-	3	27.3
충북	53	30	-	3	-	-	-	-	-	1	-	1	-	-	3	8	34.8
충남	15	12	-	1	-	-	-	-	-	-	-	-	-	-	-	1	33.3
전북	36	21	-	-	-	-	-	-	-	-	-	-	-	-	-	-	-
전남	10	7	-	-	-	-	-	-	-	-	-	-	-	-	-	-	-
경북	40	20	-	-	-	-	-	-	-	-	1	-	1	-	2	4	20.0
경남	86	63	-	5	-	-	-	-	-	-	1	-	-	-	-	6	26.1
제주	23	18	-	-	-	-	-	-	-	-	-	-	-	-	-	-	-
계	952	625	1	13	-	3	1	-	-	1	9	4	3	-	15	50	15.3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4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2,259명 중 1,041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46.9%임

〈표 3·61〉 2024년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이수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269	6	1	11	2	4	-	8	2	3	8	12	8	1	5	65	24.7
부산	113	1	5	23	2	-	-	2	1	4	2	1	3	4	3	50	44.6
대구	179	1	8	30	-	-	5	-	2	26	3	4	8	1	13	100	56.2
인천	155	4	1	13	-	-	2	11	-	7	30	1	7	2	5	79	52.3
광주	70	1	4	19	-	-	-	3	-	2	2	2	-	-	1	33	47.8
대전	145	7	-	19	-	-	-	14	-	9	4	2	4	-	7	59	42.8
울산	89	1	2	12	2	-	3	-	-	5	9	7	5	-	1	46	52.3
세종	16	-	-	5	-	-	-	-	-	-	1	-	3	-	-	9	56.3
경기	296	1	6	57	-	1	33	1	1	18	21	19	11	2	31	201	68.1
강원	96	1	6	8	-	-	1	2	-	14	5	4	3	-	3	46	48.4
충북	132	4	-	16	-	-	2	9	-	3	4	2	4	1	3	44	34.4
충남	118	-	1	21	2	-	2	-	-	4	9	-	4	-	5	48	40.7
전북	84	2	4	7	2	-	-	5	-	10	7	2	8	-	-	45	54.9
전남	119	1	2	7	-	-	3	1	1	24	13	1	6	-	11	69	58.5
경북	190	6	7	17	1	-	5	-	-	12	8	1	11	2	15	79	42.9
경남	146	5	1	9	-	1	-	-	-	12	4	-	4	-	4	35	24.8
제주	42	-	3	5	1	-	4	-	3	7	7	1	2	-	-	33	78.6
계	2,259	41	51	279	12	6	60	56	10	160	137	59	91	13	107	1,041	46.9

※ 취업률 = {취업자 수 / (이수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4년 전국 166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 714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4,900명이 배치되어 있음
- 2024년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일반학교 17교에 전공과 29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158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음

〈표 3·6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특수학교	166	714	4,900
일반학교	17	29	158
계	183	743	5,058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재능 발굴 및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지원을 위해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양질의 일 경험 기회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연계 활성화 및 현장중심의 다양한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기 제공 및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한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4년 79,630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63〉 치료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지원 인원	지원 예산
서울	12,094	17,050,120
부산	5,416	11,577,120
대구	5,476	7,757,916
인천	6,259	9,760,663
광주	2,723	3,807,520
대전	2,211	2,909,523
울산	2,422	4,484,222
세종	1,099	1,522,465
경기	13,427	33,048,440
강원	2,615	4,065,300
충북	3,754	5,988,413
충남	3,914	6,152,389
전북	3,790	7,251,122
전남	2,673	5,755,599
경북	5,033	10,082,135
경남	5,020	11,138,823
제주	1,704	3,209,316
계	79,630	145,561,086

-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2024년 4월 기준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사회복지요원 총 14,842명이 배치됨
-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10,050명으로 특수학교 3,234명, 특수학급 6,675명, 일반학급에 141명이 배치됨
- 사회복지요원은 4,792명으로 특수학교 1,762명, 특수학급 2,946명, 일반학급에 84명이 배치됨

〈표 3·6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급					사회 복무 요원	유급					사회 복무 요원	유급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자활 후원 단체)	기타	소계	사회 복무 요원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자활 후원 단체)	기타	소계	사회 복무 요원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자활 후원 단체)	기타	소계	사회 복무 요원	소계	
서울	409	10	-	419	374	793	946	35	-	981	416	1,397	4	2	-	6	1	7	2,197
부산	328	-	-	328	75	403	319	19	-	338	115	453	-	-	-	-	-	-	856
대구	249	-	-	249	147	396	318	-	-	318	148	466	3	-	-	3	10	13	875
인천	265	-	-	265	25	290	641	5	-	646	14	660	18	-	-	18	-	18	968
광주	107	-	-	107	87	194	173	14	-	187	93	280	-	-	-	-	-	-	474
대전	206	-	-	206	57	263	392	-	-	392	112	504	-	-	-	-	1	1	768
울산	135	-	-	135	124	259	344	-	-	344	244	588	3	-	-	3	4	7	854
세종	51	-	-	51	11	62	140	-	-	140	10	150	-	-	-	-	-	-	212
경기	320	-	-	320	406	726	1,024	-	-	1,024	1,165	2,189	-	-	-	-	-	-	2,915
강원	68	-	-	68	70	138	239	-	-	239	7	246	14	-	-	14	-	14	398
충북	186	-	-	186	29	215	237	-	-	237	32	269	-	-	-	-	-	-	484
충남	159	-	22	181	33	214	425	-	20	445	43	488	3	-	-	3	-	3	705
전북	157	-	-	157	13	170	269	-	-	269	71	340	3	-	-	3	10	13	523
전남	123	8	-	131	49	180	222	11	-	233	143	376	7	-	-	7	16	23	579
경북	118	-	-	118	130	248	323	-	-	323	120	443	82	-	-	82	42	124	815
경남	229	-	-	229	93	322	419	-	-	419	197	616	-	-	-	-	-	-	938
제주	84	-	-	84	39	123	140	-	-	140	16	156	2	-	-	2	-	2	281
계	3,194	18	22	3,234	1,762	4,996	6,571	84	20	6,675	2,946	9,621	139	2	-	141	84	225	14,842

- 교통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30,390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17,502명을 제외한 17,080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 학생은 85,220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3,926명을 제외하고 35,377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약 604억 원임

〈표 3·65〉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통학 지원 인력 수	통학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통학 지원 인력 수	통학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4,581	2,193	116	938	570	860	121	6,420	9,965	-	-	-	626	1,065	-	575
부산	2,064	1,322	64	411	502	139	170	382	5,371	-	262	810	412	336	-	621
대구	2,036	1,053	-	597	351	368	50	3,069	3,806	30	-	382	290	398	16	735
인천	2,002	1,206	13	101	77	162	61	3,751	6,159	289	111	43	301	552	-	511
광주	1,307	747	11	256	140	235	43	470	2,154	31	114	224	148	282	31	657
대전	1,128	665	37	110	79	149	59	1,726	2,468	16	135	174	111	294	7	571
울산	798	538	1	212	132	182	28	212	2,257	-	95	528	351	382	-	926
세종	279	142	13	24	17	17	16	211	900	64	43	51	22	44	40	74
경기	5,578	2,922	225	2,009	1,258	1,997	161	10,437	23,003	-	2,249	5,480	2,767	2,993	-	6,050
강원	923	578	13	136	104	95	35	278	2,326	463	121	849	325	202	63	976
충북	1,484	917	15	459	288	346	54	2,520	3,472	258	143	968	528	538	162	1,430
충남	1,446	1,159	30	97	36	30	61	4,570	4,429	601	140	154	184	175	243	328
전북	1,192	925	1	63	42	50	52	3,037	3,356	573	69	417	252	363	58	679
전남	1,240	784	2	156	144	212	30	396	3,248	460	163	509	497	766	69	654
경북	1,563	830	16	190	180	256	38	1,218	4,678	564	214	1,108	584	609	228	2,506
경남	2,054	1,209	10	532	371	547	49	1,716	6,108	557	175	875	474	811	235	1,428
제주	715	312	10	142	86	48	24	767	1,520	20	66	619	239	165	23	510
계	30,390	17,502	577	6,433	4,377	5,693	1,052	41,180	85,220	3,926	4,100	13,191	8,111	9,975	1,175	19,231

- 2024년 6월 기준 전국 195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854대를 운영하며, 특수학교 재학생 28,953명(순회교육 지원학생 1,074명 제외) 중 17,502명(60.4%)이 이용하고 있음

〈표 3·66〉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대, %)

시도	학생 수			통학버스 수	이용학생 수	이용률
	전체학생 수(A)	순회교육 학생 수(B)	계(A-B)			
서울	4,531	233	4,298	112	2,193	51.0
부산	2,064	60	2,004	54	1,322	66.0
대구	2,027	61	1,966	50	1,053	53.6
인천	1,988	112	1,876	47	1,206	64.3
광주	1,307	72	1,235	43	747	60.5
대전	1,115	48	1,067	34	665	62.3
울산	795	72	723	28	538	74.4
세종	279	20	259	8	142	54.8
경기	5,489	45	5,444	161	2,922	53.7
강원	919	19	900	32	578	64.2
충북	1,462	78	1,384	49	917	66.3
충남	1,441	56	1,385	54	1,159	83.7
전북	1,190	19	1,171	51	925	79.0
전남	1,240	40	1,200	30	784	65.3
경북	1,536	-	1,536	39	830	54.0
경남	2,049	122	1,927	49	1,209	62.7
제주	595	17	578	13	312	54.0
계	30,027	1,074	28,953	854	17,502	60.4

- 특수학교 통학차량 총 854대 중 478대는 학교 소유, 376대는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안전교육은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인력 총 2,091명이 이수하였음

〈표 3·67〉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단위: 교, 대, 명)

시도	특수 학교 수	통학차량 현황						안전교육 이수		
		전체 통학 차량 수	운영 차종(대수)			운영 형태(대수)		운영자 (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 인력
			16인승 이하	17인~35인승 이하	36인승 이상	학교소유	임대			
서울	32	112	3	25	84	67	45	32	112	115
부산	15	54	-	30	24	54	-	15	54	170
대구	11	50	-	13	37	8	42	11	50	50
인천	10	47	-	8	39	7	40	10	47	61
광주	6	43	-	12	31	8	35	6	43	43
대전	6	34	2	5	27	16	18	6	32	59
울산	4	28	-	17	11	27	1	4	28	28
세종	2	8	-	2	6	5	3	2	8	16
경기	38	161	4	37	120	81	80	38	161	161
강원	9	32	-	14	18	31	1	9	32	35
충북	11	49	3	14	32	31	18	11	48	54
충남	10	54	-	22	32	27	27	10	54	61
전북	10	51	-	34	17	24	27	10	51	52
전남	9	30	-	8	22	21	9	9	30	30
경북	8	39	1	17	21	28	11	8	38	38
경남	11	49	1	21	27	34	15	11	49	49
제주	3	13	-	6	7	9	4	3	13	24
계	195	854	14	285	555	478	376	195	850	1,046

- 급식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30,390명 중 29,961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85,220명 중 85,216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1,189억 원임

〈표 3·68〉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4,581	4,531	6,216	6,216	6,800	6,800	6,619	9,965	9,965	4,244	5,994	6,672	6,963	11,036
부산	2,064	2,064	,530	4,530	4,530	4,530	1,795	5,371	5,371	2,920	3,860	4,930	5,150	4,248
대구	2,036	2,027	7,505	7,505	7,505	7,505	2,827	3,806	3,806	5,958	5,916	7,039	7,639	4,528
인천	2,002	1,924	4,680	4,680	4,680	4,680	1,729	6,159	6,159	4,120	4,840	5,070	5,170	5,757
광주	1,307	1,307	9,409	9,409	9,409	9,409	2,337	2,154	2,154	3,160	6,568	7,338	7,378	2,727
대전	1,128	1,113	5,130	5,130	5,130	5,130	1,260	2,468	2,464	2,897	3,583	4,567	4,600	1,838
울산	798	795	4,970	4,970	4,970	4,970	764	2,257	2,257	3,170	3,490	4,160	4,740	1,638
세종	279	279	6,639	6,639	6,639	6,639	361	900	900	4,579	5,919	6,529	6,639	991
경기	5,578	5,489	4,556	4,505	5,398	5,398	4,914	23,003	23,003	3,691	3,923	4,670	4,883	17,402
강원	923	919	5,30	5,130	5,130	5,130	877	2,326	2,326	3,620	4,110	4,760	5,130	1,886
충북	1,484	1,462	4,955	4,955	4,955	4,955	2,749	3,472	3,472	3,565	3,786	4,505	4,753	4,589
충남	1,446	1,441	3,330	4,730	5,700	5,240	1,373	4,429	4,429	3,330	4,730	5,700	5,240	4,118
전북	1,192	1,190	4,400	4,400	4,400	4,400	997	3,356	3,356	3,500	3,700	4,400	4,500	2,511
전남	1,240	1,240	5,179	5,179	5,179	5,179	1,221	3,248	3,248	3,651	4,351	4,831	5,114	2,796
경북	1,563	1,536	7,950	7,950	7,950	7,950	2,902	4,678	4,678	6,410	7,210	7,810	7,950	8,147
경남	2,054	2,049	4,258	5,676	6,253	6,970	2,561	6,108	6,108	4,039	6,462	7,534	8,120	7,737
제주	715	595	4,960	4,960	4,960	4,960	549	1,520	1,520	3,710	3,710	4,590	4,900	1,142
계*	30,390	29,961	93,797	96,564	99,588	99,845	35,835	85,220	85,216	66,564	82,152	95,105	98,869	83,091

* 급식을 하지 않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363명) 및 대학형전공과 등(70명) 미포함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역량 강화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 강구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관련 법규

- 각급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2023년 9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특수·각종학교는 총 12,225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5.0%임

〈표 3·69〉 2023년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1,362	96.5	98.2	94.6	91.5	78.3	89.6	97.2	93.7	83.6	75.6	77.2	88.7
부산	635	98.0	99.4	97.5	96.9	93.2	95.4	98.9	94.0	98.0	97.0	96.2	96.8
대구	467	100.0	99.8	99.8	99.8	98.9	98.1	99.8	98.3	98.7	94.7	98.1	98.7
인천	552	96.7	97.6	97.5	96.9	92.6	94.2	98.2	88.6	90.8	85.7	79.5	92.6
광주	322	98.8	99.1	97.8	96.6	89.1	87.6	98.1	96.3	97.2	97.8	87.9	95.1
대전	312	99.4	100.0	100.0	99.7	91.0	97.1	99.7	98.1	99.7	98.1	92.0	97.7
울산	247	97.2	99.6	98.4	97.2	98.0	96.0	99.6	92.7	99.2	99.2	99.2	97.8
세종	103	99.0	100.0	99.0	96.1	93.2	99.0	100.0	93.2	100.0	98.1	97.1	97.7
경기	2,544	99.0	99.1	98.6	97.3	93.4	93.7	98.9	94.5	96.8	95.7	93.4	96.4
강원	653	97.7	98.0	97.5	96.6	94.3	85.3	96.3	82.7	96.0	93.7	90.7	93.5
충북	495	98.2	99.2	98.0	97.8	98.2	92.9	98.4	94.3	97.4	94.1	91.3	96.3
충남	737	97.8	98.9	97.6	96.1	88.6	85.1	98.6	92.5	95.5	94.7	86.8	93.8
전북	771	98.3	99.4	97.9	97.0	91.7	81.6	98.2	95.6	98.6	98.4	96.0	95.7
전남	861	96.3	98.0	96.1	95.7	96.3	71.8	97.6	95.7	96.7	95.7	90.7	93.7
경북	966	97.4	97.9	97.8	95.9	97.0	90.9	97.2	96.2	96.7	95.6	92.1	95.9
경남	1,003	98.9	98.6	97.8	96.8	98.3	86.0	98.9	97.6	98.0	96.1	93.9	96.5
제주	195	99.5	99.5	99.5	100.0	97.4	100.0	100.0	96.9	100.0	96.4	97.9	98.8
계	12,225	98.0	98.8	97.6	96.4	92.6	89.5	98.3	94.2	95.5	93.2	90.6	95.0

※ 단순 설치율 현황

- 설립 주체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는 96.0%, 사립학교는 88.8%임

〈표 3·70〉 2023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표,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국·공립	10,445	98.7	99.1	98.4	97.4	94.8	92.0	98.7	94.8	96.5	94.3	91.7	96.0
사립	1,780	94.0	96.7	93.2	90.7	79.4	74.8	95.8	90.7	89.9	87.1	84.2	88.8
계	12,225	98.0	98.8	97.6	96.4	92.6	89.5	98.3	94.2	95.5	93.2	90.6	95.0

-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초등학교 95.5%, 중학교 94.7%, 고등학교 94.0%, 특수학교 98.8%, 각종학교 82.9%임

〈표 3·71〉 2023년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표,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초등학교	6,303	98.4	98.6	97.9	96.8	94.4	90.4	98.3	94.9	96.2	93.7	91.2	95.5
중학교	3,270	98.0	99.1	97.8	96.2	91.6	88.3	98.6	93.8	95.3	93.2	89.7	94.7
고등학교	2,380	97.4	99.2	96.9	95.6	89.0	88.2	98.2	93.0	94.5	92.3	90.2	94.0
특수학교	194	99.0	98.0	100.0	99.5	99.5	98.5	99.5	99.0	96.9	98.0	99.0	98.8
각종학교	78	89.7	88.5	87.2	87.2	83.3	78.2	88.5	78.2	79.5	73.1	78.2	82.9
계	12,225	98.0	98.8	97.6	96.4	92.6	89.5	98.3	94.2	95.5	93.2	90.6	95.0

-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설치 학교는 평균 97.0%, 미설치 학교는 평균 90.7%임

〈표 3·72〉 2023년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표,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8,246	99.3	99.6	99.1	98.1	95.9	95.0	99.5	95.7	97.3	95.2	92.7	97.0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3,979	95.5	97.0	94.5	92.9	85.8	78.0	95.8	91.1	91.8	89.2	86.4	90.7
계	12,225	98.0	98.8	97.6	96.4	92.6	89.5	98.3	94.2	95.5	93.2	90.6	95.0

- 2023년 9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94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8.9%임

〈표 3·73〉 2023년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32	96.9	93.8	100.0	96.9	96.9	96.9	96.9	96.9	93.8	96.9	100.0	96.9
부산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구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천	10	9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1
광주	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	80.0	100.0	96.4
대전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종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38	100.0	94.7	100.0	100.0	100.0	97.4	100.0	97.4	94.7	100.0	100.0	98.6
강원	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8.9	88.9	88.9	97.0
충북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충남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북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남	9	100.0	100.0	100.0	100.0	100.0	88.9	100.0	100.0	100.0	100.0	100.0	99.0
경북	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남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주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94	99.0	97.9	100.0	99.5	99.5	98.5	99.5	99.0	96.9	98.5	99.5	98.9

※ 단순 설치율 현황

■ 향후 과제

- 특수·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지원 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4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6,247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59.9%, 특수학급 졸업생은 57.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은 65.7%이며 전체 진학률은 59.5%임

〈표 3·74〉 2024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소계	
서울	327	377	156	860	234	40	2	2	34	36	21	54	61	257	128	99	484	56.3
부산	146	177	91	414	61	50	1	-	43	14	5	24	47	66	117	62	245	59.2
대구	140	128	62	330	98	66	1	4	28	17	6	15	37	108	109	55	272	82.4
인천	122	182	63	367	56	93	3	-	13	11	2	14	16	58	120	30	208	56.7
광주	96	90	35	221	34	50	3	2	8	4	11	12	22	47	70	29	146	66.1
대전	74	116	35	225	55	67	1	-	12	2	-	6	23	55	85	26	166	73.8
울산	52	69	27	148	31	46	2	-	3	5	3	7	16	34	56	23	113	76.4
세종	4	20	3	27	4	8	-	-	-	-	-	4	3	4	12	3	19	70.4
경기	372	982	188	1,542	121	312	3	-	83	29	6	109	77	127	504	109	740	48.0
강원	64	79	29	172	45	28	1	-	6	7	1	2	10	46	36	18	100	58.1
충북	101	142	53	296	74	47	2	-	18	12	4	7	16	78	72	30	180	60.8
충남	76	196	15	287	47	76	-	-	18	1	-	16	11	47	110	12	169	58.9
전북	89	108	36	233	43	47	3	2	11	3	2	8	15	47	66	21	134	57.5
전남	94	147	10	251	45	52	-	1	18	3	-	18	4	46	88	7	141	56.2
경북	107	171	40	318	73	83	2	-	17	6	1	18	12	74	118	20	212	66.7
경남	137	232	86	455	113	63	1	1	47	13	-	37	49	114	147	63	324	71.2
제주	31	47	23	101	10	28	-	-	7	2	-	3	16	10	38	18	66	65.3
계	2,032	3,263	952	6,247	1,144	1,156	25	12	366	165	62	354	435	1,218	1,876	625	3,719	59.5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24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19개교 62명, 대학 108개교 867명으로 총 929명임

〈표 3·7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교, 명)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교		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2012	16	97	84	566	100	663
2013	17	185	89	649	106	834
2014	16	84	80	637	96	721
2015	18	54	84	753	102	807
2016	15	48	88	768	103	816
2017	15	46	97	832	112	878
2018	16	56	100	888	116	944
2019	16	50	71	905	87	955
2020	25	95	93	898	118	993
2021	24	94	107	797	131	891
2022	23	87	85	832	108	919
2023	18	100	85	834	103	934
2024	19	62	108	867	127	929

※ 최종 등록기준 학교 수, 대상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제외)

※ 출처: 대학정보공시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24. 6월 기준)

- 2024년 6월 기준 대학(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은 230개 대학에 2,251명임
- 교육지원인력 유형은 학내 이동 및 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교육지원인력과 수어 통역, 속기, 점역 등을 대면 또는 원격으로 학습·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교육 지원인력으로 나뉨

〈표 3·76〉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학교 수	교육지원인력 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일반 교육지원인력	대학(원)	138	121	12	1,501	1,634
	전문대학	54	-	-	198	198
	원격대학	2	32	3	-	35
	소계	194	153	15	1,699	1,867
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포함)	대학(원)	33	329	45	-	374
	전문대학	2	5	-	-	5
	원격대학	1	-	5	-	5
	소계	36	334	50	-	384
계	230	487	65	1,699	2,251	

※ 출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사업 신청서 접수 기준), 한국장학재단(국가근로장학금 장애대학생봉사유형)

■ 향후 과제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기기 등 물적자원과 교육보조인력 등 인적자원 추진
- 장애인고등교육센터 지정·운영(2024년)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중앙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 센터 주요업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자료 개발·보급 지원, 담당자 연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 맞춤형 고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음(평생교육법 제15조의2제1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3년 70개 → 2024년 82개(누적) 지정·운영
 - 2023년도에는 총 1,846개 프로그램(지역별 특화, 일자리 연계,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88,835명의 장애인이 참여
- 전국 단위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후속조치)(2024. 1.~)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기초 연구(2024. 1.~11.)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를 통한 내실 있는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
 - * 종사자 장애인 인권 등 역량강화(400명), 공무원 장애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50명),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82명), 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100명)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전국 117개로 4,691명의 학습자가 1,856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22.12.31.) 응답기관 기준)
 -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 등록되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시설(「평생교육법」 제20조의2)

〈표 3·77〉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종사자 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17	1,856	4,691	1,510	1,847
교육청 등록	78	971	2,734	922	1,156
지자체 지정	39	885	1,957	588	691

※ 출처: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2022. 1. 1. ~ 12. 31.기준)

■ 향후 과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속 확대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및 장애인 문해교육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요인 분석 연구’, ‘피질(뇌성)시각장애 학생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 특수교육 중단조사 등을 실시하고 교육부의 특수교육 통계 및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체계 개선과 기초학습능력 검사 개정을 위한 연구 추진 중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온맘 누리집)’을 통하여 장애자녀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특수교육 관련 우수 논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특수교육연구’ 제31권(1호, 2호)를 발간하여 특수교육 관련기관 등에 배부함
- 국내외 특수교육 최신 정보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국내외세미나, 한일특수교육 공동협의회,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특수교육’ 제31권 1호를 발간하여 특수교육 관련기관 등에 배부함

〈표 3·78〉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실태조사	• 2023년 특수교육 실태조사(VI) 후속조치	490
	• 기초학습능력검사 개정 연구(1/4년차)	
특수교육 연구 및 자료 발간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 •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요인 분석 연구 • 피질(뇌성)시각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 2024 특수교육통계 발간 •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온맘) 운영 • 「특수교육연구」 제31권 발간(연 3회) • 「현장특수교육」 제31권 발간(연 2회)	442
특수교육 학술교류 및 홍보	• 제31회 국내세미나 • 제30회 국제세미나 • 국내외 교류 협력 • 국립특수교육원 홍보(리플릿 발간 및 SNS 운영 등)	171
사업관리 및 대외업무	• 2023 회계연도 특수교육 성과분석 • 2024년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 출판권 및 저작권 관리 • 스튜디오 운영	245
계	조사 1건, 연구 4건, 사업 11건, 행사 2건 등	1,348

■ 향후 과제

-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기초 연구 실시 확대 및 통계·실태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향상 방안 모색
- 장애영유아의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진단·배치·지원 연구 추진
- 영아기에서 성인기까지 장애자녀 부모에게 최신 양육·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누리집 '온맘' 콘텐츠의 지속적인 현행화 및 질 개선
- 특수교육 현장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 특수교육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교류 확대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고시('22.12.29.)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초·중·고등학교)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 2025 적용 특수교육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134책, 전자저작물 62종), 2026 적용 특수교육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29책, 전자저작물 11종)
-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 ('24년) 국어(초3~4) → ('25년) 국어(초5~6), 수학(초3~4) → ('26년) 수학(초5~6), 생활영어(중, 고) → ('27년) 정보통신활용(중고)
-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 ('24년) 통합교과, 국어, 수학(초1~2) → ('25년) 국어, 수학, 사회(초3~4)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위한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모니터링단 운영,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 시각장애학생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EBS 수능 방송교재,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문제집 등)를 시·도교육청 요구에 따라 대체자료*로 제작·보급하고 있음
 - * 교과서 및 각종 참고서 등을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확대, 음성(테이저) 등으로 제작 또는 변환한 자료

〈표 3·79〉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용도서 관련 사업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교과용도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 2025 적용 교과용도서 개발(2/2년) - 2026 적용 교과용도서 개발(1/2년) 	14,047
디지털교과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500
교수·학습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200
현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지원 	100
시각장애학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수능 방송교재 시각장애학생용 대체자료 제작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 제작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지원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학생 디지털 대체자료 개발·보급 	486
계	교과용도서 163책 73종, 디지털교과서 1건, 교수학습자료 개발 1건, 현장 지원 5건	15,971

■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현장 지원 등 후속 지원 강화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023. 6., 교육부)에 따른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활용성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및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직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진로·직업교육 과정과 연계한 직무훈련 콘텐츠 개발(돌봄, 대인, 미용, 컴퓨터, 문화예술 영역)을 추진하고 있음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와 장애학생 진로 설계 지원 내실화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운영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구축 등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고용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 국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 주최
 -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예술·체육 교육과정 운영학교, 기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안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이슈페이퍼'를 제공하고 있음

〈표 3·80〉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진로·직업교육 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을 위한 직무훈련 콘텐츠 개발 	85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진로 이슈페이퍼' 제공 	45
계	자료개발 1건, 현장지원 사업 4건	130

■ 향후 과제

- 학생 맞춤형 성장경로 다양화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콘텐츠 개발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지원 사업 추진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하여, 누리과정 연계 유아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196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침해 유형 분석 및 우수사례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점검 결과를 수합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뉴얼 제작·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문성 강화 및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은폐 및 축소 방지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관련 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을 장애인식개선 자료로 제공하고, ‘제2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개최로 범국민 대상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81〉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인권보호 자료 개발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유아용)	150
인권보호 현장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워크숍, 현장지원 결과 수합, 컨설팅 등)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인권지원 관련 모니터링, 인권침해 사안 접수 등)	5
장애공감문화 조성	• 제2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개최 • 장애공감문화 조성 관련 사업	11
자료개발 1건, 현장지원 사업 4건		166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의 내실화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 현행화

5)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은 집합연수 63개 과정과 원격연수 80개 과정에서 각각 7,191명, 25,024명(총 32,215명) 이수함
- 2024년은 특수·일반 교원, 지원인력, 학부모, 공무원 등 특수교육 관련인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64개 과정, 원격연수 9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82〉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2024.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특수교사의 미술과 교수·학습 역량 강화	29	특수학교(급) 교사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의 음악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46	특수학교(급) 초등 교사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역량 강화	34	특수학교(급) 교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이해	233	특수학교(급) 교원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일상생활 활동), 이렇게 활용합니다.(1기)	463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일상생활 활동), 이렇게 활용합니다.(2기)	303	특수학교(급) 교사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연수(1기)	19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연수(2기)	45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통합학급 유아를 위한 문제행동 및 입학 적응 지원 역량 강화	242	유치원(재외한국학교 포함) 특수교사
	특수학교장의 학교경영 역량 강화	133	특수학교 교장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29	특수학교(급) 교사
	유치원 특수학교(급) 교사의 학급 경영 역량 강화	94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치원 특수교사
	병원학교 교사 역량 강화	17	병원학교 담당교사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역량 강화	13	교원(특수, 일반), 관련 업무 담당자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43	교원(특수, 일반), 관련 업무 담당자
	특수교사의 행동지원 역량 강화(이론 및 실습 사전연수)	40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유치원 교사의 장애공감문화 조성파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1기)	142	유치원(재외한국학교 포함) 교사
	초등학교 교사의 장애공감문화 조성파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1기)	365	초등학교, 재외한국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공감문화 조성파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1기)	326	중·고등학교(재외한국학교 포함) 교사
	협업 연수	시각장애 교직원의 K-에듀파인 웹 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1기)	17
시각장애 교직원의 K-에듀파인 웹 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2기)		13	시각장애 교직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 및 시스템 이해		26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초등 교사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협업 연수	소방안전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1기)	47	소방안전강사
	소방안전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2기)	47	소방안전강사
	제2차 초·중등(특수) 교장 자격연수 과정 국립특수교육원 현장방문	481	초·중등(특수) 교감
전문 연수	특수교육 의료인력의 장애공감 문화 조성	40	특수학교(급) 의료인력(간호사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장애공감 문화 조성	6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해외 연수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 사전연수	35	장애학생 가족체험 국외체험 해외연수단
계		3,390	-

〈표 3·83〉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2024.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의 이해	769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이해	489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시각장애의 이해	231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청각장애의 이해	47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지체장애의 이해	96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선택 중심 교육과정 특수교육 전문교과 직업·생활의 이해	127	교원 등
	유치원 현장 중심 통합교육	431	교원 등
	초등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	291	교원 등
	중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	220	교원 등
	고등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	99	교원 등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304	교원 등
	특수교사의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 역량 강화	166	교원 등
	유치원 현장 중심 통합교육(15차시)	120	교원 등
	초등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15차시)	238	교원 등
	중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15차시)	128	교원 등
	고등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15차시)	60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장애학생 부모상담	190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시각장애학생 부모상담	11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청각장애학생 부모상담	9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지적장애학생 부모상담	63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지체장애학생 부모상담	25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자폐성장애학생 부모상담	91	교원 등
	특수교육 디지털 교육자료 만들기	50	교원 등
	특수교육 영상 교육자료 만들기	18	교원 등
	블렌디드 특수교육 수업하기	22	교원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 관련 규정과 근로계약의 이해	6	학교관리자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10	학교관리자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와 복무 관리	34	학교관리자
	실시간 쌍방향 특수교육 수업하기	17	교원 등
	특수교육 수업전문성 향상	45	교원 등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현장 활용	18	교원 등
	장애학생 국어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39	교원 등
	장애학생 수학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1	교원 등
	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기초	284	교원 등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57	교원 등
	장애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첫 걸음	725	교원 등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전문성 강화	145	교원 등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기초)	146	교원 등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심화)	68	교원 등	
	장애학생 문제행동 증재	182	교원 등	
	교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지도 역량 입문	222	교원 등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5	교원 등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6	교원 등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60	교원 등	
	모두를 위한 통합학급 운영 기본	318	교원 등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200	교원 등	
	(학부모) 시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30	공통	
	(학부모) 청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25	공통	
	(학부모) 지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112	공통	
	(학부모) 지체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14	공통	
	(학부모) 자폐 및 정서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62	공통	
	(학부모) 장애아동 의사소통의 실제	101	공통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행동 지원	122	공통	
	특수교육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기본	1,024	공통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전문성 강화	972	공통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고급	1,042	공통	
	NEW! 장애학생의 인권과 성교육	370	공통	
	슬기로운 장애인식개선 생활	387	공통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34	공통	
	미디어교육과 저작권 이해	11	공통	
	보조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현장 활용	27	공통	
	시각장애학생 보행지도	66	공통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기	111	공통	
	2018년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 실시 방법의 이해	95	공통	
	정서행동검사 바로 알기	132	공통	
	특수교육 회소교과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연수	0	해당 교원	
	직무 연수 (공동 활용)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	10	교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교사 소통	9	교원
영상의 시대! 교육 크리에이터를 꿈꾼다		6	교원	
당신을 빛나게 할 스피치 전략		11	교원	
그림책으로 마음 열기		510	교원	
쉽(.)있는 행복 놀이		13	교원	
교육과정 속에 풍당 빠진 SW교육		7	교원	
1년을 알차게! 학급행사 길라잡이	5	교원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공동 활용)	초등저학년을 위한 한글과 셈하기, 쉽게 제대로 가르치기	32	교원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 혁신하기	10	교원
	15色 보석같은 수업 레시피	5	교원
	도란도란 생태놀이 왓자지컬 우리 학급	18	교원
	놀이로 즐거운 수학	34	교원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의 실제	47	교원
	학생정신건강 이해 및 관리	535	교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17	교원
	수업혁신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디자인	10	교원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만들기와 놀이 게임으로 배움 이끌기	50	교원
	장애인 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592	공통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61	공통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93	공통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원 인식개선 연수	46	공통
	내 손에 썩! 온라인 수업 활용하기	80	공통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 양육	648	공통
부모의 자존감	109	공통	
자격 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교사 자격전환 연수	12	해당 교원
계		14,620	-

* 대상 구분: 교원 등(교원, 교육전문직, 지원인력), 공통(학부모 등 일반 국민 포함)

■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적용에 따른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의 교수 학습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특수교육 관련인의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통합교육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강화
- 연수 방법 다양화로 학습자의 연수 기회 확대와 현장 중심의 교육연수 콘텐츠 개발

6)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사업,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장애유형별 클립형 동영상 65종과 현장지원단이 제작한 수업지원자료 140종을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인 에듀에이블(eduable.net)을 통해 보급 예정임

〈표 3·84〉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구분	지원 내용	주 이용자
에듀에이블 (eduable.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배움터, 에듀테크, 멀티미디어북, 클립형 교육영상, 소통 나눔, 현장교사 제작 자료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PAPS-D, 개발 자료 • 대체학습 교과서, 학습참고도서, EBS수능방송교재, 방송교재, 오류접수, 시각장애인 교사용 지도서 • 진로·직업교육자료 • 인권교육자료, 장애공감교육자료, 장애공감 공모전 	학생, 교원, 학부모 등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장애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일상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VR 콘텐츠 2종(신체활동, 여가활동)을 개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정보화 대회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 신장 및 여가생활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경진대회·e스포츠대회·문화행사 등 전국 단위의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 자료 2종(AI 융합, 메이커 융합)을 개발하여 보급 예정임
-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플랫폼 운영,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실감형 체험 교실 콘텐츠 개발 및 체험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그림 상자를 이용한 의사소통교육 등 디지털 기반 수업 개선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class.nise.go.kr)을 운영하고, 사용자 연수 및 수업 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플랫폼 활용을 활성화함
-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발달장애학생 기본 교육과정과 연계 사용이 가능한 일상생활 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 7종, 지체·발달장애학생 다감각적 수업 지원을 위한 과학과(고) 실감형 콘텐츠(VR) 10종을 개발·보급 예정임

- (실감형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운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에듀테크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체험교실용 실감형 콘텐츠 10종 개발 및 체험버스 운영('24, 73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관 협력) 장애 청소년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SKT와 협력하여 서울·경기 지역 특수교육기관 대상 무인정보단말기 및 AI 활용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표 3·85〉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 장애학생 정보화 교육 자료 개발 • 장애학생 e페스티벌 발전 방안 연구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 개발 	1,261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배움터(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 발달장애학생 기본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 지체 및 발달장애 실감형 자료 개발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운영 •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운영 	2,930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정보관 운영 • 전산정보시스템 관리·운영 	582
유관기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지원(SKT) 	-
계	연구 1건, 개발 4건, 운영 6건, 행사 1건, 협력 1건	4,773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확대
- 장애학생 및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기초 연구 추진
- 급격한 과학기술 변화와 미래 교육환경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교육 현장성 강화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의2)

- 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 연구·개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의사소통 도구 개발
- 교육: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82개(누적기준) 도시를 선정·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관련 전국 단위 기초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2024년에는 기초 연구 2건,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각 3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및 콘텐츠 각 1종, 장애인 문해교육 콘텐츠 2종 개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교육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 연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표 3·86〉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단위: 백만 원)

구분	과 제 명	예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3,780
조사·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150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기초 연구	50
연구·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400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300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100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300
	• 장애인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300
교육·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35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45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20
센터 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및 물품 구입 등	54
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건, 조사·연구 2건, 연구·개발 5건, 연수 3건, 센터 운영 1건	5,534

〈표 3·87〉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2020 (10개)	[경기] 광명시, 오산시 [부산] 서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2021 (19개)	[경기]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대구] 수성구, 달서구 [부산] 동구, 동래구, 서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충북] 충주시	
2022 (32개)	[서울] 서대문구 [경기]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광명시, 용인시 [대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부산] 동구, 동래구, 서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영도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전주시, 김제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충북] 충주시, 청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김천시 [광주] 남구, 북구, 서구	
2023 (70개)	[서울] 서대문구, 노원구, 영등포구, 은평구 [부산] 남구, 동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기장군,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동구, 수성구, 서구 [인천] 계양구, 서구 [광주] 남구, 북구, 서구, 광산구, 동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광명시,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여주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충남]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전북]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전남]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경북] 김천시, 경주시, 상주시 [경남] 남해군	
2024 (82개)	계속 지원 (48개)	[서울]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부산] 기장군, 남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구 [대구] 동구, 서구 [인천] 계양구, 서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춘천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전남] 광양시, 나주시 [전북] 군산시, 전주시 [경북] 김천시, 경주시, 상주시 [경남] 남해군
	신규 지정 (12개)	[서울]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부산] 금정구 [대전] 대덕구 [경기] 군포시,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남] 서산시 [충북] 피산군, 증평군 [경북] 안동시
	지정 후 자체 운영 (22개)	[서울] 노원구 [경기]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오산시 [강원] 강릉 [대구] 수성구, 달서구 [부산] 동구, 동래구, 서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충북] 충주시

■ 향후 과제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규모 확대
- 장애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온라인 콘텐츠 등 개발·보급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등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2024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부록 I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137
- 부산광역시교육청 / 148
- 대구광역시교육청 / 159
- 인천광역시교육청 / 168
- 광주광역시교육청 / 178
- 대전광역시교육청 / 192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16
- 경기도교육청 / 22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234
- 충청북도교육청 / 243
- 충청남도교육청 / 25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64
- 전라남도교육청 / 274
- 경상북도교육청 / 284
- 경상남도교육청 / 29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07



서울특별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가. 특수학교(급)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학교명	예정지	장애유형	개교 예정
서울동진학교(가칭)	종량구 신내동 일원	지적장애	2027. 9월
서울성진학교(가칭)	성동구 성수동 성수공업고등학교 폐교 부지	지체장애	2029. 3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희망 수요 조사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2024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현황〉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23	134	148	486	834	214	322	102	284	936	1,588
2024	138	152	491	855	218	334	104	292	951	1,633
증감	4	4	5	21	4	12	2	8	15	45

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가)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설립 추진

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인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6교

3) 학교장 선발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학교: 24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학교: 10교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안교육 위탁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후 위탁 의뢰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지원,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 다)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문적 특수교육 지원 확대: 11센터
 - 장애유형, 진로·직업교육, 영아교육, 가족지원 등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강화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 가)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교육 이력 등에 관한 NEIS 연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학 업무를 위한 NEIS 활용
 - 나) 장애의 조기발견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 및 교육전 진단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병원 및 진단·평가 전문기관 지정 확대: 118기관

다.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2) 장애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2.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장애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1종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원 문해력 및 전문성 향상 지원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 나)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장학 지원
 - '찾아가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운영

- 특수학교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임상장학, 멘토링 계획 수립
-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나)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 3)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확대
 - 가)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특수학교 인공지능(AI) 미래교실 구축 지원: 2교
 -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SELC) 운영 활성화
 - 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교수학습 플랫폼 뉴쌤 활용
 - 다) 일상생활 디지털 접근성 교육 활성화
 - 학교(급)별, 교과별, 장애특성별 정보화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전한 여가생활 개발을 위한 장애특성별 e스포츠 교육 실시
- 4) 자율·협력 중심 교원 성장 지원
 - 가) 교사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연수 확대
 - 저경력(3년 미만) 교사 대상 수업 성장 자율연수: 10개 강좌, 165명
 - 교직단계별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 연수: 20명
 - 수업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20명
 - 나) 스스로,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원 공동체 운영 및 지원
 - 특수학교 수업성장 네트워크 운영: 6개 분과, 28명
 - 안정적 교원 수업 성장 기반을 위한 수업 멘토 지원: 13명
 - 협력적 연구 활동을 위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6팀, 68명
 - 다) 협력적 수업 성장을 위한 수업나눔 활성화
 - 특수학교 교장(감) 수업성장 워크숍 운영
 - 수업나눔축제를 통한 수업나눔 참여 기회 확대
 - 라)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회복력 증진 지원
 -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슈머 연수 운영
 - 특수학교 회복탄력성 교원 연수 운영비 지원: 32교
 -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대상 회복력 증진 연수 운영: 30명
 - 마) 특수교육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나.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1)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가)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나)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
- 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한 맞춤형 직업체험 및 직업 훈련 운영: 2센터
- 라)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
- 마)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사업 운영: 42교 209명
- 바) 장애학생 직업실기 자격취득과정 운영 지원: 31교

2)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기관 연계 장애학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 아르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조금은 특별한 운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 (텐덤사이클) 지원
-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활용
 - 장애학생 체력증진 및 회복을 위한 건강체육활동 운영 지원: 특수학교 11교

다.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1)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

- 가)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12교
- 나) 통합교육지원 서울형 순회교육 강화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학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 운영
- 다) 병원학교 순회교육 확대: 10교 운영

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지체중복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센터
 -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육청-의료기관-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 사업 운영: 4교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 운영: 3교

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센터
- 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 시각대체학습자료 제작 등 맞춤형 학습지원

다)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교육지원 제공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 지원
-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병원학교 담당자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전교육 편성·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3)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3.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교육

가. 협력 기반 교육과정 중심 통합교육

1) 함께 다지는 통합교육

- 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함께 추진하는 통합교육 정책 실행
- 통합교육 현장과 밀착된 정책과제 연구 추진
 - 정책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실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나) 통합학급 지원 확대

- 다양한 학생들의 의미있는 배움이 살아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 역량 강화

2)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활성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교수 기반의 더공감교실 운영 확대: 학교단위 16교, 학급단위 7교
 - '십분의 기적' 프로젝트 운영으로 상시적 협의 문화 조성

*** 십분(十分)의 기적이란?**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십분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수업 혁신 문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통합교육 연수 운영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연수명	대상	인원	주요내용	시기
통합학급 교사 통합교육 연수	유·초·중·고 통합학급 교사	40	통합학급 운영내용 장애이해교육	2024. 1학기
교(원)장·교(원)감 통합교육 연수	유·초·중·고 교(원)장·감	40	통합교육 운영내용 통합교육 사례나눔	2024. 5월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유·초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2인1조)	50	통합교육 지원 관련 소통역량 함양	2024. 8월
특수학급 교사 통합교육 연수	유·초·중·고 특수학급 교사	40	통합교육 지원관련 교육과정, 협력교수	2024. 2학기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실행자료 개발 및 보급: 관리자 통합교육 안내서, 통합학급 운영 도움자료, 통합교육 업무 지원자료 등

다)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일반교육교원 협력체제 구축 및 공동 연구·실천을 위한 통합교육 공동체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11기관
-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1단
- 교육지원청 학교급별 교사 네트워크 구축 확대

나.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지원체제 강화

1)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 가)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 수업에서 다양성을 가치 기반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실시
- 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강화
 -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교 내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학부모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확대)

다) 장애공감문화 확산

- 학생 주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학교 지원: 총 30팀
-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문화행사
- 장애공감문화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구축·운영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점검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11단(교육지원청별 각 1단)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기능 수행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
- 더봄학생 지원 강화

다) 장애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대상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장애학생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현장중심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지원체제 강화

- 1)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38교(특수학교 28교, 일반학교 10교)
- 2) 개별 학생을 위한 행동중재특별지원 체계화
- 3)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연수 운영: 학교관리자(100명), 교원(150명), 학부모(120명)
- 4)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실행 콘텐츠 제작 및 지원
 - 가) 긍정적행동지원 실행자료 개발 및 보급
 - 나) 서울PBS 누리집(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채널명: Seoul PBS) 운영
 - 다) 「서울PBS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

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 1)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치료지원 내실화: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생 재택 치료지원 확대 및 모바일 바우처 앱 서비스 제공
 - 나)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편의 지원
- 2)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요원) 역량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편성
- 3)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체제 강화
 - 가)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역기관 연계 사업 운영: 14기관
 - 다)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및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 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가)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편의시설 확충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 2)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 지원
-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운영비, 신·증설비, 이전비, 환경개선비 등

III 향후 추진 계획

1.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서울동진학교 외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
- 2)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 확충

설립	신·증설 예정 학급수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공립	39	59	59	59	59	275
사립	6	6	6	6	6	30
합계	45	65	65	65	65	305

- 3) 특수학교(급) 공간 재구조화
 - 미래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 조성
 - 특수학급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올타리 구축
-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운영 및 역량 강화

다.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도움자료 개발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격차 해소 지원

2.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가)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수업사례 나눔 및 연수 확대
 - 나) 클라우드 기반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SELC) 플랫폼 고도화
 - 다) 인공지능(AI) 활용 미래교실 운영
 - 라)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 3)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 실행을 위한 교원 성장 지원

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1)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 체험 확대
- 2) 희망일자리 사업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취업 지원 내실화
- 3)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4)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활성화

다.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 1) 순회교육 지원 유형 다양화
- 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3.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교육

가. 교육과정 중심 협력 기반 통합교육

- 1) 더+통합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실천 방안 모색

*** 더+ 통합교육 정책**

정책 수립 시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의도치 않은 차별 예방 및 통합교육의 내실화 도모

-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활성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 실행 지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교수 기반의 「더공감교실」 운영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 프로젝트 「십분의 기적」 운영

나.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 수업에서 다양성을 가치 기반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실천사례 발굴 및 보급
- 2)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운영 다양화
 - 학생 주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학교 확대
- 3)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점검표를 활용한 학교별 자체 점검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 강화

- 1)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체제 내실화: 교원학습공동체, 행동중재특별지원단
- 2)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관련 데이터 관리, 실행도 점검
- 3) 서울PBS 누리집 활성화

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 1) 이용자 편의를 위한 치료지원 홈페이지 개선
- 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기준 및 방식 개선
- 3)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개선: 서울시보조기기센터와 연계
- 4)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지역자원 활용,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 활용
- 5) 방과후학교 활성화, 돌봄교실 확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방향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특수교육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홍보: 교육청 홈페이지(연중), 상담(수시)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치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운영

나) 장애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311명), 사립(214명)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 구축

가)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협의체 운영(1회 이상)

나)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안내 체계 마련

- 3) 의무교육 이행 철저: 홍보, 상담,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지원,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등 취학 의무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적령 취학 독려
- 4) 초등학교로의 입학 적응 지원 강화
 - 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5회)
 - 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348교, 767명)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체계 내실화: 진단평가 담당자 협의회(1회), 진단평가 위원 전문가 연수(1회)
- 2) 선정·배치 절차 체계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준수
- 3)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의 취학 또는 재취학 시 적정 절차에 따른 학교 지정·배치 추진
- 4)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선정·배치 및 정보 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처리 간소화 및 결과 처리 실시간 반영
- 5) 미래 성장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교사 연수(1회), 담당자 협의회(2회)
- 6)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기능 강화: 6개(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영유아, 진로직업탐색)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확대
 - 가) 특수학교: ('23) 15교 371학급 → ('24) 15교 377학급
 - 나) 특수학급: ('23) 524교 640학급 → ('24) 535교 673학급
 - 다) '25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 조사('24. 4월)
- 2)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및 환경개선 지원
 - 가) 학급 신·증설에 따른 시설·설비 설치 및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24. 43학급)
 - 나)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지원('24. 28학급, '23.~'26.까지 총 110학급)
- 3) (가칭) 부산특수교육원 설립: 부산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정책 연구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지도역량 강화 연수 지원
 - 나)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전국특수교육연구대회 등 연구대회 참여 권장
- 2) 특수교육지원단 운영
 - 가) 4개 영역(교육과정, 수업, 통합교육, 행동중재), 47명 구성
 - 나) 특수교육지원단 협의회(5월) 및 팀별 컨설팅·연구활동(연중) 운영

- 3) 특수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및 특수교육 관련 연구회 조직·운영
 -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2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1교)
 - 나) 교육연구회 운영·지원: 고교학점제(1팀), 통합교육(1팀), SW·AI활용 수업(2팀), 개별화교육(2팀), 장애인식개선(1팀), 긍정적행동지원(15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6팀) 및 컨설팅 운영
 - 나)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5개원), 장애유아 지도교사·학부모 연수(10회)
 - 다) 통합교육지원실 구축(5교)
- 2) 통합교육 교육활동 지원
 - 가) 유치원 통합학급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137개원)
 - 나) 대학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28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권장
 - 나) 일반학교 교원의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권장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통합교육 협의회 운영,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운영
 - 나) 통합교육 연구학교(2교), 통합교육 중점학교(10교) 운영·지원
 - 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유치원) 통합교육 컨설팅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실 실시(2회)
 - 나)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1회)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세울림’ 교육활동 지원: 그리기대회 및 공모전·전시회(1회), 인형극(30회), 장애이해교실(128학급), 장애공감학생동아리(6교), 장애인식개선 영상 콘텐츠 보급(중, 고)
 - 나)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콘텐츠 활용 장애이해교육: 장애이해 동영상(유), 대한민국 1교시(초), 장애이해 드라마(중, 고)

3)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세울림’ 그리기대회 및 공모전 우수작품 온라인 전시회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가)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교육(60교)
 - 나) 교사, 학부모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운영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 가) 6팀(시교육청 1팀, 교육지원청 5팀) 82명으로 구성
 - 나) 인권침해 예방 컨설팅 및 사안별 지원(정기지원, 특별지원)
-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존중 예방상담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40교)
 -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후상담 프로그램 운영
-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가) 찾아가는 장애학생 대상 성, 인권교육(특수학급 설치교 60교)
 - 나) 유아 대상 장애인권보호 및 범죄예방 인형극(30개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가) 특수학교 다목적 직업훈련실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운영(15교)
 - 나) 특수학교(급) SW·AI 활용 수업 교육연구회 운영(2팀)
- 2)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 가)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및 디지털 활용 교육 강화
 - 나) 인공지능 기반 로봇 활용 교육 특수학교 운영(2교)
 - 다)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특수학교(3교) 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교육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나)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직업교육 특성화(2교), 전공과(9교, 38학급) 운영
 - 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지원: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38명), 일상생활 활동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60명)

2) 고교학점제 운영

-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1교)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회 운영(1팀)

3) 특수(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특수학급 교육(운영) 계획 수립('24. 3월)
- 나)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4회)
- 다)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통합교육 내실화 노력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이수 철저
- 라)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및 운영비 예산편성
- 마) 통합교육계획 수립·운영,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배치 및 일반 학생수 감축(1~3명) 권장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현황 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747교), '24. 4월
- 나)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포함하여 작성
- 다) 개별화교육계획 유형: 3유형(교과, 생활지원, 교과 및 생활지원)

2) 개별화교육 운영

- 가) 4세대 나이스 특수학교(급) 교사를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매뉴얼 개발 보급(3월)
- 나) 개별화교육계획 연수(3월): 특수학급 교사(283명), 특수학급 미설치교 담당자(96명)
- 다) 개별화교육지원 컨설팅: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활용

라. 특수학교(급) 동행장학

1) 특수학교 장학

- 가) 학년초 현장지원 장학: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 협의('24. 4월, 15교)
- 나) 학기중 현장지원장학: 교육실습, 방과후학교, 지원인력 운영, 학교 현안 등 협의
- 다) 지구자율장학협의회 운영: 2회(수업공개 및 주제·사례발표)
- 라) 학교 내 자율장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2) 특수학급 장학

- 가) 특수학급 현장지원장학: 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노후 환경 개선, 현안 등 협의
- 나)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46개 지구, 4회

마.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중증장애학생 지원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운영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수업일수(170일), 수업운영형태(방문수업, 가정학습, 체험학습)

바.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가) 교육과정, 특색교육, 인성교육 등과 연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운영
 - 나) 특수학교(급)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 특수학교(급) 25교
-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체육활동 특화교실 운영: 특수학교(급) 9교
 - 나) 장애학생 체력회복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15교
 - 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12종목, 선수 94명
- 3)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사 통합체육 연수 강화

사.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교육 여건 개선(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내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1교)
 - 나) 학교-의료기관 간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한 전담 간호사 운용
- 3)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를 통한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2개소)
-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병원학교 운영 지원(동아대병원학교, 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인제대해운대 백병원학교)
 - 나) 원격수업 위탁기관(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꿈사랑학교) 운영 지원
 - 다) 학교 복귀 전·후 프로그램 운영(5교)
 - 라) 건강장애학생 담당교사 연수(1회)
- 5) 행동중재 지원
 - 가) 특수학교(급)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15교), 학급(13교)
 - 나) 집중적 행동지원: 행동중재 순회교사 컨설팅 운영
 - 다)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운영: 현장지원단(23명), 자문위원(4명)
 - 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운영: 15명, 대학부설연수원 위탁

아.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 가) 특수학교 방학후학교 운영(15교, 290개 프로그램, 1,633명)
 - 나) 특수학급 방학후학교 운영(129교, 154개 프로그램, 665명)
 - 다) 유관기관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13개 기관, 16개 프로그램, 85명)
-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가) 특수학교 늘봄학교(보살핌늘봄) 운영 지원(13교)
 -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특수학교 6교, 14학급, 유치원 5개원 5학급)
 - 다)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 참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54개원)
 - 라)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참여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11교)

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 가) 특수교육지원인력 증원 배치: ('23) 810명 → ('24) 856명(사회복무요원 포함)
 -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지원(시교육청 주관 집합연수 5회 등)
- 2) 치료지원: 물리치료 등 총 11개 영역, 마중물카드를 통한 지원(5,200명)
- 3) 통학 편의 지원: 유치원~고등학교 지원 범위 확대, 연3회 학기별 지원(2,936명)
- 4)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249회)
- 5)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지원 : 가족지원 프로그램 (30가족), 가족상담(20가족), 학부모 자조모임(2팀)

차.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안전계획' 학교교육계획 반영 및 수립('24. 2월)
 - 나) 장애학생 학교 담당자(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운영
 - 다) 장애학생 등·하교 시 보호자와 학생 안전 사항 인수인계 철저
 - 라)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원 및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마) 장애학생 교육실습,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2) 학교 안전 내실화
 - 가) 초등 1, 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
 - 나) 7개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유괴 예방

- 라) 특수학교 안심 알리미·학교안전 지원 사업: 학생 등하교 위치추적 단말기 (이용료), 통학버스 위치 추적 서비스, 운전자 스마트폰 제어 시스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어라운드뷰 및 후방감지센서) 지원

카.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

1)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지원

- 가)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나)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3교)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부산혜성학교 「꿈이룸」, 부산해마루학교 「에코해마루」
 라) 장안실습장 활용 농업체험 직업교육 운영 지원(부산해마루학교)
 마)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부산전자공고) 운영: 특수학급(고) 대상(12교, 71명)
 바) 직업교육 거점센터(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학급(고) 대상(28교, 179명)
 사) 장애학생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지원: 특수학교(급) 고·전공과 학생 대상 (학교 참여형: 20교, 334명, 개인 참여형: 9교, 18명)
 아)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설비 지원: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5교)
 자) 장애학생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이상 특수학교(급)(10교)
 차) 찾아가는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급 설치 초, 중학교(50교)
 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진로 정보 제공 강화

2) 기관연계 직업교육 지원

- 가) 지역사회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17개 기관, 22개 프로그램(34교, 135명)
 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10개 직종(36교, 329명)
 다)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특화훈련(실무작업, 외식산업 분야) 위탁 교육(일반고 3학년 6교, 9명)
 라) 장애학생 기관연계 직업평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33교, 263명)

3) 장애학생 취업·진학 지원

- 가) 장애학생 윈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13개 기관, 위원 14명)
 나)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연수, 상담, 체험)
 다) 장애학생 채용 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 운영: 5개 기관(15명)
 라)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정보(1회) 및 상담(부산학력개발원 연계) 제공
 마)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산, 경남 지역 3개 대학(32교, 213명)
 바)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홍보물 제작·발간('24. 8월)
- 2)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7월), 입학적응 예비학교(10~12월) 운영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24. 7~10월)
- 2)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24. 10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8월), 담당자 협의회(7월, 11월)
- 4) 특수교육 거점지원센터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시각, 청각, 발달): '24. 6~7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급 산·증설 추진('24. 6~10월)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사 수업 역량 강화 연수('24. 8월)
- 2) 통합교육,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협의회 지원('24. 6~7월, 11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담당자 워크숍('24. 11월)
- 2) 통합교육 성과보고회('24. 11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장 대상 특수(통합)교육 연수('24. 7월)
- 2) 통합교육 중점학교 컨설팅 지원('24. 6~9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세울림' 장애이해골든벨 운영('24. 8~11월)
- 2) 장애공감 동아리 운영 자료 개발('24. 12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교육(지원)청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6단(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 나) 더봄학생 재학교 중심 정기현장지원 및 인권보호 예방상담 실시(40교)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대응 체계 강화
 - 가) 장애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인권보호 인형극 운영(30개원)
 - 나)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 신고함 설치 및 CCTV 설치 확대
 - 다) 장애학생 대상 사안 발생 시 보고체계 강화를 통한 사안별 신속 지원
 - 라)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강화
- 3) 장애인권 존중 문화 조성
 - 가)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2회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화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특수학교 미래형 다목적 직업훈련실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지원
- 2) 인공지능 기반 로봇 활용 교육, AI교육 우수 사례 발굴·보급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지원
 - 가) 특수학교 관리자 워크숍('24. 7월, 2회)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24. 8월)

다. 순회교육지원 강화

- 1) 순회교육대상 학생 학기말 평가 및 2학기 계획 수립('24. 7~9월)
- 2) 순회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수업 나눔(3팀, '24. 6~7월)

라.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24. 10월)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모델 개발 정책 연구('23. 6~11월)
- 2) 건강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 연수(7월), 교사 연수(11월)
- 3) 행동중재 지원: 전문가 양성과정(6~12월), 심각한 행동문제 학생 집중적 행동중재 지원(7~12월)

바.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여름·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 '24. 7~8월, '24. 12~'25. 1월

- 2) 유관기관 연계 여름·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 26개 기관(예정)
- 3) 특수학교 방과후 과정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직무 역량강화 연수 및 현장 컨설팅 실시(30교)
 - 나) 사회복지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 직무역량교육 등) 실시
- 2) 치료지원 제공 기관 현장지원 및 점검('24. 8~12월)
- 3)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24. 7월)
- 4) 장애학생 가족지원 관련 학부모 및 특수교사 연수('24. 9, 10월)

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

- 1)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참가('24. 10월)
- 2)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하반기 컨설팅('24. 11월)
- 3)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및 현장실습 운영 점검('24. 11~12월)
- 4) 「My JOB 프로젝트」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24. 12월)

대구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격차 완화
3. 추진 중점과제
 -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라.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1인당 50만 원 이내)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운영 및 순회교육 제공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라)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선도교육청 운영 협력
 - 2)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사립유치원 배치(3인 기준) 시 특수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나) 맘껏 놀이 중점 완전통합유치원 운영(2원)
 - 단설유치원(대구인지유치원), 병설유치원(대구불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다)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4개원/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별 1개원)

나. 대구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학생 맞춤형 체험교육, 연수 및 연구, 학부모 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특수교육 역량 강화 중심 역할 수행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사 증원 및 교원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3)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4)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3개소)
 - 대구광명학교(시각장애), 대구영화학교(청각장애), 대구덕희학교(정서장애)

다.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1)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추진
- 2) 2024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운영
 - 가) 신설: 14학급(유 9, 초 3, 중 2)
 - 나) 증설: 20학급(초 4, 중 4, 고 2, 특 10)

라.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 가)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 장애교원 지원교사,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 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1명 추가 배치
- 2)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제고
 - 가) 특수교육교원 전문학습공동체 운영(133팀)
 - 나)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4팀/개별화교육계획, 일상생활 활동, 행동중재, 정보화)
 - 다) 특수교육수업지원단 운영
 - 라)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 활동 강화(지원장학, 권역장학, 멘토링장학)

- 마) 대구교육연수원과 협력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및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바) 특수교육 자료 수집·관리를 위한 세미나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68명)를 통한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수업, 통합교육 지원, 문제행동 중재, 장애이해 교육 등 실시
- 2) 교수, 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6팀)을 구성하여 기본·정기 현장지원 강화
- 3) 통합교육지원실 10교 운영
- 4)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색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6개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3시간 이상 이수)
- 2)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지원
- 3)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 학교」 18개교 운영
- 4)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운영
- 5) 예비교사 대상 통합교육 소양 강화

다.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2)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운영비 지원(유·초·중·고·특 교당 80만 원)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성교육 전문가, 특수교원, 경찰,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6팀)을 구성하여 정기·특별 현장지원 강화
- 2)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3) 유·초·중·고·특·각종학교 직원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 1)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8교), 스마트 스쿨 등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2) 특수학교 AI교육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위한 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운영(3교)
- 3) 장애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한 「대구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6월)
 - 대상: 특수학교(급) 및 비장애학생 등 200여명
 - 종목: 정보경진부문 16종목, e스포츠부문 9종목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편성·운영(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5호)
- 2)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 가) 학교 특성, 학생·보호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특수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문화예술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 다)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특 10교)
- 3) 유·초·중·고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연구 및 보급
- 4) 특수학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설계 및 성찰 주간 운영(11교, 2,200천 원 지원)
-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가) 2024 특수교육수업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15시간, 20명)
 - 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초 연수(15시간, 400명)
 - 일상생활 활동 연수(15시간, 400명)
 - 행동중재 연수(15시간, 400명)
 - 다)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180시간, 20명)
- 6) 장애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지원단 운영

다. 학생 성장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 1)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 방안 안내(2024. 2월)
 - 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과중심, 생활지원중심, 교과 및 생활지원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나) 2023 특수교육 장학자료 「알기 쉽게 풀어 쓰는 특수학급 개별화교육 사례집」 활용

- 2)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원격수업 관련 내용 포함 작성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특수학교 11교
 - 학생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 집중 지원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 재택 순회 및 병원학교 운영
- 2) 자료제작 및 구입, 여비, 운영비 지원 등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 1) 특수교육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분야 진로 직업교육 지원
- 2) 고교 특수학급 연합 '빛슬합창단', 보명학교 '소리나무합창단' 등 장애학생 문화 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구축(심리안정실 등)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나)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특 10교)
-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운영(특 2교)
 -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원(100,000천 원)
- 3)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강화
 - 가) 병원학교 3학급(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운영
 - 나) 병원학교별 정규 특수교사 1명 배치
 - 다) 병원학교별 건강장애담당교원 연수회 실시 및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건강장애이해 증진

라) 병원학교별 학교복귀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1:1 맞춤형 찾아가는 학교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4)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꿈사랑학교, 스쿨포유) 운영
- 나) 교과 선택권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제공 등 교육내용 다양화
- 다)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시 선교육지원 등 교육 공백 최소화
- 라) 스쿨포유 초등과정(1학년) 화상강의 전담교사 배치·운영(대구특수교육원 내 위치)

5) 행동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 가) 대구특수교육원-대학,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연계
- 나) 전문가 양성(20명),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80명), 가족상담(30가족), 컨설팅

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돌봄봉사인력) 지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프로그램 운영

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 가) 인력 지원 현황: 총 864명(실무원 581명, 사회복지무원 283명)
-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신규채용: 3개월 이내 직무연수 연 30시간 이상(사회복무요원은 16시간 이상)
 - 기존인력: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 직무연수 연 15시간 이상
 - 자체연수 강화: 지원 대상학생 맞춤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2) 치료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치료지원비 증액(월 14만 원)
- 나) 치료지원 서비스 영역 세분화(우리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맞춤)를 통해 선택권 확대

3)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 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및 기타 편의시설 지속설치로 Barrier Free 구축
- 다) 특수학교(급) 리노베이션을 통한 교실환경 개선

자.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
 - 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지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교기업, 거점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구)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 나)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직업평가 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등 직업평가 협업
 - 다) '학교 내 장애학생일자리' 사업 내실화
 - 5개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원 및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취업 전 직장 적응훈련, 사회 적응훈련 강화, 추후 사업체 취업으로 연계
- 2)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실기 직무연수과정 개설(하계 방학 중, 7개 과정 예정)
- 3) 대구특수교육원-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운영 활성화
 - 가) 진로직업 및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생 대상
 - 진로직업 11과정, 특수체육 2과정 운영
 - 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양성과정 대상자 모집 및 취업 지원
- 4) 장애학생 직업실기 자격취득 지원 22교(특수학교 5교, 특수학급 17교)
 - 바리스타, 조향사, 정리수납전문가, 드론, 플로리스트 등
- 5)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학교기업 '성산' 운영(특 5교 연합)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2교)
 - 다) 진로직업교육 업무 전담교사 배치
 - 진로전담교사 및 현장실습전담교사 특수학교당 1명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가.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대학생할 체험 운영
- 나. 대학 입학 정보 제공을 통한 진로 선택 지원 및 대학 진학 후 안정적인 대학생할 적응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대학 입학 설명회(7월 예정)
 - 대구·경북권 대학 참여
 - 대학별 입시 요강,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지원제도 안내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
- 2) 사립유치원 배치(3인 기준)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나.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2)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추진

다.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1)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추가 배치
- 2) 특수교육교원 전문학습공동체, 연구회, 수업지원단 운영 강화
- 3)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계속 배치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통합교육 실시
- 2)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연계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특수교육 직무연수 지속 추진
- 2)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간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활성화

다.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 가. 장애학생 디지털교육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및 운영 내실화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생 교육적 요구에 기반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속 운영
- 3)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모델 연구 지속 추진

다. 학생 성장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 1)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 자료 제작 등 지속 추진
- 2)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중점
-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격차 완화 및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 지속 운영

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치료지원비 증액 추진

- ('24) 월 14만 원 → ('27) 월 16만 원

마.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대구특수교육원 중심 체험교육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2) 전공과 교사, 진로전담 교사, 현장실습전담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현장실습 강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및 참여 대학 확대

나. 장애학생 대학 입학 설명회 지속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1. 기본 방향

가. 꿈·도전·성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공약2-45)

- 1) 대학형 전공과 확대 및 운영의 다양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대학형 전공과 증설
- 2) 장애학생 진로·취업 컨설팅단 운영
 - 가) 장애학생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진로·취업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나)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취업 컨설팅 및 연수

나.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특수학교 설립(공약 2-34)

- 1) 특수학교(급) 신·증설
- 2)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 3) 공립특수학교 신설

다. 특수교육 운영 지원

- 1)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가)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및 의료장비 지원
 - 나) 시청각장애학생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2)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 및 의료인(간호사) 인력 지원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컨설팅·자세유지 및 보조기기 컨설팅 지원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재활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프로그램 운영 및 교사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 다)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협력위원 구성
- 라)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후속 조치
- 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특수학교 생존수영 교육 운영
 - 다) 장애학생 건강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라. 통합교육 운영 지원

- 1)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정착
 - 가)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프로그램 개발
 - 나)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고 5교)
- 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 가)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
- 3) 통합교육 지원
 - 가) 통합교육 활성화 '정다운학교' 운영(중 1교)
 - 나)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다)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 4) 발달장애학생 정서·행동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위기 행동 관리·대응
 - 나) 행동 중재 전문가 양성
 - 다) 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 라) 특수학교 정서행동 담당교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원 운영

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1) 특수학교(급) 자유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 2)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찾아가는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
- 3)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 가)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 운영
 - 나)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4)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역량 강화
 - 가) 「교육에서 고용까지」 지역사회 연계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확대
 - 나) 진로직업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바.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
- 2) 장애학생 미래교육 역량 강화
- 3) 특수교육 관련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 가) 관리자 특수교육 연수
 - 나) 특수교사·중도중복장애학급 교사·지원센터 교사 연수
 - 다) 특수교육 실무사·특수학급 종일반 강사 역량 강화 연수
 - 라) 청각장애교사 문자 속기 지원
- 4)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운영

사. 장애학생 교육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2)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 3) 장애학생 지원인력(단시간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 2) 순회 특수교육 및 순회 치료지원
- 3)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5)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 6) 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 운영

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 학급 운영: 5개 학급 14명
- 나)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재배정: 5개 센터 50,000천 원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 116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 6회 108명
 - 나) 진단·평가 매뉴얼 제작 보급: 1회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5개, 45명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 가) 특수학급 신증설: 54학급(유 6, 초 29, 중 9, 고 5, 특수학교 5)
 - 나) 특수학급 노후화 환경개선: 56교(유 5, 초 25, 중15, 고 5, 특수학교 6)
 - 다) 대학형 전공과 증설: 1교(인천연일학교) 2학급
- 2) 인천형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19교 24학급
- 3) 예술특화직업교육 운영: 3교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향상
 - 가)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역량 강화 직무연수: 26명(8시간)
 - 나) 팀접근을 통한 장애학생 정서행동 지원 연수: 62명(2시간)
 - 다) 정서행동 역량 강화 연수: 50명(2시간)
 - 라) 특수교육 관련 교권보호 연수: 86명
 - 마) 특수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15명
 - 바) 특수교사 대상 동화책 작가 연수: 20명
 - 사)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100명
 - 아)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과 진로 연수: 9명
 - 자) 진로직업 역량 강화 연수: 20명(2시간)
- 2) 특수교육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108개, 949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6개단 106명 구성
- 나)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 협력 교수팀 운영: 4개팀
- 2)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가)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정다운 학교 운영: 1교(강화중학교)
- 2) 통합교육 중심 학교 운영: 4교(유 2개원, 초 1교, 중 1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프로그램 운영: 224교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장애공감 문화공연 '렛츠 브레이컬!': 23교(초14, 중6, 고3)
 - 나)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11개원, 17학급
 - 다) 찾아가는 장애공감(인형극)교육: 12개원
-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나) 공사립 관리자 대상 장애 공감 연수: 1회, 447명
 - 다) 초등 신규교사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수: 44명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인권지원단 구성: 6개단 77명
 - 나)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64교(유 1, 초 19, 중 10, 고 24, 특수학교 10)
 -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3) 특수학급 대상 성·인권교육 실시: 107교
- 4)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186명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강화
- 3)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컨설팅: 44개원 56교

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지원 확대
- 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수업 지원: 100교 155명, 주 1~2회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일반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76교
- 2)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10교, 1,571명

라.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인천형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운영: 19교 24학급
 - 나)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안내
 - 다) 자세유지 및 보조기기 이용 컨설팅 실시: 4개 병원 1기관 연계
-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치료(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교육청-5개 연계 구성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전문 보조인력(간호사): 7교 9명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지원: 6교 13명, 병원 1기관 연계
-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청각장애학생 대상 문자속기 지원: 고 2교(2명)
 - 나) 청각장애 통합교육 컨설팅 실시: 3교(유1, 초1, 고1)
 - 다) 통합학급 대상 청각장애 이해교육: 34교(유 2, 초 27, 중 3, 고 2)
 - 라) 시각장애학생 점자교육 및 보행지도: 4교 4명
 - 마) 시각장애학생 심리상담 및 진로컨설팅: 6교 6명
-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병원학교 운영: 인하대학교 병원학교 1학급
 - 나) 원격수업 지원: 스쿨포유 초·중·고 119명(요보호 포함 133명)
 - 다) 전문인력: 병원학교 파견 특수교사 1명, 초등 원격수업 특수교사 3명
 - 라) 건강장애 담당교사·담임교사 대상 업무지원 및 수시 상담
 - 마)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5개, 12교 12명
- 5) 행동중재 지원
 - 가) 행동중재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6개단 114명

나) 행동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대상자 선정: 20명

다) 학생 대상 개별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107명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비 재배정: 5개 센터, 50백만 원

나)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6,484명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가) 유치원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65개원 99학급

나) 초등학교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7교 7학급

다)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9교 32학급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공사립 학교 721명

나)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계획 수립 안내(3월)

다) 장애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단시간 근로자 배치: 220명

라) 장애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331명

2) 치료지원 내실화

가)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5,163명

나) 치료지원 가맹점 모니터링: 치료지원 내용, 기록 관리 등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치료지원: 언어치료 67명, 작업치료 15명

3)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가) 장애학생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189명

나)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대여 플랫폼 구축: 인천시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47대, 1,206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393명

아.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 운영: 10교

2) 특수학교 재난대응교육 실시: 10교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현장 점검: 1회, 10교

자.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마을연계 직업교육 운영: 미추홀학교 1교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4교
 - 다)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8교 46학급
 - 라) 대학형 전공과 운영 확대: 재능대학교 4개 학과, 1~2학년 37명
인하공업전문대학 1개 학과, 11학년 20명
- 2) 진로직업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가) 방학 중 「꿈이음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40명
 - 나) 장애학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16교 30명
 - 다) 직업교육 거점 「찾아가는 직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26교 103학급
 - 라) 특수학급 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팅 운영: 중학교 특수학급 36학급, 고등학교 특수학급 23학급
- 3)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산업체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35교 190명
 - 나) 발달장애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38개 학급 259명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진단평가비 지원: 1인당 250천 원
- 2)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를 위한 대상자 선정 및 배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희망 조사
- 2)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희망 조사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통합학급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레벨 UP! 통합교육' 실시
- 2)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3) 특수교사 대상 통합체육 연수 실시
- 4) 특수교사 대상 학급 긍정 훈육(PDC) 지도법 연수 실시
- 5) 특수교사 소진 방지 및 마음관리 연수 실시
- 6) 긍정적 행동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7)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진학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 8) 특수교사 대상 장애 인권 연수 실시
- 9) 중도중복장애학생 응급상황 대처 방법 연수 실시
- 10) 특수교사 진로직업 역량강화 연수 실시
- 11) 2022 개정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 실시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학생·학부모·교사의 통합교육지원 요구 수렴 및 지원 형태 다양화
- 2)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사례 나눔
- 3)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프로그램 연구 용역 보고회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정다운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 2) 통합교육 거점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유·초·중 통합학급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2)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과밀학급 순회교육 강화
- 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서·행동 지원

나.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재활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및 의료기기 지원
-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자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청각장애학생 문자 속기 지원
- 나) 교직원 및 통합학급 대상 청각장애 이해교육 실시
- 다) 시각장애학생 진로 컨설팅 실시
- 라) 시각장애학생 시기능 평가 및 훈련 실시

3) 행동중재 지원

- 가) 학생·학부모 대상 개별 심리상담 지원
- 나) 개별 학생 행동중재 사례 관리
- 다)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대상 행동중재 컨설팅
- 라) 특수학급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교육·고용·복지 진로직업 협의체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 실시: 2024. 하반기
- 2)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 3)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및 취업 컨설팅단 운영
- 5) 방학중 꿈이음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 6) 진로 소식지 'My job' 발행

광주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방향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구분	세부 추진 내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4.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3-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3-4. 순회교육 지원 강화 3-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3-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3-7.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3-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3-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3-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3-1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 강화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등록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등 적극 홍보
 -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보급
 - 특수교육 안내자료(리플릿, 포스터 각 1종) 개발·보급: 6월, 보건소, 주민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배포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영아학급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조기 지원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보급
 - 라) 유치원 특수학급, 통합교육 거점기관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가) 가정-유치원-어린이집-유치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지원
 - 나)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 (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 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다)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 2)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가) 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담인력 확충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다)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성화하고 전문적 교육 지원 강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배치 유형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총 계
	유	초	중	고	소계	공립	사립	소계	
신설	0	2	0	0	2	38	0	38	40
증설	1	4	6	0	11	3	0	3	14

- 나)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다) 신설 특수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우선 설치 계획 수립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 가)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등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나)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우선 배치 및 전보 유예 방안 마련
- 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원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점자, 수어 등 특수교육 관련 국가 공인 자격취득 지원
 - 나)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다) 특수교육교원의 장애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 목록 마련 및 적용
 - 나)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 다)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라)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초·중등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단 체계 구축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담당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관리자의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연간 3시간 이상 이수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특히 순회교육 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나) 예비 특수교사 교육실습에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포함 권장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성과 일반화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나) 교과용 도서 연계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발굴·확산
 - 다) 장애 당사자 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권장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장애인의 날(4.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나)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인력풀 구성 및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장애예술인(단체) 초청공연 등) 지원
- 3)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기반 마련
 - 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 4)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기반 마련
 - 가)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 실시
 - 나)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예산 편성 및 운영
- 5)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가) 전문가 콘텐츠 개발과 학생, 교직원 공모전,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
 - 나) 인터넷, 방송, 인쇄물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 나) 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등 실시
 - 다)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라)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가능
 - 마)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 함양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라)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 마)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이 「2024 장애 인권 주간」 운영: 4.16.~4.26, 교육감 서한문 발송, 현수막 게시, 교육활동 전개, 계기교육 자료 제공, 신문제작 및 보급, 유공자 표창 전수 등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보급 확대
 - 나)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보급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 라)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선도교원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
 - 마) 지역·민간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형 디지털(SW·AI) 프로그램 제공 확대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학교의 특성 및 여건,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다) 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확대

2) (일반학교)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나)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교육 강화
- 다)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평가자료 보급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 등 실시
-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 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5)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고교학점제로의 점진적 변화에 따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라)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 마)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를 학기마다 실시
 - 바)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가)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나) 교육과정과 교과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안내 자료 보급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순회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나)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영·유아 순회학급 8학급 운영
- 2)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중도중복장애 배치 특수학교 25학급 조정 실시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모델 발굴·확산
-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내 보건교사의 지원 등 전문 인력 배치·확대
 - 나) 의료 관련 전문인력풀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및 교내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거점지원 센터 설치·운영
 - 나)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다)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라)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환경 등 교육 실태 파악 및 적절한 교육 지원 강화
 - 마) 시청각장애(deaf-blind)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학마을 병원학교 1학급 운영
- 병원학교 위탁 운영: 여미사랑 병원학교(화순), 느티나무 병원학교(나주)
- 나) 건강장애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한 원격수업 마련 및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5) 행동중재 지원

- 가) 효과적인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거점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 나)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집중 지원,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교원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 지원
- 다)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강화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 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나)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33학급, 급당 운영비 2,000천 원 지원
- 다)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14학급, 급당 운영비 3,000천 원 지원

2)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 가) 특수교육대상자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학생·학부모의 요구, 학교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 지원
- 나) 특수학교(급) 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월 740천 원 지원
- 다) 학교 밖 특기적성교육비 개별지원: 월 100천 원 내 실비 지원

3) 방학프로그램 운영

- 가)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나) 학교,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에 의한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다양한 방학 중 통합 프로그램 운영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 지원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나) 학교별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수립·운영 및 연수 실시
- 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라) 학교별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이해·인권 교육 등 연수계획 수립·운영
- 2) 치료지원 내실화
 - 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비 지원: 월 120천 원 내 실비 지원
 - 나)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실시
- 3)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나) 특수교육기관-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및 지원인력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 라)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2) 교육 현장 특성을 고려한 재난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실질적인 안전대피 훈련 실시
- 3)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4) 특수학교 학생 생활 안전 및 학교 시설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장애학생의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
 - 나)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다)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

- 2) 학생 맞춤형 진로 역량 개발 지원 강화
 - 다양한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및 학교급 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 진로설계 지원
- 3)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대학 체험·적응지원 및 장애인 특별전형 등 대입 관련 정보와 장애대학(원)생 지원 정책, 대학교 지원 정보 등 통합 제공

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1)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2022. 6. 29.)
- 2)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6기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기관 포함)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실시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생애주기별 전환교육프로그램 장학자료 개발·보급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 2)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통학구역(학구) 기준에 따른 학생 배치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 2)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추진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참여
- 2) 통합학교 교(원)장의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실시: 3시간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실시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실시
- 2)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특수교사의 대상 에듀테크 활용 직무 연수 실시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2025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특수교원 연수 실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파악 및 순회교육 실시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장애학생 문화체험 활동 운영 및 지원
-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컨설팅 실시 및 협력 지원
- 2)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컨설팅 실시
- 3)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지원
- 4) 건강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5) '행동지원 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 중재 및 컨설팅 제공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 2)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및 지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상으로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2)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치료지원비 지원
- 3)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4)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지원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장애학생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2) 노후 직업교육실 개선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실현

목표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지원 체계 강화

중점 추진과제

1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1-2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1-3	특수학교(급) 확대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5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4	장애학생 인권 내실화
		2-5	장애학생 안전역량 강화
3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3-1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3-3	장애정도를 고려한 순회교육 체계화
		3-4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3-5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4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문화	4-1	진로역량 개발 지원
		4-2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4-3	문화예술·체육 활동 선진화
		4-4	디지털 역량 강화
		4-5	방과후교육 지원 활성화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등록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나) 2차 장애 예방과 발달 촉진을 위한 조기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 확대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체계 강화
 - 다)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 보호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호자 On누리 및 대전보호자지원센터'를 '온맘'과 연계('24.~)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이 있는 특수학교(3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육지원실 운영(3센터)
 -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대상영아 가족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라)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마)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의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조기 지원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등록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 시 정원 관계없이 추가 배치
 - 다)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라)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나.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 1) 특수교육대상자 정보 관리 체계 마련
- 2)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 가) 특수교육원(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나)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정보제공
 - 다) 지역 여건 및 기능을 고려한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교육 지원 강화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원(지원센터)을 진로·직업교육, 시청각장애교육, 장애영유아교육 등으로 특성화하여 운영
- 3)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가) 특수교육원(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담 인력 확충
 - 나) 특수교육원(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4)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다) 진단·평가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 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다. 특수학교(급) 확대

-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선택권 확대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축소,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2) 특수학교 신·증설 및 다양화
 - 가) 유치원 또는 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 가)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등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 관련 현장 의견수렴
 - 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교원 중 보직교사 증치
-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나)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장애 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3)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확대 및 상호 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마.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 1)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2)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 3) 기숙사 생활지도원, 수어통역사,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 확대
 - 나)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교육 만족도 제고
 - 가) 통합교육지원 단 운영 및 사업 만족도 조사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장,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유치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운영
 - (관리자 연수)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이해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실시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특히 순회교육 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안내

- (특수학급 교사) 학교 과정별·장애 유형별 협력교수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정다운 우리반' 운영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 통합교육 지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4팀)

나)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을 강화를 위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활용 학교(급) 방문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나) 행복동행버스를 이용한 학급 단위 특수교육원 방문 '찾아오는 장애공감 교실' 운영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 권장 안내
-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공모·운영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가) 장애인식개선 콘텐츠의 다양화 및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내실화

1) 인권침해 대응 체제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상시 감지체계 운영
-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실태점검 내실화
 -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를 통한 행동중재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
-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교육 실시
 - 나)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 권장

마. 장애학생 안전 역량 강화

- 1)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운영 지원
 - 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급) 학생의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조력자 지정 제도(Buddy System) 운영
 - 나) 특수학교(급) 노후 시설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방안 제고
- 2)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 계획 및 교출(가출) 대비 계획 수립·운영 지원
 - 가)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보호 인력 배치 및 통학 환경개선
- 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가)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4) 교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 나) 학교별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5)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가) 학교보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지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학교의 특성,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검토학교(1교) 및 교사연구회 운영(2팀)
-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연수
- 5)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고교학점제 점진적 적용에 따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 나)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6)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나)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활용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 대전특수교육원 홈페이지(<https://sp.dje.go.kr>) 보조공학기기 검색 및 통합대여시스템 활용
 - 다) 시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운영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
 - 마)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실 환경 구성 및 교재·교구 확보를 위한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
- 7) 예비교사 등 대학생 교육봉사활동 지원 강화
 - 가) 대학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 등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가)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나) 교육과정과 교과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개발 자료 안내
- 다.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가)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나)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연수 및 복무 관리 강화
- 다) 배치환경 및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2.6.)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 나)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노력
-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의료적 지원이 우선으로 필요한 특수학교에 전문 인력 배치 운영
 -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 및 학생 건강·안전 관련 컨설팅 제공
 -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 운영
 - 라) 의료지원 인력을 통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및 교내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거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단평가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 나)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통합학급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장애이해교육 운영
 - 찾아오는 시각장애이해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청각장애학생 실시간 원격 문자 통역 지원
 - 다) 시청각장애학생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시각장애학생 대상 시기능, 점자, 보행 수업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 청각장애학생 대상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라) 시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및 보호자 교육 운영, 보조공학기기 지원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나)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는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5) 행동중재 지원

- 가)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특수교육원(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3개 기관)
 - 학교 내 행동중재지원팀 구성 및 행동중재지원계획 수립·운영(특 6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지원
 - 위기행동에 대한 대응과 사후 처리를 위한 특수학교(급) 행동중재지원팀 구성·운영
 - 개별 학생 위기행동에 대한 행동중재전문가, 전문(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집중적인 행동중재 지원 강화

다)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교원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 지원

- 대학 연계 특수교육교원 행동중재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위탁 운영
- 행동중재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및 연수 운영(기초, 심화)
- 심각한 행동 문제에 대해 관리자, 행동중재 전문가, 행동지원 전문교사 및 행동중재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집중적 행동중재 지원 강화

6) 치료지원 내실화

- 가) 치료지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 나) 장애 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정기·수시) 실시

마.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1)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제도의 단계적 적용					
		'22	'23	'24	'25
수업량 기준	단위	학점			
	1학점 수업량	50분 17*(16+1)**회			50분 16회
총 이수 학점	1학년 204단위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192학점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비중	기본 교육과정	교과 166학점, 창체 26학점		교과 134학점, 창체 26학점, 일상생활 활동 32학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책임교육	기본 교육과정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 과목(국어, 수학, 영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전 과목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평가제도	기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계획에 기반한 서술 평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공통, 일반 선택 과목 9등급 병기)		성취평가제 (선택+상대5등급 병기)	

- * (기본 교육과정)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
- ** (선택 중심 교육과정)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며,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융합 수업 등으로 활용
- ※ 교과 수업 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는 유지하여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2) 단위 학교 운영 준비 사항

- 가) 고교학점제 도입·운영을 위한 학교 규칙,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및 학업성적 관리 규정 등 정비
- 나) 다양한 선택 과목 수업 운영, 학생 자율활동 및 휴식 공간 마련 등 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다) 고교학점제 도입·운영을 위한 연구회 7팀 운영 및 제도 이해 안내

4. 장애학생 교육 기회 확대

가. 진로역량 개발 지원

- 1)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특수교육원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강화
 - 다)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및 체계적 관리
- 2)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협력수업 등 협업 체계 구축
 - 나) 현장실습의 활동유형, 절차, 범위, 시간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
-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지원
- 4) 전공과 확충 운영 및 내실화
- 5)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2)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체계 강화
 - 가)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기회 확대
 - 나)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 다)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전문인력 배치
 - 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운영
- 3) 지역 내 참여 일자리 확대
- 4)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학생보호 및 진로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 나) 관계부처(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내실화

-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 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나)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지원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나) 체계적인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건강증진 도모
- 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연계한 통합형 해양체험캠프 '친구랑' 운영

라. 디지털 역량 강화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가)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보급 확대
- 나) AI 교육 선도 특수학교(급) 지정·운영 및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이해 교육자료 개발·보급

2) 교사 및 학생 디지털 체험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 가)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활용
- 나) 초·중·고 특수학급 대상 '찾아가는 상상 체험 버스 프로그램' 참여 신청
- 다) 디지털 배움터 및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연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마. 방과후교육 지원 활성화

- 1) 지역 내 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발굴
- 2) 유치원 방과후학급 운영
- 3)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및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 가) 특수학교별 학급 수 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배정학급 내에서 학교 자체 계획 수립·운영
- 4) 개별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5) 방과후활동서비스 연계 지원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수련활동, 행동중재 지원 및 서남부지역 접근성을 위한 대전특수교육원 청소년 수련시설 설립 추진

나. 특수학교(급) 확대

- 1)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추진 중('28년 개교 예정)
- 2)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15학급)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학교장애인식지수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통합교육 실시학교 적용 및 장애인식 수준 추이 분석
- 2) 특수교육원(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하여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보급
- 2) 인권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하여 학교 연수 지원
- 3)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동아리 운영

3. 개인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안내
- 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및 담당자 연수
 -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수립·제출
 - 나)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교원 연구회 조직·운영 협조
 - 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결과 제출

4. 장애학생 교육 기회 확대

가. 진로역량 개발 지원

- 1) 특수학교 중등과정에 진로진학상담 자격교사 1명 이상 배치 노력
- 2) 특수학교별 특색 있는 학교기업 프로그램 운영 및 내실화
- 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시교육청 연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
- 2)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공유

울산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교육비전: 모두를 위한 통합의 울산 특수교육
2. 교육목표
 - 가. 촘촘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 실현
 - 다. 특수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탄탄한 교육환경 조성
3. 추진방향
 -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라.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강화 ■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기반통합 교육여건 조성 ■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확산 ■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지원 강화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방과후 및 돌봄 지원 강화 ■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연계 진로 직업 교육 다양화 ■ 자유학기제 내실화 ■ 고교학점제 지원 강화 ■ 장애성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	--	--	---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2개 구성·운영
 - 나)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 진단비 지원(최초 1회, 30만 원 실비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과정 운영
 - 가)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운영
 -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3)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강화
 - 가) 의무교육비 지원: 공립 월30천 원 이내, 사립 월 100천 원 이내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치료지원: 136명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심리상담지원: 7명
 - 라) 특수교육실무사 및 지원인력 배치: 실무사 42명, 사회복지요원 27명
 - 마)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운영시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4)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강화
 - 가) 영아의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수립·실행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영아 담당 인력 배치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3명
 - 5)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 입학 전 적응지원 프로그램: 사전상담, 학부모설명회, 선배부모간담회
 - 입학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3팀
 - 나)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5회
 - 2) 2025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실시: '24. 6~8.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설치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명	상담전화	역 할	특성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55-6601	센터운영·통합교육·장애이해교육 총괄,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 지원	시각장애, 청각장애, 건강장애, 자유학기제, 인권지원, 진로·직업, 긍정적행동지원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219-5790	강북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227-6604	강남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영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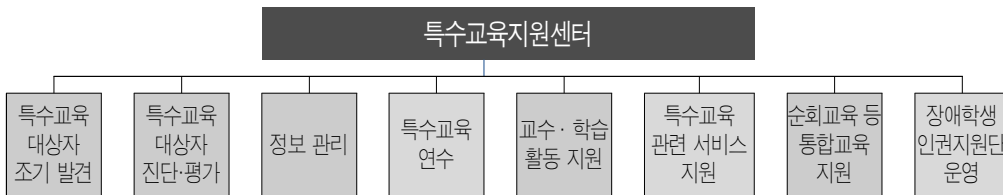
2) 시설 현황

구 분	사무실	진단 평가실	치료실		직업교육실		연수실	학부모실	조기 교육실	기타	계
			센터내	거점	센터내	거점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	6	·	2	·	·	6	16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10	·	·	1	1	·	·	14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1	1	4	2	·	·	1	1	1	1	12

3) 인력 배치

구 분	장학관	장학사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	임상 심리사	직업 재활사	치료사		행정 일반	기타	계
							재활	심리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1	2	10	·	1	1	4	·	2	2	23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1	17	·	·	·	16	3	·	1	38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	1	15	·	·	·	13	2	·	1	32
계	1	4	42	0	1	1	38	2	4	93	

4) 기능



라.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신·증설: 15학급(초8, 중3, 고3)
- 2) 특수학급 설치 현황: 설치율 71.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34	42	106	177	50	72	37	60	227	351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핵심교원 역량강화 연수 1회
 - 나) 특수교육교육과정 교수-학습 설계 연수 1회
 - 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1회
 - 라)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1회
 - 마)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자율연수 2회
- 2) 교육청, 단위학교별 교실수업,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3)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승진가산점, 전보특례 등)
- 4) 특수교육교원 연수기회 확대: 국립특수교육원, 울산교육연수원 등
- 5) 교원치유센터 연계운영, 산림복지프로그램 활용 연수 등 교사 마음회복 연수 운영

바.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 1) 교내 컨설팅장학 및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2) 특수교육 맞춤형 컨설팅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1팀, 현장 컨설팅 지원 3회
 - 나) 통합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지원: 44교 68명
 - 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2) 통합교육 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 가)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통합교육 선도학교 운영
 - 1)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1교 운영
 - 2) 통합교육 선도학교 정다운학교 11교 운영
 - 3)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원교사 배치 확대(5명 → 10명)
-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내실화
 - 가) 시특수교육지원센터: 건강장애지원, 시청각거점 운영

나.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집합연수: 2회, 564명
 - 나)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이수 권장
- 2)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통합학급당 연 15만 원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2)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실시
- 3)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5개 프로그램 운영, 42교 86회 지원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초4~전공2학년 학생 전수조사)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15명, 현장지원(17교 17회)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1)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기별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특수학교 디지털·정보화교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 가) 특수학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기기 확충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나) 2024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울산예선대회 개최: 8교 24명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화 교육 장소 제공(교육정보실, 여가문화체험실 운영)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역량강화 핵심교원 연수: 70명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1팀 5명
- 3)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 가) 학생중심 수업 활성화 및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방법적용
 - 나) 교사연구회, 교수 학습공동체 운영 등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 4)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1팀 4명
 - 나) 학생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특수학교 4교)

다.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구분	자격 구분			소속
	유치원	초등	중등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2	8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9	6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8	6	2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강화
- 2)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학교명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이리학교
종목	볼링	역도	육상	수영, 역도, 스키

- 3)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3교
- 4)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특수학교 4교
- 5) 전문직업인양성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4개 위탁운영(공예·음악·무용)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중도중복학급 편성·운영: 3학급
 - 나) 맞춤형 교육 지원: 특수학교 4교, 신체활동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 2)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 학교 복귀를 위한 원격수업 등 교육 제공
 - 나) 원격수업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꿈사랑학교 위탁운영(2명)
 - 다)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4교 4명
-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시청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청기, 송수신기 등 11명 지원
 - 나) 시각대체교과서 지원
- 4) 행동중재 지원
 - 가) 긍정적행동지원팀 구성·운영: 3팀
 - 나)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교 지원 및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4교 6명)
 - 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14명
- 5)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 운영
 - 가)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개인별 방과후교육 수강(1인 월12만 원 이내 실비지급)
 - 나) 특수학교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지원: 특수학교 4교 59강좌
 - 다) 유치원 특수방과후과정반 운영: 37학급
 - 라)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특수학교 2교 8학급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1) 치료 및 심리상담지원 내실화
 - 가) 학교재활지원: 재활사가 해당학교에서 주2회 재활지원

- 나)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월 16만 원 이내 전자카드 결제
- 다) 심리상담 지원: 1인 10회기,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혹은 그룹지원
- 라) 치료사 역량강화 연수: 57명
 - 치료사 현황

구분	기관	울산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북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교				계
					울산 행복학교	울산 해인학교	태연학교	메아리 학교	
치료사		4	16	13	5	5	4	4	51

- 치료 및 심리상담지원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치료지원학생	136	650	191	68	1,045
심리상담지원	7	132	72	6	217

2)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가) 부모 및 가족 심리상담지원: 전문상담기관 연계 개인별 5~10회기 지원
- 나) 건강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 '24. 4.~8. 3회기
- 다) 청각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 '24. 4.~8. 3회기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현황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종류		보유현황	종류		보유현황	종류		보유현황
보조 공학 기기	시각장애	10종86개	보조 공학 기기	시각장애	4종 22개	보조 공학 기기	시각장애	3종/37개
	청각장애	10종54개		지체장애	18종 108개		지체장애	5종/46개
	지체장애	16종102개		청각장애	2종 5개		청각장애	1종/1개
	의사소통장애	3종12개		의사소통장애	1종 19개		의사소통장애	1종/8개
	진단평가 도구	36종42개		진단·평가 도구	18종 241개		진단·평가 도구	45종/747개
직업평가 도구	16종31개	교재·교구	19종 3,163개	교재·교구	5종/277개			
성교육자료	2종2개	도서	7종 2,552개	도서	24종/844권			
교재·교구	285종424개	직업훈련교구	1종 9개	직업훈련교구	6개			
스마트러닝 기기	태블릿PC 111대 노트북 31대		성교육자료	1종 57개	성교육자료	1종/11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 12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36개		
			신체운동활동자료	14종 26개	신체운동활동자료	9종/22개		
			컴퓨터활용 CD자료	76종 157개	컴퓨터활용 CD자료	1개		
			기타	4종 16개				

3)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학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계
2024	374	19	307	700

나) 특수교육실무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신규 채용자(30시간 이상), 기존인력(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
- 특수교육지원인력 집합연수 실시(2회, 4시간)

다) 사회복무요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 기존 사회복무요원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직무교육 실시

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가) 장애학생 안전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24년도 예산확보

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나) 특수교육대상자 차량 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6)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가)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및 학교주변 통학 환경 개선

나)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강화

다) 재난대응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라)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대피훈련 실시

4.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 지원

- 대상: 중, 고 특수학급
- 내용: 제과제빵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운영 지원
- 방법: 지원센터 및 거점학교 직업교육실 활용,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활용

나)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 내용: 직업교육·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 및 지원인력 여비, 교육 운영비 등 지원

- 지원액: 41교 83학급(특수학교 급당 4,000천 원, 특수학급 급당 3,500천 원)

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가) 울산혜인학교(2011년 선정) 학교기업 설치·운영

나)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업체)와 협약 및 연계운영

3)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가)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장 운영(고등학교 3학년 과정 이상)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일반사업장 일자리 현장실습

나) 교육청 카페 '청마실' 운영

- 대상: 전공과 학생

- 내용: 카페 '청마실' 실습을 통한 바리스타 등 서비스업 현장실습

4) 장애학생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의 실질적 취업 기회 확대

나) 울산장애인복지관 위탁 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취업지원

다) 학생 및 학부모 산업체 현장견학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5) 장애극복활동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나) 프로그램 내용: 현장학습, 문화유적 탐방, 환경보존 활동, 타지역 견학활동 등

다) 특수학교 교당 4,000천 원 지원

나. 예비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1)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운영지원(13교 64명)

2) 대학진학설명회 운영(6/8(1일간), 학생, 학부모, 교사 총 90여 명 참석)

다. 장애 성인 평생교육 지원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2)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3기관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강화
- 3) 대상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강화 및 점검('24. 12. ~ '25. 2)
- 4)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 진단비 지속 홍보
- 5)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영유아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나.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1) 울산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TF팀 운영, 세부추진계획 관련부서 협조
- 2)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추진: TF팀 운영, 세부추진계획 관련부서 협조

다.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1) 행동중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24. 6.~11.)
- 2) 특수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을 통한 자율장학 지속 운영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24. 12.)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컨설팅 지원
- 2) 통합교육지원단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나.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 2) 울산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24. 10.)

다. 일상적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5개 프로그램 운영, 16교 16회 지원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공모전 개최('24. 6.~7.)
- 3)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작품온라인전시회 개최('24. 11.)

라. 장애학생 인권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속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 2) 긍정적행동지원팀 지속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방법 등 컨설팅 제공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특수학교 디지털·정보화교육 지원 강화

- 1) 2024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 '24. 9. 전국대회 참가 12명 예정

나.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 1)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안내 및 점검: '24. 10.
- 2)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실시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1)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운영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관 연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라.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중도중복장애, 건강장애, 시청각장애 지원)

- 1) 건강장애학생 실시간 화상수업 및 동영상 제작
- 2) 원격수업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꿈사랑학교 위탁운영 등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치료, 심리상담,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력, 통학비)

- 1) 치료 및 심리상담지원 내실화
 - 가)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상시 신청(월 16만 원 이내 전자카드 결제)
 - 나) 2025학년도 서비스 지원 대상자 재활진단평가 실시('24. 11.~'25. 1.)
- 2)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부모자조모임 운영(9~11월, 2회기 운영)
 - 나) 청각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9~12월, 2회기 운영)

4.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다양한 현장실습 및 직업교육을 위한 사업체 개발
- 2)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전국대회 참여('24.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의 추진방향

가. 비전: 특수교육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의 미래 모델 실현

나. 목표

-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교육환경 조성
- 미래를 열어가는 특수교육 교육환경 조성
-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 책무성 조성

2. 세부과제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나.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교육환경 조성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라.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강화

가. 장애영유아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장애영유아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비 지원(120명 35만 원 이내 지원)

나) 관내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 홍보 강화

2) 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가) 장애통합어린이집(1교), 장애전담어린이집(3교) 순회특수교사 지원

(총 4교 3명)

- 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 개별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교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 3)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 교실 지원 강화
 - 장애영유아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운영비 지원(6교)

나.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
 - 가) 순회교사 증원을 통한 순회교육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순회교사 배치(18명)
 - 나)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매 학기말 순회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학교에 제공
- 2)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가) 만성질환자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하여 교육 제공
 -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 및 원격수업 지원(6명)
 - 건강장애학생 외 장기간 입원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10명)
 - 나)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지원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1차 4/8, 2차 9월)

다.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확대

- 1) 토요일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우리가족 놀이터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월 1회)
- 2) 학부모 자조모임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자조모임(2팀) 선정 및 운영비 지원
 - 특수학교(2교) 학부모 자조모임 운영 지원
- 3) 학부모 힐링 연수
 -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설(7월)
 -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용품비 지원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가족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 정보 제공
 - 나) 보호자 면담 및 장애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한 진단평가 실시
- 2)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가) 학생과 학부모의 개별화된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1명) 배치
 - 나)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임상심리사(2명) 배치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확대

-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기초학습기능검사 평가 및 해석(6월)

3) 현장지원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급, 가정, 시설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나) 읍면지역 지원을 위한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8명) 배치

마.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개발·보급

-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중점학교 선정(세종이음학교)

- 재택순회교육대상학생 주3회 방문 및 원격교육 지원(25명)

- 2024년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개발지원단 위촉(11명)

2) 2022 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 권역별 특수교사 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사 전문성 함양

- 2022 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핵심 교원, 선도교원 양성 연수 참여

-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지원단 구성 및 담당자 협의회(4월)

3)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일반교사, 특수교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및 유치원,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4월) 운영

4)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점검(5월)

바. 특수학교(급) 미래교육 시설 구축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 '24년 특수학급 8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23) 192학급→('24) 215학급

- 특수학급 신·증설 시 환경개선 및 교재교구비 지원

2) 특수학교(급) 꿈마루 교실 운영

- 특수학교(급) 꿈마루교실(공간혁신)을 위한 컨설팅 운영(4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1)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통합학급에 통합학급 운영비(500천 원) 지원

- 특수교원과 일반교원이 함께 하는 정다운학교 운영(6교)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행동지원단(1교) 운영
- 2)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유치원, 초등학교 담당교원 연수 운영(106명)
 -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과정 참여 권장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2개단(남부, 북부) 24명(외부 16명, 내부 8명) 운영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운영
 -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옹호기관, 세종YWCA 성인권 상담센터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2)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예술단 「어울림」 공연활동을 통한 장애공감문화 확산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치료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실화

- 1) 치료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
 - 학교로 방문하여 학교 일과 시간 중 언어재활 실시(56명)
 - 치료지원 제공 기관별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 2) 원거리 통학생 통학편의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교외 체험활동 지원 등 활동 참여 확대
 - 특수학교 통학 차량 1대당 2명의 통학안전요원 배치로 안전한 통학편의 지원
 - 통학비 지원 대상 학생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월별 통학비 지원
- 3)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상담 지원
 - 더봄학생, 행동지원학생 등 신청학교 대상 상담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 전문상담기관 연계 학부모 개별 상담 지원

나.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강화

1) 개별 맞춤형 방과후교육 지원

가)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 실시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개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자유수강권 월 160천 원 지급

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방과후 기간제교사 및 운영비 지원
-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시 시간강사 및 지원인력 지원

2) 특수학교(급) 돌봄 지원

가) 특수학교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보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나) 돌봄전담사 배치 및 운영으로 돌봄 내실화

- 장애학생 돌봄에 필요한 돌봄전담사(7명) 배치 운영

다) 특수학급 돌봄 지원 강화

- 돌봄 참여 학생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인력 지원

다.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체육활동 다양화

1)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가)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운영

- 한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연계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영능력 및 수영기술 향상(80명)

2)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장애학생 토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축구, 배드민턴, 조정, 슌런, 육상, 보치아, 당구)
- 특수교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실기과정 직무연수 운영(17명)
- 장애학생 맞춤형 건강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특수학교 2교)

※ 제18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출전 결과: 금(11개), 은(5개), 동(7개)

금(11): 육상(6), 수영(2), 볼링(1), 조정(1), e-스포츠(1)

은(5): 육상(2), 슌런(2), 디스크골프(1)

동(7): 육상(3), 탁구(2), 슌런(1), 디스크골프(1)

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지원

- 1) 정당한 교육편의 환경 구축
 - 장애학생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3~5월, 총 15교 18명)
 - 시각장애 확대 및 음성파일 교과서(8권) 지원
 - 찾아가는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실시(3~5월, 3교 5명)
-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및 다양화
 -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채용 시 장애인 학대,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특수교육실무사 192명 배치
 - 나)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협의회 운영(5월)
 - 다) 특수교육지원인력 다양화
 - 대상학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무원(23명) 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33명) 배치

마.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

- 1)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진로 프로그램 참여
 - 가) 일배움과정(2일, 10시간) 체험활동 운영(고등학교 8교, 특수학교 2교)
 - 나) 취업지원실무사 지원을 통하여 내실있는 실습 기회 제공
- 2) 직업 실기 역량을 강화하는 자격 취득 과정 운영
 - 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목공예, 제과제빵, 바리스타 프로그램 등 운영(14교)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바.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

- 1) 맞춤형 진로 선택을 위한 찾아가는 직업평가 실시
 - 가) 진로 상담 및 직업 흥미 검사를 통한 진로탐색(중2) 실시
 - 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진로 선택을 위한 직업평가(고1, 고3) 실시
- 2) 장애학생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참여
 - 가) 직업평가를 통하여 참가 학생 2명 선발(4월)
 - 나) 직무지도원 지도를 통한 개별화된 현장실습 참여 지원
- 3)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사업 운영
 - 가) 장애학생 학교내 직무 개발을 통한 졸업 후 일자리 창출
 - 학교내 일자리 직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무보조, 청소보조 등 운영

- 나) 학기별 선발 및 운영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보
 -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대상 2명(상반기) 선발(1월)
- 다) 직무지도원 배치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 4)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 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배치
 - 도서관보조원 9명, 청소보조원 8명, 장애인예술단 2명
 - 나)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단 구성 및 운영(3월, 15명)
 - 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각급 학교 및 기관 담당자 연수 실시(3월)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25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지침서 개발
- '25 특수교육 주요정책 공유를 위한 특수교사 연수 운영('25. 2.)
- 2024 고교학점제 담당교사 연수 및 컨설팅 운영(9월)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수교사 워크숍(9월)
-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통합교육지원단 현장지원(매월)

나.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 재택순회교육대상학생 주 3회 방문 및 원격교육 지원(연중)

다.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확대

- 학부모 대상 상담 및 연수 운영(연중)
- 토요일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연중)

라.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진로프로그램 운영

- 1)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진로프로그램 참여
 - 기초체험(1일, 4시간), 심화체험(5일, 20시간) 체험활동 운영
- 2)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격 취득 과정 운영
 - 자격증 취득과정운영 지원(14교)

마.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

- 1)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운영: 특수학교(급) 고3, 전공과(9월~11월)

- 세종도화(제과제빵), 하나로마트, 보비스쿵 등
- 2)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운영: 특수학교(급) 고3, 전공과(9월~'25. 2월)
- 3)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단 컨설팅 운영: 배치 기관(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상담, 업무 고충에 대한 조사·지원 등

바. 대학진학을 위한 맞춤형 진학 정보 제공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 진학 상담 및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7월~8월)
- 2)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7월~12월)
 - 대학생생활체험 프로그램: 대학캠퍼스 투어, 입학상담 등 대학진학 안내

2.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교육환경 조성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 영화를 활용한 통합학급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구입 및 활용
- 장애인예술단 「어울림」 공연을 통한 장애공감 문화 확산

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지원

-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연수 운영(8월, '25. 2월)
- 신규 배치 1년 이내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장애이해 관련 내용 포함) 실시

다. 특수학교(급) 미래교육 시설 구축

- 특수학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2교)
- 특수학교(급) 꿈마루교실 사업을 통한 공간 재구성(5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치료지원비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실화

- 치료지원(자라미카드) 1인당 160천 원 지원

나.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방학 중 방과후 및 돌봄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 북부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9월~12월)

라.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체육활동 다양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활 체육 프로그램 수영 운영(연중)

경기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경기특수교육 실현

정책
방향

- (자율) 수요자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균형) 교육약자를 고려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로 모두를 위한 교육 보장
- [미래] 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체제 구축



4대
추진
전략
·
10개
추진
과제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 강화
-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지원시스템 내실화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체계 강화

가) 영유아 건강검진(생후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 등록 단계까지 맞춤형 조기중재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체계 안내 및 연계 강화 추진

나) 관계기관(병원,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장애 의심 및 장애영유아 실태 파악

2)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나)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 및 컨설팅 실시

다)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강화를 통한 장애영·유아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지원

라) 관계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마)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대상 특수교육 분야별 자료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교육-보육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 노력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및 다양화

【경기도 특수학교 설립 계획】

설립 년도	지역명	학교명(가칭)	장애 유형	교육과정별 학급수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2025	안성	[공립]안성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	-	20
2027	시흥	[공립]시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4	30
	수원	[공립]새빛학교	시각	2	6	3	3	6	20
2028 이후 (예정)	남양주	[공립]남양주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4	36
	고양	[공립]고양특수학교	지적/지체	1	12	12	12	8	45
	부천	[공립]대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2	34
	포천	[공립]포천특수학교	지적/지체	1	6	6	6	2	21

※ 투자심사 추진 시 장애유형 및 교육과정별 학급수는 배치계획에 맞추어 변동될 수 있음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감축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나) 특수학교 설립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및 부지 확보(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폐교 부지 활용)
- 다) 기존의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학교 및 기관과 특수학교간 교류를 확대하고 운동회, 예술제, 체험학습 등 특수학교 지역사회 개방으로 지역사회와 공존
- 2)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가)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 우선 증설
 - 나) 유치원 과밀특수학급 대상 교사 추가* 배치기준 개선
 - * (현행) 1학급 학생 6명 이상인 경우 교사 1명 추가 배치
 - (개선) 특수학급 학생 수가(특수학급 교사수×4명)을 초과하는 경우 교사 1명 추가 배치
- 3)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운영 및 학급당 정원 감축
 - 나) 중도중복장애 지원을 위한 교사 배치 확대를 위한 특수학교 교사 배치 기준* 조정
 - * 유치원 특수학교: 학급당 특수교사 1.3명→1.5명
 - 특수학교 초등과정: 학급당 특수교사 1.8명→2.0명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 1)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 가)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고도화 및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추진
 - 나)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담당 업무 총괄 지원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허브 기능 강화
 -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및 전문적 교육 체제 지원 강화
 - *('23)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5개, 행동중재지원센터(한서중앙병원) 1개

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중증)장애	복부 시각·청각	건강장애
거점지원센터	수원	용인	성남	구리남양주	의정부

- 나) 학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상담 운영 등 가족지원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 가) 장애(위험)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상담 제공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직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연 4회) 강화 및 업무 담당자 간 권역별 협의체 조직 및 우수사례 공유

2. 미래형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1)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 가) 경기형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 모델 기반 성장 맞춤형 플랫폼 구축
 - 나) 교육지원청 단위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 2)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 강화
 - 가)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나)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수업혁신을 위한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운영
- 3)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가상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굴·보급
 - 나) 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 의료기관 간 업무협업, 학교와의 용역 계약 체결 안내 등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지원
 - 다)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라) 건강장애학생 등을 위한 원격수업 및 병원학교 운영 지원 확대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 교육 연계 강화
 - 가) 초·중·고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및 도내 진로직업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지원 강화

구분	관련 기관 및 현황
진로직업 지역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7개소 - 미래형 직업교육실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파주, 평택) 특수교육지원센터 25청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직업교육 거점 및 중점 운영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8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 5교
관계기관 연계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수원, 의정부)

나)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운영, 진학설명회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다)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라)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 절차 및 시기 등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안내

2)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가) 고교학점제로의 점진적 변화 및 현장 정착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

* 단계적 도입: (2024년) 고등학교 2학년 → (2025년) 고등학교 3학년

나) 학생의 진로·흥미에 맞춰 학점제 기반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
 예술 동아리 지원

나) 미래 체육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특기와 역량 발휘 기회 제공 확대

다.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안내자료 개발·보급

나) 복지·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로 장애학생 안전 강화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평가
 지원 개발 자료 안내

나) 특수교육 수석교사 교육과정 지원강화(수석교사 2명, 성은학교, 화성나래학교)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력강사 지원(특수교육 협력강사 500명)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역단위 활성화 기반 조성

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협력 강화

- 나)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한 장애인의 학습 자율성·선택권 강화
- 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조사 개선
- 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세분화 및 신뢰도 강화

3.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 1) 행동중재지원시스템 구축
 - 가) 행동중재 전문가(특수교사)양성 및 상시 상담, 중재 지원
 -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집중 지원(한서중앙병원 1개소)
- 2) 행동중재 실행 역량 강화
 - 가) 학생 현장지원 및 행동분석을 위한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 및 4단계 맞춤형 지원
 - 나) 교육공동체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단계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

단계	지원	내용
1단계	[가정·학교] 가정 및 학교 차원의 행동중재 지원	- [가정] 학부모 상담을 통한 학생의 긍정적 행동 촉진 - [학교] 행동중재에 대한 교육공동체 이해 및 기초 교육 지원 - [학급] 학급 환경 분석을 통한 행동중재 지원 - 학교-가정-전문가 협력을 통한 보편적 지원 환경 구축
2단계	[특수교육 지원센터] 긍정적행동 지원단 전문가 연계 지원	- 학생 행동 기능평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포괄적 중재 - 과학적 행동분석-행동기능평가-긍정적 행동지원 실시 및 평가 - 기초학습기술, 사회성기술, 자기조절기술 등 행동분석에 따른 개별 집중 기술적 지원 - 학부모, 교사 교육 및 컨설팅 연계 지원
3단계	[행동중재 지원센터] 개별학생 집중지원	- 학생 개별 행동중재팀 구성 - 학생 개별 행동중재팀의 행동중재 계획 수립 및 집중행동지원 - 정신건강의학적 진료와 행동문제 치료를 병행한 집중적 중재 지원
4단계	[행동중재 종합지원팀] 사례관리 사후모니터링	- 행동중재 전문가 매칭을 통한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지원 - 경기 행동중재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한 개별 학생 이력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연속적 지원

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 1) 특수교육 인력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정규교사 확보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공립 184명, 사립 16명, 총200명)
 - 다)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학생의 장애유형 및 성별(남학생 배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특수교육 치료 및 방과후 지원 운영으로 교내방과후, 꿈이든카드(자유수강권) 등 학생 필요에 따라 사용
 - 나) 지역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
- 3)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가) 학습자 중심의 방과후 교육 지원
 - 나)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강화
 - 다) 특수교육 종일반 학급 증설('23년 180학급 → '24년 250학급)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 1)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정책 수립
 - 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통한 교육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부서 협의체 구축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 ▲ 유·초·중·고 모든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저소득가정 학생 등 교육약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제도화
- ▲ 정책적 성찰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실현

-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교) 확대 및 컨설팅 지원
- 2)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 가) 통합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권장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 나)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

- 다) 특수교사의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역량 강화 연수
- 라) 예비교사 등 대학생 교육봉사 및 멘토링 역량 강화
- 3)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 가) 개정교과용 도서 편찬 보급 시, 장애인식 개선 내용 포함 안내 및 교과 연계 장애인식 개선 수업사례 공모전 참여 안내
 - 나) 협력적 수업 설계안 개발·보급

나.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교육 이수 내실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대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연 2회 이상)
 - 유·초·중·고 학생 및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연 1회 이상)
 - 나)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 체험존, 직접 체험하는 장애이해교육 지원
 - 라)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을 통한 통합 고도화
-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나) 교육활동 침해 긴급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조직 및 긍정적 행동지원 확대

III 향후 추진 계획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유보통합 관계기관(부서)간 협업을 통한 장애영유아 지원 홍보 및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격차 단계적 해소 노력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24. 11.)
- 3)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확대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25. 3. 1개교 목표 안성특수학교 설립 추진)
- 2)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 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사전 확보

【경기도 특수학교 설립 계획】

설립 년도	지역명	학교명(가칭)	장애 유형	교육과정별 학급수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2025	안성	[공립]안성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	-	20
2027	시흥	[공립]시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4	30
	수원	[공립]새빛학교	시각	2	6	3	3	6	20
2028 이후 (예정)	남양주	[공립]남양주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4	36
	고양	[공립]고양특수학교	지적/지체	1	12	12	12	8	45
	부천	[공립]대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2	34
	포천	[공립]포천특수학교	지적/지체	1	6	6	6	2	21

※ 투자심사 추진 시 장애유형 및 교육과정별 학급수는 배치계획에 맞추어 변동될 수 있음

- 3) 특수학교(급) 운영을 위한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 특수학교(급) 신증설 수요조사 및 확보(유·초·중: 8월, 11월 / 고: 4월 8월)
- 4) 복합특수학급 운영교 확대 및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지원 강화('23년 14개교 35학급 → '24년 17개교 44학급)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인력 강화

- 1) 경기특수교육원 건립을 위한 연구 추진
- 2)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및 협의회 운영 (연 2회)

2. 미래형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1) AI 기반 성장 맞춤형 플랫폼 구축 및 현장 보급
- 2) 의사소통, 정서안정,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시범 운영 및 사례 공유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점검('24. 4.~11. 자체점검, '24. 12. 결과 제출)
- 2)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별, 지역별 긍정적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급) 컨설팅 지원, 우수 운영사례 발굴·확산
- 2) 개별학생 행동평가·행동중재 데이터 누적 집중 관리

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주기적 업무평가 실시
- 2)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 방안 강구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 1)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 2)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 1)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적용 무장애 장애이해 체험관* 체험 기회 제공
 - * 무장애 시설, 제품, 재활 보조공학기기 등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험관, 교육용 키오스크, 가상현실(VR) 등 확대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유·초·중등학교 과정별 관리자·교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미래를 열어가는 더 나은 강원특수교육

1. 기본 방향

-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토대 마련
- 나. 교육공동체 협력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통합교육 확산
- 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미래사회로 확장되는 교육 실현
- 라. 지역사회 기반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추진 과제

-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라.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내실화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배치 등 지원
 - 장애유아지도사(32명),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15명) 배치 운영
 - 나) 유치원 특수교육 전공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1명, 원주)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 선택권 및 학습권 증진을 위한 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연도	2023	2024
유치원 특수학급 수	37	38

- 라)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실효성 제고 및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상호 간의 협업적 교수체계 구축
-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강릉 하슬라유치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강화

-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광역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구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	춘천	철원
	원주	황성
	강릉	평창
	속초양양	고성, 인제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정선
	홍천	양구, 화천

- 3)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 강화를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구분	소재지
강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춘천계성학교 소재
강원시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강원명진학교 소재

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체제 다양화

- 1) 개원목표: 2026년 예정
- 2) 운영 구분: 본원(춘천), 분원(원주, 강릉)
- 3) 중점기능: 각 지역 특성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라.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1)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축소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불편 해소

- 2) 특수학급 신·증설 환경개선비 지원: 급당 35,000천 원
(환경개선비: 25,000천 원, 교재·교구비: 10,000천 원)
- 3)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

특수학급 현황	2023년: 407학급 → 2024년: 419학급
특수학교 현황	2023년: 199학급 → 2024년: 203학급

마. 특수학교(급) 노후환경 개선 추진: 28학급 지원(학급 당 20,000천 원 이내)

바. 특수학교 다양화 및 특성화

- 1)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를 소규모 및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2) 특수학교 재구조화로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추진

구분	학교명	학교형태	비고
1	춘천계성학교	유+초+중학교	기본·공통교육 중점
2	춘천동원학교	고+전공과	직업교육 중점

※ 2023~2025년 설계 및 공사 → 2026. 3. 1.자 재구조화 완료 예정

사.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학교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 교사 대상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 운영
-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운영, 산림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음 건강 회복 연수 운영 등)
- 3) 특수교육담당 교직원 복지지원비 확보로 교육활동 보장(1인당 30만 원 이내 실비 보장)
- 4)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사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 5)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더배움공동체」 운영 지원(7팀, 12,000천 원)
- 6)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특 9교)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별 특수교사, 지역사회와 연계한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도 1단, 지역 17단)

- 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확대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교육과정 조정,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 계획 컨설팅
 -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통합학급당 100천 원,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나) 교육지원청 주관 장애공감 문화 확산 및 협력적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원)장 연수 운영
- 다)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특히 순회교육 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3교, 진부중, 흥천고, 철원여고)’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우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1개원, 하슬라유치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계획 반영
- 나)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정(2019. 12. 27.)
- 다) 장애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 편성
 - 6학급 이하 600천 원, 7학급 이상 1,200천 원
- 라) 장애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이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위원회’ 구성 권장

- 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운영(속초청해학교, 태백라운학교)
- 바) 인쇄물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 가)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수 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 나)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장애학생 상담활동 강화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 나) 정기 및 특별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과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실시
 - 다)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나)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핵심교원 양성
-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4)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컨설팅 지원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 중심의 협의체 구성으로 교사용 자료 개발·보급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재택순회교육,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확대
- 2)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3)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특수학교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특 9교(112,500천 원)
- 2) 활동 중심의 특수학교 운동실 구축 지원(원주청원학교, 태백라운학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 강화 지원(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동해 한마음병원 등)
-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 확보를 위해 병원학급 신설 지원(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병원학급 신설 운영: 춘천동원학교 협력)
- 3)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료적 지원 인력(의사, 간호사, 치료지원 등)의 참여와 소견 반영으로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
- 4)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 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 5) 건강장애학생 지원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 교원 배치(강릉아산병원학교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 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학교복귀 축하케이크, 학교복귀 준비꾸러미 등 제공)
 -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비 지원
- 6) 행동중재 지원

- 도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집중 지원
- 7)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희망 학생
 - 지원내용: 교내 방과후학교, 위탁형 방과후학교, 방학중 계절학교
 - 지원기준: 150천 원×12개월, 연 1,800천 원(1인 기준)
- 8) 치료지원 내실화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지원방법: 순회치료사 지원, 치료지원비(마음모아카드) 지원
 - 지원기준: 160천 원×12개월, 연 1,920천 원(1인 기준)
 -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9)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지원 및 방과후·돌봄 참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198,042천 원)
- 10) 장애학생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 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 11)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 구축으로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업무 협약(2021. 4. 2.)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1)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진로체험망)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의 내실화(속초청해학교, 태백라운학교)
 - 3)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및 지원으로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의 다각화 촉진(원주 영서고등학교)
 -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의 내실화(연수 지원 및 협의체 운영 등)
 - 5)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대상: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공과 재학생
 - 지원내용: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38교, 77,985천 원),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72명, 34,996천 원)

- 6)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도교육청 1단, 교육지원청 17단)
- 7)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권역	거점지역	전환교육지원센터	역할
영서 북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춘천동원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급)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협력 추진 - 특수학교(급) 교사 연수
영서 남부	원주, 영월, 횡성, 평창, 정선	원주청원학교	
영동 남부	강릉, 태백, 동해, 삼척	강릉오성학교 동해해솔학교	
영동 북부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속초청해학교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적극 홍보
- 2)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시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배치

나.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지역 여건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강화

- 도 단위 및 지역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 분석 등 관련 연수 운영(연 2회 운영)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초·중등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지수'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단 체계 구축
 - 내실있는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통합교육 실시 학교에 적용(2024년) 및 학교 과정별 장애인식 수준 추이 분석(2025년)

- 2)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3) 교육과정 조정,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강화
- 4) 교육지원청 주관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원)장 워크숍 운영
- 5)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 하는 학생동아리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지원 확대
- 2) 특수교사 대상 행동중재전문가 양성 및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강화
- 3)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 1) 참여대상: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생
- 2) 지원내용: 진로 선택을 위한 대학생활 정보 제공, 대학 전공 체험, 진학 컨설팅 등 대학생활 직·간접적 체험 프로그램 제공
- 3) 지원대상: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신청학교
- 4) 운영기간: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맞춤형 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충북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다. 맞춤형 특수교육 및 전환교육 확대

3. 추진 과제

-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라. 전환교육 지원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홍보 및 양육 정보 제공 확대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가) 특수학교 내 영아학급(1학급) 및 영아 재택순회교육(5명) 제공
 - 나)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11학급) 및 통합형 방과후과정 운영(65학급)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 가) 초등학교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관리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가)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기관 연계 진단·평가 실시
 -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매뉴얼 현장 적합성 검토(2회)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처우개선: 승진가산점 및 이동가산점 부여
 - 나) 거점센터 운영 및 인력배치: 행동중재지원센터(3명), 시청각특성화센터(3명)
 - 다)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특수학교(급) 확충
 - 가) 특수학교 학급 신증설: 11학급(유△3, 초1, 중12, 전공1)
 - 나) 특수학급 신증설: 36학급(유10, 초16, 중11, 고△1)
- 2)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기관 다양화·특성화
 - 가)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및 남부3군 전공과 추진
 - 나) 충북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청주의료원) 내 병원학급 설치('24.3.)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 가)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에 특수교육교원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 나) 읍·면지역 소재 특수학교(급)에 정교사 우선 배치
-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역량강화 연수: 행동중재전문가과정 연수, 2022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연수
 - 나) 직무연수 실시: 특수학교(유,초)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규임용자 직무연수, 생애주기별 연수, 퇴근길 연수, 고교학점제 연수, 유치원 교사 역량 강화
 - 다) 특수교육 학습공동체(85팀) 및 특수교육연구회, 통합교육연구회(각1팀) 운영
- 3)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보호 프로그램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10센터) 및 유치원 통합교육거점센터(9센터) 운영 확대
 - 나)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 강화 사업(55개 유치원)
-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정다운학교)
-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합교육 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 반영(유·초 450만 원, 중 550만 원, 고 650만 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
 - 가) 통합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집합 및 원격연수 추진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정다운학교 확대 및 컨설팅 지원 강화(연구학교 1교, 선도학교 10교)
 - 나) 정다운학교 운영 지원 순회특수교사 배치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의무 실시 안내
 - 나)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제5095호) 공포('24.4.5.)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나) 장애인권교육 및 온·오프라인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 3)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 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안내
 -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권장 안내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 운영
 - 나)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월 1회 이상 인권지원단 정기지원 및 특별지원을 통한 학교 지원
- 나) 유관기관 인권지원단 협의회 및 역량강화 연수 진행 (학기별 1회)
-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나) 각급학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안내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보급(특수학교 5교)
 - 나) 특수학교 대상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11교)
-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 운영 안내
- 3)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 가) 충북특수교육원 '상상누림체험관' 운영: VR·AR, 코딩로봇 등 에듀테크 체험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 운영 및 자료 개발
-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나)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계획 포함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보급 및 활용
 -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나)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평가자료 보급
-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대비 현장 적합성 검토학교 운영
- 5)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컨설팅 및 연수 지원
 - 가) 2024. 고교학점제 운영 컨설팅(9교, 19명)
 - 나) 2025.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 실무 실습 연수(10교, 22명)
 - 다) 맞춤형 장학을 통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1교)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철저
 -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 나) 행동지원 및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사항 IEP포함 안내
- 2) 교육과정 연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이행 철저
 - 가) 개별화교육계획 자체점검표 활용 자기점검 및 컨설팅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장애유형 및 특성,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주 3회 이상 순회교육 권장
- 2) 소속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순회교육 실시하여 수업공백 최소화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운영(특수학교 5교)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거점 교육기관 운영(특수학교 2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및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 기준 안내
 - 나) 특수학교 건강권보장사업 추진(특수학교 2교)
- 2)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학습자료 공급을 위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 나)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3센터 3명
- 3)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수업 지원
 - 나) 종합병원 내 병원학교(충북대병원) 운영
 - 다)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청주혜화학교
- 4) 행동중재 지원
 - 가) 충청권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 충북특수교육원(전담인력 3명)
 - 나) 행동중재 전문가단 운영으로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지원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긍정적 행동지원단 거점 운영: 3센터
 - 라) 긍정적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6교
 - 마) 행동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공주대특수교육종합연수원 위탁연수 특수교사 10명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장애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방과후학교 운영
 - 가)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인당 월 14만 원 이내
 - 나)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비 증액: 급당 7,000천 원→10,000천 원
 - 다) 종일반 방과후학교: 43학급, 특수교육 종일반 전담사 1명 배치
 - 라)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시간제 기간제교사 65명 배치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순환근무 및 사회복지무요원 역량강화 연수
 -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원격 연수(15시간 또는 30시간)
 - 다) 특수교육 온나누미(유급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450명)
- 2) 치료지원 내실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증액: 1인당 월 12만 원→14만 원('24.3.~)
- 3)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특수학교별 여건에 맞는 자유학기제 자율 운영: 특수학교 10교
- 2)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충북특수교육원 발간 '학교밖 진로체험로 1번길' 활용 안내
 - 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2교
 -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3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운영
- 3)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으로 학생보호 및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나) 관계부처(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안내 및 현장실습 설명회 개최
- 4)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사업: 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교내 직무훈련을 통한 직무적응능력 개발

-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계, 일반
사업체 현장중심 직업훈련, 훈련지원인 직무지원
- 5)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확립
 - 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10명(특수학교 10교, 교당 1명)
- 6)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가) 지역사회중심 취업지원·사후관리 운영: 나이스 장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 나)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전문 인력(취업지원관) 배치
 - 다) 학부모에게 진로·취업 등 자녀의 미래 설계를 위한 정보 제공

4. 전환교육 지원

가.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

- 1) 다양한 진로별 맞춤형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환교육 지원
 - (1) 경제교육, 직장예절 및 스피치 교육,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노동인권 교육
 - 나) 대학 진학 정보제공 및 진학상담, 대학생활 체험 제공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 설명회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 자료집 제작 및 대학생활 체험 지원
- 2)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 가) 전환기 학부모교육을 통한 학부모 자조 모임의 토대 마련
 - (1) 취미·창업클래스+우리 자녀 성장스토리(2팀, 9명)
 - (2) 취미·창업 자격증 클래스(2개 영역, 11명) 및 아버지 드론교실 운영(22명)
 - 나) 진로전담교사 학습공동체 운영(10명)
- 3)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과 연계 지원
 - (1) 업무 지원 인력 파견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사항 유기적 협력
 - (2) 고등학교 학생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1)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취업처, 장애관련단체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
 - (2) 장애학생 취업지원 관련 기관간 교류 및 협력(4월, 1회)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2) 장애위험 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교실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초등학교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고도화 추진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개정 의견수렴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 2)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정책연구 및 남부3군 전공과 설치 추진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 교원 자격 및 직무연수: 유치원·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장애 주기별 직무연수, 통합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 다) 특수교원 국외연수(1회, 16명), 행동분석전문가 양성과정 연수(10명)
-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치유 연수
 - 나) 교권보호 프로그램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통합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나)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책무성 확대 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유도
-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
 - 가) 통합학교 관리자(600명)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500명) 집합 및 원격연수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
 - 가) 일상적 수업 속에서 구현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 나) 장애인권교육 및 온·오프라인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 실태조사 실시,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및 평가회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가) '특수학교발전 자체진단' 연계 에듀테크활용 교육과정 지원
 - 나) 특수교육 맞춤형 장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교육과정 지원(3교 예정)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연수 운영(2회)
- 2)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 지원
 - 가) 2024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공유 워크숍(11월, 1회)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학기별 이행점검 실시
- 2)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이행 철저

라. 순회교육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마. 장애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몸활동 프로그램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건강권보장사업 추진(특수학교 2교)
 - 가) (청주혜화학교) 청주의료원 협력병원 연계 소속 간호사 배치
 - 나) (충주성모학교) 학교자체채용 단시간근로 간호사 배치
- 2)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 운영 컨설팅(1회)
- 나)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다)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 연계 학부모 연수 추진
- 라) 시청각 장애학생 실태조사 실시(상반기 1회)
- 3)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충북대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 나)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청주혜화학교
- 4) 행동증재 지원센터 및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강화(6교)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연수
- 2) 치료지원체공기관별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점검 실시

아.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특수학교별 자율적 운영에 기반한 자유학기·학년제 지원
 - 가) 특수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습공동체, 교사연구회 운영 권장
-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가)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운영
 - (1) 청주혜원학교 고3, 전공과 재학생 및 특수학급 고3 재학생
 - (2) 발달장애 학생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 나)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休' 운영
 - (1) 청주맹학교(시각장애) 전공과 재학생
 - (2) 시각장애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컨설팅('24.4.~12.) 실시

4. 전환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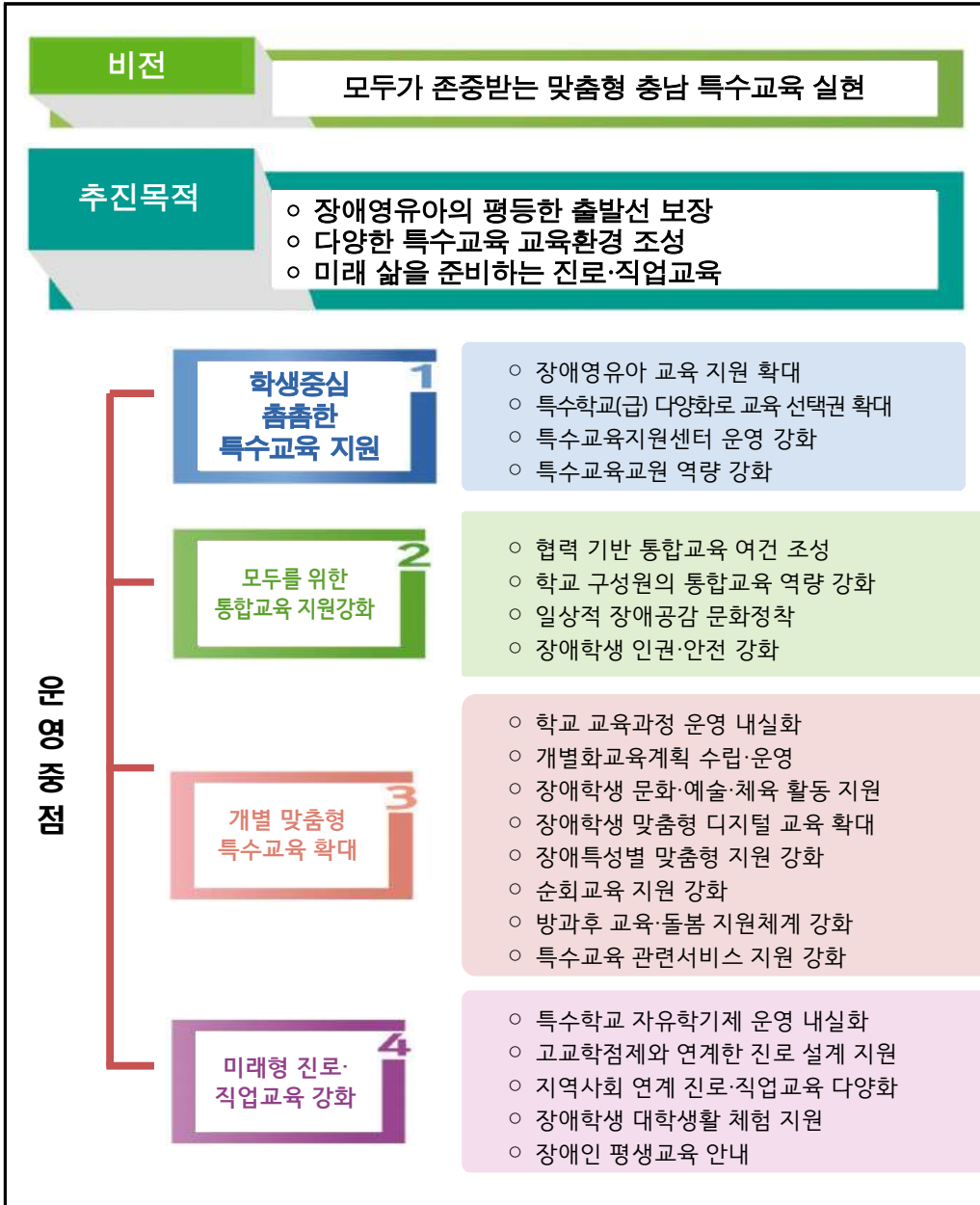
가.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

- 1) 다양한 진로별 맞춤형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 고3, 전공과 대상 모의면접 및 컨설팅 실시
 - 나) 진학 정보제공을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설명회 개최
- 2)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프로그램 지원
 - 나)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전환교육 연수

- 3)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가) 장애학생 취업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 나)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가) 특수학교 영아학급(2교, 7명) 및 영아프로그램 운영(3센터, 5명)
 - 나) 유치원 지원인력(107명)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114명) 배치
 - 다) 특수학교 유아학급(4교, 11학급), 유치원 특수학급(115학급)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기회 확대
 - 가) 특수학급 신·증설(43학급)로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과밀학급 밀집도 완화

※ 특수학교(급) 학급수 (4.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1	11	109	68	60	39	288
일반학교	113		452	173	122	0	860
계	125		561	241	182	39	1,148

※ 특수학교(급) 학생수 (4.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7	37	519	340	306	232	1,441
특수학급	412		2,059	805	644	0	3,920
일반학급	59		248	104	98	0	509
계	515		2,826	1,249	1,048	232	5,870

- 2) 특성화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 가) 천안·아산 지역 특수학교 설립('27. 3.)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근거리 통학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미래사회 적응능력 신장을 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 3) 특수교육지원 체제 강화
 - 가) 특수교육교원 확보 노력(1,420명, 교사배치율 98.2%)

- 나) 과밀특수학급과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34명)
- 다) 특수학급 학생 정원 준수 및 재정 지원(급당 4,000천 원+정원초과 1명당 500천 원+통합학급운영비 특수학급당 500천 원)
- 라)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급당 25,000천 원 내외)

4)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 가) 설립개요: 충청남도 홍북초등학교 이전 부지(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 나)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 정밀안전진단(2022) → 자체투자심사 완료(2023. 5) → 중앙투자심사(2024. 1.) → 개원(2027. 3.)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 충남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충청남도교육청(1센터), 교육지원청(14센터)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 가) (주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업무 표준안 개발 연구’
 - 나) (시기) 2024. 2. ~ 7.
- 3) 현장 맞춤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가)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특성화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시청각장애 거점센터(1), 자유학기제 거점센터(8), 통합교육 거점센터(2)
 - 나)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176명)
 - 다) 치료지원(3,578명) 통학편의 지원(615명), 방과후학교 지원(4,942명), 가족지원(4개 대학, 14센터)
 - 라) 통합교육지원단(14개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14센터) 운영
-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강화
 - (가족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14개), 장애인 부모회(6개), 대학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4개 대학), 부모자조모임(3센터)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 지원
 - 수어통역사(4명), 문자통역기(5명), 보청기·인공와우용 배터리(95명), 보청기·인공와우용부품(43명), 보조공학기기(31명), 대체교과서(9명)
- 5) 통학비 지원(615명), 통학지원인력 배치(55명)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특수교사 1회, 신규 특수교사 1회 이상 운영

- 2) 상반기 역량강화 연수 추진(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3회, 인권지원단 담당자 연수 1회, 현장실습 담당교사 연수 1회)
-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4)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운영(상반기 특수학교 6교 실시)
*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14개 지원청)
- 5) 특수학교(급) 단위학교 자율장학 실시: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6) 특수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 수업니눔 연수 1회, 찾아가는 전문가 수업코칭(3교), 연구회(3), 학습공동체 운영(15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유치원 통합교육 강화: 통합유치원(2원), 통합교육 거점기관(4원, 2센터)
- 2)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12교)
- 3)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14교)
- 4)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학생도움단 운영(3센터, 6개 대학)
- 5)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특수학급당 500천 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충남형 통합교육 실천방안 정책연구 추진
가) (주제) '학교 내 다양성 존중과 포용을 통한 충남형 통합교육 실천 방안'
나) (시기) 2024. 3. ~ 10.
- 2)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연 2회 이상 - 1회 이상 대면교육)
- 2) 센터중심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14센터)
- 3)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구성·운영(1개단, 13명)
- 4) 학교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1회)

라. 장애학생 인권·안전 강화

- 1)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운영
- 2)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15개단)
- 4) 교육지원청별 더봄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운영

- 5) 장애인권교육 강화(교직원·보호자 대상 연1회 이상)
- 6)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15시간 이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 2) (특수학교) 학교 여건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3)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 5)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나. 학교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수립 및 운영 강화
- 3)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활성화
-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현장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지원(85교)
 - 가) 특수학교 문화·예술 중점교육과정 운영(4교)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체육 꿈나무지원(32교)
 - 나)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종합 3위, 금46개, 은43개, 동45개)
 - 다) 장애학생 체육육성종목 중심학교 운영(5교)
- 3) 장애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강화
 - 가) 토요일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4) 특수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라.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특수학교(급)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지원(59교, 6센터)
- 2)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3)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 4) 「장애학생 디지털교육」 지원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9교)
- 2)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교생활 의료적 지원(6교)
- 3) 의료기기 의존 중증장애학생 단국대병원 협력 사업 운영(1교)
- 4) 특수교육대상학생 위기(문제)행동 지원 및 예방활동 강화
- 5)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지원 강화
 - 가)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14센터)
 - 나) 행동중재프로그램 운영 지원(40교, 100명)
- 6)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수어통역사(4명), 문자통역기(5명), 보청기·인공와우용 배터리(95명), 보청기·인공와우용부품(43명)
 - 나)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1센터)
- 7) 건강장애학생 교육 기회 보장(병원학교 2교, 원격수업 1기관)

바.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 가) 특수학교 재택학급 설치(7교, 8학급)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176명)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3) 순회교육 담당교원 연수 강화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4,942명)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10센터)
 -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방과후배움카드) 시스템 운영
- 2) 특수학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배치 운영: 특수학교 9교, 24명
- 3)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가) 특수학교 늘봄행정사 배치(9교)
 - 나) 공립유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배치(114명)
 - 다) 초등 통합돌봄 강사 지원(17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 가) 특수교육실무원(587명), 사회복지무원(95명), 희망일자리(164명), 자원봉사자(51명)
-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1월)
- 3)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3,578명)
- 4)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31명), 대체교과서(9명)
- 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615명)
-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학여행비 지원

4.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9교)
- 2) 내실있는 진로 교육을 위한 진로연계교육 운영(9교)
-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8센터)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 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10교)
- 2) 고교학점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1월)
- 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3명)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 가)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지원(25명)
 - 나)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설계·평가·상담 지원(6명)
- 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0교)
 - 가)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 3)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교육과정 운영(10교)
- 4) 장애학생 취업지원협의체 구성·운영(1개단, 25명)
- 5)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20명), 중증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156명), 장애학생 도제교육형 현장실습(2교)
- 6) 특수학교 학교기업(4교), 학교협동조합(1교),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2교),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10교)

라.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 1)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초·중등교육 지원

- 2)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19기관)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중심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

가.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2학기 공립유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지원
- 2)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진단평가 지원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2학기 특수학급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교(급) 환경개선(20학급)
- 2) 특수교육 기관 설립 추진 건축 설계 공모 및 용역 계약(11월)
 - 가) 충남교육청특수교육원, (가칭)한여울학교(특수학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가) 건강보험공단,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특수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 학교,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나) 주민센터, 시·군·구별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 봉사 등 교육기부 인력 활용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 맞춤 지원 장학(14개 센터)
 -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계획 및 진단·평가 시행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 교사 직무연수 실시: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회, 교육지원청 주관
 - 나)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2) '특수교육 수업 소통의 날' 운영(11월)

- 가) 수업 토크 콘서트, 수업나눔, 수업자료 공유 등
- 3) 하반기 특수교육 지원장학 추진
 - 가) 특수학교(4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자문상담, 통합유치원 지원단 운영
- 2)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연수(관리자 3시간, 통합학급 담임 15시간)
- 3) 통합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장애공감 문화 확산
 - 가) 장애학생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 추진(7월)
 - 나) 행동중재전문가 양성(20명)
 - 다)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위한 심리안정실 구축(5실)
- 4) 과밀 특수학급 통합교육지원 시간제기간제교사 추가 배치(21교)

나.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정착

- 1) 일상적 장애공감 장애인식개선 행사 추진
 - 가) 충청남도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12월)
- 2) 학교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9월)

다. 장애학생 인권·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실시(교사, 학생, 학부모 2,500명, 연 1회)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통합교육지원단·행동중재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7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내실화 콘텐츠 개발·보급(영상콘텐츠 1종)

나. 장애학생 문화 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충남 장애학생 e페스티벌(7월)
- 2) 제12회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10. 18.)
 - 가) 금산일원, 참가 규모 1,700여명, 6종목

다.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2학기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 2) 특수학교 늘봄행정사 배치 및 늘봄교실 운영

4.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 1)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양질의 체험처·체험프로그램 확충
 - 나) 거점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교 진로체험처 매칭, 안전한 체험처 관리
 - 다) 꿈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1)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과별 최소성취수준 개발
- 2)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 현장 안착화 지원
- 3) 고교학점제 운영 공간 조성 지원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사회중심 윈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및 실습처 컨설팅 실시
 - 가)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실습 활성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2) 하반기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추진(아산시장애인복지관, 논산사람꽃 복지관)
- 3)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장애인고용공단 연계)
- 4)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 배치(센터 1명 추가 배치)

라. 장애학생 대학생할 체험 지원

- 1) 대학생할 체험: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2교, 학생 25명 운영)
- 2) 장애학생 대학입학설명회 개최(8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2. 추진 목표

- 가.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강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확대
-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지원(1인 250,000원)
- 2) 장애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전국장애영유아교육워크숍 230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 확충: 89명
- 2) 기능별 특성화 거점센터 확대
 - 가) 진로직업교육: 3개 센터
 - 나) 장애유형별 거점: 3개 센터(시각, 청각, 지체)
 - 다) 행동중재 거점: 1개 센터
 - 라) 문화예술·체육활동 중점: 6개 센터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가) 전북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 용역 연구 실시
 - 나) 환경개선: 미래교육환경구축(1개), 진로교육실정비(3개)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12회
- 라) 분기별 업무 담당 장학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협의회: 2회
- 마) 지역 내 관계기관 전문인력 상시 지원 기반 마련: 행동 중재, 인권지원단 외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및 특성화

1)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단위: 학급 / 증감 포함)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합계
	유	초	중	고		
2023	3	12	4	5	1	25
2024	12	22	12	6	9	61

2) 특수학교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

- 가) 동부권(무주·진안·장수) 특수학교 개교 예정: 2026. 3. 1.
- 나) 군산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 개교 예정: 2027. 3. 1.
- 다) 전주 직업 중점형 특수학교 개교 예정: 2027. 3. 1.
- 라) 서부권(김제·부안)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준비
- 마)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연구: 1명(특수학교 설립 다양화 및 특성화 방안)

3)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여건 개선 확대

- 가) 신·증설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지원: 55개 학급
- 나) 노후 특수학교(급) 환경개선비 지원: 32개 학급

라. 특수교육 교원역량 강화

- 1) 2024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1회
- 2)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강화: 13개

구분	영역	내용
연구회	에듀테크, 교육과정, 행동 중재	· 특수교육 분야 전문 연구 및 현장 적용 방안 연구
교사 연수회	특수교육수업개선	· 장애 영역별 교육, 교과교육, 예술교육, 범 교과교육 (환경교육 등) 수업 개선 연구 활동
	진로 직업	· 에듀테크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연구 · 특수교육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3) 교과별 수업 및 장애 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역량 강화, 개별화교육 연수: 5회
- 나) 행동 중재 연수: 3회
- 다) 청각장애 담당 교원 연수: 1회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지역청 중심 14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통합교육 연수: 1회

나)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교(원)장 연수 3시간: 534개교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교육과정 통합교육(정다운 학교) 운영 모델 개발 지원: 13개교

나)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2개교

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 프로그램 지원: 142개 학급

- 3)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 85개 학급

나) 유치원 중증 장애 유아 배치 시 특수교육지원인력 우선 배치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연 2회 이상

나) 지역별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확대 운영: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2)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가)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든 학교 및 기관 전체 직원, 연 1시간 이상

나)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신고 의무 연수: 모든 학교 및 기관 직원, 연 1시간이상

- 3) 각급 학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교육과정 설명회 등 활용

- 4)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 프로그램: 온통 미술관, 솟폼 챌린지 등(1개월간)

라. 장애 학생 인권 강화

- 1)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 학생 온라인 인권 보호 지원센터 운영

- 2)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 10교

- 3)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24. 5~ 7월. 온라인 및 대면조사

- 4)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15개단, 106회

가) 매월 정기현장 지원 및 특별지원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지원

- 나) 더봄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 다) 인권지원단 위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2회

3. 개별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가)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시: 2월
 - 나)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 교원 연수: 5회
 - 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 9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연중 컨설팅
- 2)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14개 통합교육지원단 연계

다.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지원 강화
- 2) 재택(가정, 시설, 병원 등) 순회교육 학생을 위한 가족 및 의료적 지원 서비스 확대
- 3) 순회교육 대상 학교의 장애이해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컨설팅 지원
-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가정(또는 시설) 방문 및 상담 권장: 연 2회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지원: 10교
 - 나) 문화예술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3개 센터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 문화 체험학습 운영: 연 2회, 학생과 보호자 60명
-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10교
 - 나) 건강 체육활동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3개 센터

마.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미래환경 교실 구축 및 기자재 확충: 13개 센터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AI기반 미래교육 실시: AI로봇 체험, XR모션센서, 코딩로봇체험, VR자전거 등

- 다) 인공지능 로봇 활용 미래교육 시범 운영: 1개교
- 라)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및 여가 활용 확대: 전북장애학생 e-페스티벌(6월)

바.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 및 중증장애 학생 지원: 39명
-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전북대학교병원 협력 학교 내 간호사 배치(1교)
-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운영: 3개 기관(시각, 청각, 지체)
 - 나)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용 교과용 도서 보급: 5명
 - 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학교(10교), 거점센터(3개 기관)
-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병원학교 운영 지원: 전북대병원 한누리 병원학교
 - 나) 원격수업 수강 지원: 스킨포유, 꿈사랑학교, 전북e-학습터
 - 다)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 담당 교사 연수: 2회
 - 라)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및 수업콘텐츠 개발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 5) 행동중재 지원
 - 가) 행동중재지원 전문가 양성 및 연구회 운영: 13명, 1개팀
 - 나)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1개 센터
 - 다)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1개단
 - 라) 특수학교 행동중재 지원: 10개교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3,300명 지원
- 2)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으로 방학 프로그램 운영
- 3)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 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지원: 85학급

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 가)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인력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430명
 - 나) 특수교육 보드미 운영: 150명
 - 다)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96명
 - 라)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사 8명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3명 지원
-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인력 워크숍: 1박2일, 80명

-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 도교육청 주관 연 5일, 430명
- 다) 신규특수교육지도사 사전연수: 신규특수교육지도사, 1일
- 라)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신규 16시간 이상, 기존 연 2회 이상
- 3) 치료지원 내실화: 3,586명
 - 가) 내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기관 및 병의원 이용 월 17만 원 지원
 - 나) 치료기관 모니터링: 10개 특수학교, 15개 도·지역교육청 중심 연 1회 이상
- 4)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
 - 가) 특수학교(급) 승강기 및 기타 편의시설 확충: 31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1,257명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재난 상황별, 장애특성별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 3) 장애학생 안전체험 교육 강화 1개 기관 지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가.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 교육 지원

- 1) 지역 기반 활용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강화
 - 가) 특수학교 진로교육 연계교육: 3개교
 - 나)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3개 센터
 - 다)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지원: 435명(일반학교 191명, 특수학교 244명)
- 2) 특수교육대상학생 특화 진로·직업 교육과정 지원
 - 가) 특수학교(급) 직업 중점·거점 학교: 5개교
 - 나)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9개교
 - 다) 특수교육 교육학습공동체(진로직업 등) 운영: 10개팀
 - 라) 학교기업 선화 체험관 운영 활성화: 1개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진로직업] 장애학생 원스톱 지역협의체 협의체 운영: 연 2회
- 2) 장애학생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4개 특수학급, 4개 센터
-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9명)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

다. 관계부처 연계 취업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대상 취업 지원 확대
 - 가) 관계 부처(교육부-고용부-복지부) 장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활성화
 - 나) 고용노동부 연계 일배움 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일자리 확보
 - 다) 복지 일자리 직무 다양화 및 참여자 확대
- 2) 장애 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 가) 상반기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학교내일자리사업) 운영: 9개교, 43명 (169,483천 원)
 - 나) 특수행정실무사 배치 확대로 고용률 향상 지원: 74명
- 3)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17개교, 4개 센터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1)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 현황 파악 및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기능별 특성화 거점센터 운영: 연중
 - 가) 장애유형별, 행동중재거점, 문화예술체육활동 거점센터 운영: 연중
 -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 직무연수 운영 및 보고회: 8월 ~ 11월
 - 다) 업무 담당자 협의회 및 거점센터 운영 사례 나눔회: 7월 ~ 11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가) 소통협력 역량강화 워크숍: 1회(7월)
 - 나) 업무 담당자별 업무능력 향상 연수: 3회(9월)
 - 다) 업무 담당자별 협의회 및 사례 나눔회: 3회(6월, 9월, 11월)
-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다. 특수학교(급) 설치 확대 및 여건 개선

- 1)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 현황 파악 및 컨설팅: 연중
- 2) 서부권(김제·부안) 특수학교 설립 추진
- 3)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여건 개선 지원 및 컨설팅, 결과 보고: 11~12월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례 나눔을 통한 일반화 확대: 11월
- 2) 특수교육 관련 연구회 중간보고회: 1회(8월)
- 3) 에듀테크 연구회 연계 교사 연수를 통한 특수교사 연수: 2회(8월)
- 4)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연구 중간 및 최종보고회: 8월~12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연중
- 2) 초, 중등학생, 교원의 장애식수준 진단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나. 일반 학교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연중
- 2) 장애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정다운학교 운영 컨설팅: 연중
- 3)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컨설팅 지원: 4회(4월, 5월, 6월, 10월)
- 4)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확대(1개원)
- 5)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운영 보고회(12월)
- 6)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관리자 연수(원격)

다.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정착

- 1)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을 통한 장애공감 문화 조성
- 2)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3) 학부모 대상 범국민 장애이해교육 확대

라. 장애 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 2)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 3) 전북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 및 사례 나눔 11~12월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강화: 연 2회 점검

다.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2024 전북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및 전국 대회 참석: 50명, 9월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결과보고 및 사례 나눔회: 11월~12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문화체험학습 운영: 하반기, 30명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 결과보고 및 사례 나눔: 11월
-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 결과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11~12월
- 3) 장애유형별 거점기관 운영 평가회 및 향후 계획 협의: 11월
- 4) 개별 학생 대상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보고회: 11월

바.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 운영 지원: 하반기 6~12월

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 및 자원봉사자 지원: 연 2회
- 2) 특수학교(급)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 편의 확대

아. 장애학생 안전 강화: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확대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 교육 지원

- 1)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참여: 30명
- 2)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20명 이상, 9~12월
- 3) 특수교육 진로직업 교사 연수회 운영 평가: 11월
- 4) 장애학생 진로탐색 지원 사업 운영 평가: 12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현장 모니터링: 10~11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평가: 12월

다. 관계 부처 연계 취업 지원 확대

- 1) 특수행정실무사 기관별 수요조사 및 배정: 10~11월
- 2) 하반기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학교내일자리사업) 운영: 43명
- 3) 직업 관계기관과의 사업(일자리 사업 등) 평가회: 12월
- 4)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분야별 사업 평가회: 12월

전라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 가. 특수교육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
- 나.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영역

-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라.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가) 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무상교육 홍보
 - 나) 장애자녀 양육정보 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교육 자료 보급
 -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 가) 7거점센터를 통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선별검사비 지원
 - 나) 유치원 특수학급 편성 확대: 전년대비 4학급 증가
 - 특수학급 68학급 → 72학급, 특수학교 7학급 유지

- 다)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중점유치원 2원 운영
-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환 지원 강화
 - 가)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강화
 - 나) '처음학교로' 이후 신청학생 정원의 입학가능 안내
 - 다)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NEIS 사용 의무화 안내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적령 입학 상담 강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매뉴얼 개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센터장	장학관	장학사	순회교사	운영강사	치료사	주무관	계
23	1	23	75	20	26	2	170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 가)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위원회, 인권·통합교육지원단, 유관기관 협의체 등 구성·운영
 - 나) 장애유형별 거점센터(3), 진로·직업 거점센터(7), 문화예술 거점센터(1)
 - 다) 지자체 등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라) 소규모지역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인력 맞춤형 연수 강화
 - 가) 센터장, 교육전문직 워크숍 실시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 적기 실시

라.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학급 편성 기준 개선
- 2) 특수학급 현황/2023년 대비 40학급 증가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7	81	51	58	34	231
특수학급	72	412	175	98	-	757

- 3)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 4)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공약)

- 5)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급) 운영 확대
 - 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예술중점 특수학급(1교)
 - 나) 체육중점 특수학교(3교), 문화예술중점 특수학교(1교)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가) 3학급 이상 설치 일반학교에 보직교사 배치 권장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
 - 가)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및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수 실시
 - 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특수교육교육과정 개발
 - 다) 교실수업 개선 및 통합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통합교육교사연구회 운영
 - 라)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
 - 마)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확대
- 3) 특수교육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 관계자 마음돌봄 연수 실시
 -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 가족, 특수학교 교직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장애유형별 신속한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22단) 구성·운영
 - 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 2)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통합교육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통합교육 중점학교 운영(2원 3교)
 - 나)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통합교육) 운영(1교)
 - 나) 통합교육 교사연구회(5팀)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 연수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교(원)장 특수(통합)교육 관련 집합·원격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30시간 이수 권장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인센티브 제공 권장: 학생수, 업무경감, 성과금반영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전문가 활용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장애예술인(단체) 또는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공연 실시
 -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단-장애이해교실’ 실시
-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각 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
- 4)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통합학교 적용
- 5) 공모전, 백일장, 콘텐츠 활용 등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가)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연 3차시 이상 의무 실시
 -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라) 장애인권교육 강화 및 성교육 내실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가) 특수학교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1교)
 - 나) AI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1팀)
 - 다)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보급
- 2)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 3)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프로그램 활용 등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학교의 특성, 교육공동체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 가) 전라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내
 - 나)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수립·반영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안내
 - 다) 특수교육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
 - 라)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현장 지원: 교원연수, 자료 보급
 - 마)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국 담당자 협의회(1회)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절차 준수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역할 강화
 - 나)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 행동중재 및 의료지원 사항 포함 안내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안내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센터 컨설팅 실시
 - 나) 학생특성을 고려한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 다) 센터발령 순회교사 연수 시 역할 및 복무 안내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가) 문화예술 중점학교(1교) 운영, 예술동아리, 통합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나)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확대 및 교류활동 지원
-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체육교육 중점학교(3교) 및 체육중점 특수학급(17학급) 운영
 - 나) 특수학급 통합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3)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4) 제6회 전라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 5)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가) 장특법 일부개정에 따른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전문인력 배치 확대 노력
 -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전담팀 적극 활용
 - 다) 개별화교육계획에 의료적 지원사항 포함하여 작성
- 3) 시각·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거점지원센터(3청)를 통한 시각·청각장애학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나) 거점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다)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가) 건강장애학생 등 교육 지원
 - 나)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2교 3학년)
 -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한 학적 및 성적처리 안내
- 5) 행동중재 지원
 - 가) 전문가(자격증) 양성과정 국립공주대학교 위탁 연수(9명)
 - 나) 1~3기 행동중재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행동중재 전학공 운영
 - 다) 대학, 병원, 전문가 연계 집중적인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라)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 중심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 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
 - 가) 공립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지원
 - 나) 교외방과후 중 치료지원 영역과 중복지원 신청 안내 및 예산 확대
 - 다) 영유아 방과후과정 연간운영계획 수립 후 특수학교(급) 교육계획 반영
- 2) 특수교육 초등보육교실 운영
 - 가) 특수학교(급) 초등보육교실 참여 희망자 2명 이상 시 편성·운영
 - 나) 특수학교 무기계약제 운영, 특수학급 초단시간 계약자 운영
 - 다) 운영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관리 계획 포함
- 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 가)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 나) 운영 결과를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 다)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관리 계획 수립
- 라) 프로그램 운영 공개,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실시 및 홈페이지 공개
- 마) 교외방과후 활동비 지원액 확대 편성
 - 최대 월 20만 원 이내 수강료 지원
 - 꿈-그린카드(전자카드)를 통한 매월 결제
 - 수강여부 확인 등 학교 관리 철저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

특수교육실무사	동학차량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계
300	27	218	545

- 가) 특수학교 내 특수교육실무사 배치기준 마련: 2학급당 1명 배치
- 2) 특수교육실무사 근무 개선
 - 가) 근무일수: 연간 최소 300일(주휴포함)
 - 나) 직무관련 집합연수일,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일 확대
 - 다) 병가 등 특수교육실무사 대체 인건비 지원
- 3) 사회복무요원 신청, 배치, 직무교육, 복무 관리 등 운영 철저
- 4) 치료지원 내실화
 - 가) 대상자 선정 및 치료지원 영역·방법 등 운영 철저
 - 나) 복지관, 병원, 사설치료실 등 유관기관 연계구축 지원 확대
 - 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치료지원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개선
 - 라) 치료지원의 내용·방법 등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
 - 마) 고품질 치료지원을 위한 사설 치료실 연 1회 이상 점검
- 5)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 나)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 평가자료 활용
 - 다)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평가방법 등 명시
- 6)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 가) 통학버스 미이용 학생 중 2km 이상 통학학생 대상 통학비 지원
 - 나) 통학비 지원방법 개선(실비 지원) 및 점검 강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7)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 장애학생 가족의 개별적 요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부모상담,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지원 강화
- 나) 가족캠프, 문화·여가 등 휴식·심리·정서 지원 강화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 가) 재난 상황별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나)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나) 학교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다)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라)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 마) 장애학생 일과 중 학교 이탈 예방 노력
 - 바) 현장체험학습 시 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체험 기회 확대
 - 가)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9교)
 - 나)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집중학년·학기제, 직업교육 중점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다)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 협의체 운영 내실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 가)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9교 34학급 운영
 - 중증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입학전형 보완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원인력 확충, 미진학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2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운영
 - 다)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운영

- 라)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 운영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9교) 운영 및 내실화
 - 특수교사 직업실기 자격취득 과정 연수 실시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학부모 연수·진로 설명회 운영
 - 도교육청 장애학생 윈스톱 지원 협의체 운영(3개 43명)
- 3)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가)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운영 및 지침 개정 안내
 - 나) 현장실습 우수산업체 인증을 통한 양질의 취업기회 제공
 - 다) 학교 내 일자리(80명) 및 장애청년 드림워크(52명) 운영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및 홍보·상담 강화
- 나. 미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전남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 다. 서부권 과밀해소와 전문적 진로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 라. 장애학생 체력강화와 체육전문인 육성을 위한 체육중점 특수학교 운영 확대
-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안착을 위한 연수 확대
 - 2) 특수교육 관계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돌봄연수 지속 지원
- 바.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대비한 정책 수립 철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통합교육교사연구회 운영 내실화
- 나.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역량 강화
-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라. 장애학생 인권지원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내 전문가 그룹 구성 확대
 - 1)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지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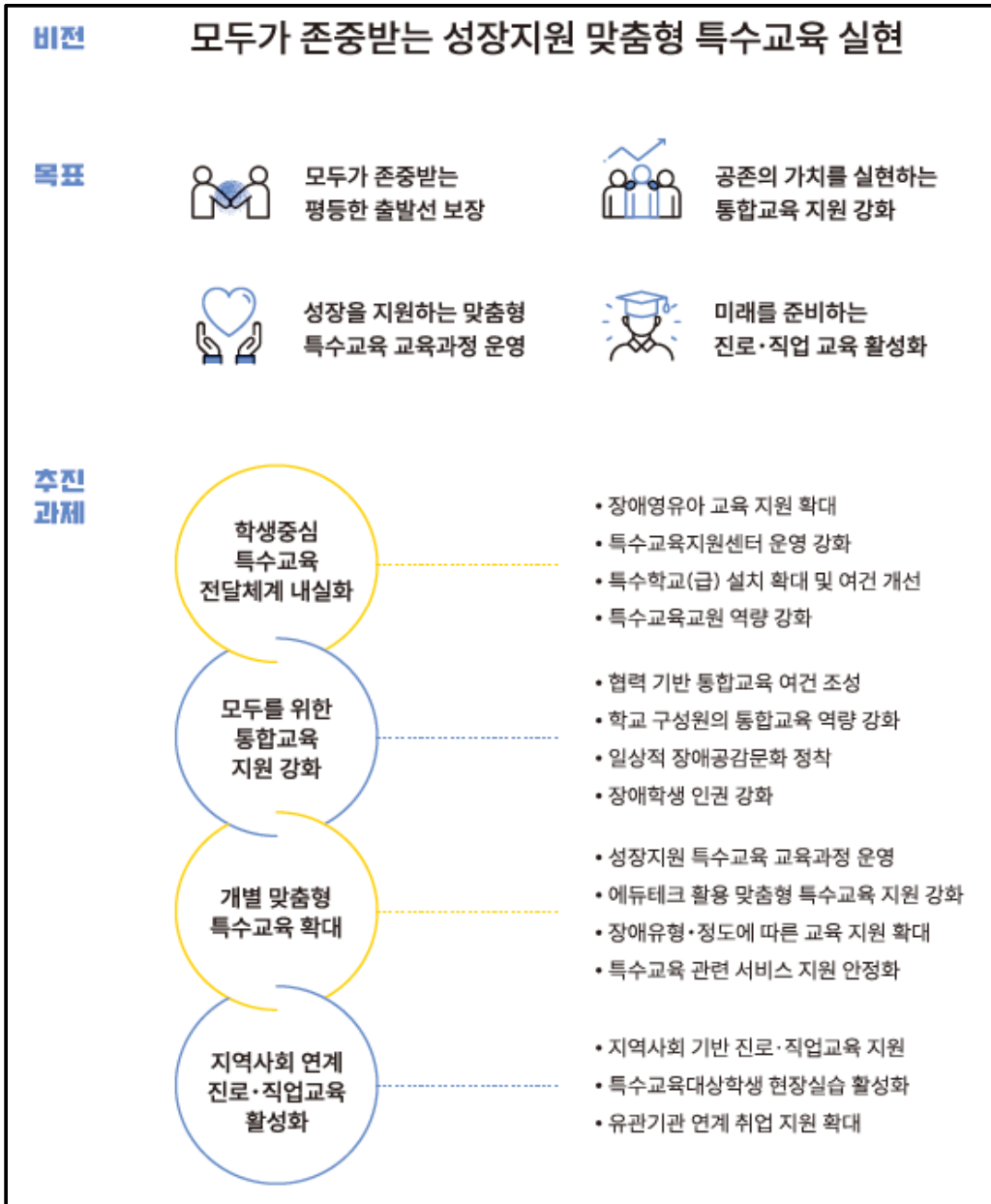
- 가.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나. AIDT 활용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사 연수 확대
- 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운영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 라. 중도중복장애 학생 의료적 지원 내실화를 지원 방안 마련
- 마.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및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연차적 확대 운영
- 바. 특수교육실무사 정원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사. 치료기관이 적은 농어촌 치료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아. 통학비 지원 방법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정책 마련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가. 중증장애학생 전공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및 입학전형 보완
- 나. 중증장애학생의 다양한 진로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영
- 다. 장애학생 학부모·교사의 진로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라.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및 양질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우수산업체 인증 확대
- 마. 장애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진로설계·취업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 협의체’ 운영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가) 유관기관 연계로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안내 체계 마련, 무상교육 홍보 및 정보 지원
 - 나)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홍보 및 정보 지원
- 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보육기관 간 차별없는 지원 제공
 - 나)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영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ISFP) 수립·실행 지원
 - 다) 특수교육대상영아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통한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유치원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 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 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 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 라)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강화
 -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마)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확대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 가) 권역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안동·구미·경산) 운영 내실화
 -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항, 구미, 경산, 안동(2024 조례 개정)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권역별 기능적 역할 제고를 위해 일부 시·군 권역 이동(청송→동부, 경주→남부, 의성→북부)
 - 나) 시청각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시각장애(포항), 청각장애(구미)
 - 다) 개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경북통합예약시스템' 운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전담 인력 확충
 - ('22) 23개 센터 내 교사 94명→('23) 132명→('24) 136명으로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비 확충 및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등 배치 확대
 - ('22)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12명 → ('24) 13명으로 배치 확대
 - 다) 센터 기능 구조화 및 역할 전문화를 위한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 라)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 중심의 연수 강화 및 근무 교원 처우개선
 - 업무 관련 필수영역(진단평가 검사도구, 보조공학기기, 행동중재, 교육과정, 장애영유아 등) 연수 이수, 외부 전문가 연계교육 지원 등
 - 전문직 전형 가산점 제공(2021~), 학습휴가(5일) 신설, 연수 지원 등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업무 전문성 강화
- 경북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연수 실시('24.)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 특성화 및 다양화

- 가)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해소하고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 배치현황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특수학교 설립 수요 분석
 -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 경북 서부권역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28) 1교
 - 경북 동부권역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모색
- 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특수학급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사(시간강사) 및 지원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통합유치원 확대
- 다)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상향
 - ('22) 급당 300만 원 → ('24) 학급당 400만 원(정원초과 1인당 50만 원)
- 라) 교실 환경 여건 개선 확대
 - 특수학급 신·증설비 상향
 - ('22) 급당 3,000만 원 → ('23) 학급당 4,000만 원 → ('24) 학급당 5,000만 원

- 특수학교(급) 공간 혁신 및 노후 학급 환경 개선
 - ('23) 학급당 4,000만 원→('24) 학급당 5,000만 원
- 마) 특수학급 수업 지원 교사제 실시 확대
 - ('22) 4명 → ('24) 13명
- 바) 특수학교(급) 수업 지원 시간강사제 실시
 - 과밀학급 해소 및 중증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
 - 교당 1명, 30교 지원
- 사) 특수교사 단계적 충원 추진
 -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현황, 교육 현장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에 특수교사 증원 배치 요청 및 배치 계획 수립
- 사)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중도중복장애학급' 시범 운영: 김천동부초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
 - 가) 기존 특수교사 주도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 통합교육 책무성 확대·강화 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 나)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 교육활동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 2)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가) 학교장애인식지수 영역별 연계 프로그램 및 활용 매뉴얼 제작·보급하고, 초·중·고 통합학급에 적용('24~)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담임(교과)교사 연수 강화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 편성하여 매년 관계 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의무 이수
 -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의무화
-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적 역할 모형 발굴 위한 '정다운학교' 확대 운영
 - 정다운학교(15교)
 - 교육부 운영: 1교, 자체운영: 14교(유치원 5원, 초등 3교, 중등 2교, 고등 4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미래형 장애이해교육 강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범교과 학습 인권교육과 연계한 계기교육 및 장애이해 수업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학교(급)별 장애이해교육 확대 운영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및 장애예술인(단체) 또는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 지원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 구미, 경산, 안동)

다)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유치원)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경북교육청 '맞쿨멋쿨' 수어 콘텐츠 배포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 특수학교(급) 현장 지원 강화

-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분야 전문성 갖춘 핵심교원 양성
 - ※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과정 지원
-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프로그램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 (정기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실시
- (특별현장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실시
-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 조사 실시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다) 통합교육 의식 제고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동아리 운영 지원

- 경북 어울림 인권 동아리 27팀 지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AI형 에듀테크 및 실감형 콘텐츠 보급(AI 학습 보조 로봇 등)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 및 체험버스 운영 확대
 - 안동영명학교, 경북영광학교(2교) 운영
 - 장애 특성 고려한 에듀테크 기술 활용 수업 지원 기반 조성: 경주('23)
- AI 활용 및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교원 연수 기회 확대
 - 사례: AI 스피커 및 플랫폼, 수어 활용 청각장애 학생 AI교육 등
- 의사소통,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활용 확대
-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을 통해 드론·로봇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력
 - 지역 SW교육기관 방문,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SW대회 개최 등

2) 특수교육 플랫폼 운영

-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안내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원격 교육 플랫폼 운영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인 1문화예술교육 및 장애·비장애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지원, 예술교육거점 특수학교(4교), 어울림 문화·예술·체육 동아리(84팀), 꿈빛 재능기움(76명),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7월 중
- 전문가 멘토링 및 체육 분야 진로 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체육 인재 발굴
 - 특수학교 운동부 지원, 특수학교 1교 1운동 종목 지원, 경북 장애학생 체육 대회 개최(10월 초 예정)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위해 세부 시행 지침 보급

- 나) 학교급·배치유형·지역별 특수성 고려한 순회교육 지원체계 구축
- 다) 특수교육기관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교원 대상 활용 연수 강화

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추가된('22.6.) 중도중복장애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재택순회학생 급식비 및 사회적응활동비 지원(6~7월 예정)
- 생활기능 중심 교육 등 교육과정 전반 활용 가능한 지도용 가이드북 보급 및 안내

- 나) 시각·청각·시청각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지원체계 마련

- 시청각장애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교(급) 지원 확대

- 다)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인공와우 수술 및 기기 교체 비용 지원

- 라) 시청각장애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평가 도구 및 교수·학습 방법 등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마) 특수학교(급) 교사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와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 집중 지원 확대

* 2022, 2023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270시간, 39명)」 이수 완료

- 행동특성에 따른 개별 학생행동중재계획 실행을 위해 학교 내 심리안정실 (행동지원실 등), 비상벨 설치

※ 심리안정실 지원: ('24) 152 → ('25) 200 → ('26) 250 → ('27) 300

※ 비상벨 설치 지원: 도내 8개 특수학교 설치 완료('23)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 위한 여건 개선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생활지도원 연수(8월 중 예정)

- 다) 특수교육실무사 처우 개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야간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 학생과 함께 동숙 시 동숙비 지급(1박, 40,000원 → 50,000원으로 상향)

- 방학 중 근무일 신설: 학기 준비일 4일(학년도 기준)

- 다) 장애학생 가족의 교육 회복과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지원 추진
 - 재활승마 가족캠프: 특수학교(급) 재학생 30가족(8월 중 운영)

3)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체계 강화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수요 반영 지원 확대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여건, 장애유형 및 정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한 학교수준 교육과정 재구성
- 2)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 진로 설계 지원 강화
- 3)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여건에 따른 교사연구회, 교수·학습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년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 4)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가)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다양화 및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초·중·고 진로교육 연계강화, 지역사회 연계 현장 체험 중심 진로·직업 교육 기회 확대
 - 나) 특수학교 전공과 중심 진로·직업 프로그램 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교육기회 다양화
 - 다)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1,2학기)
 - 고등학교, 전공과 대상 실습형 직무 체험 제공
 - 마)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 강화 및 학교급별 진로·직업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바)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및 전공과 학생 대상 2개 대학 체험 추진
 - 사)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활성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2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인동고등학교
 - 운영비 증액(2023년 교당 3,000만 원→2024년 교당 4,000만 원)

- 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고등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 249명 지원
- 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통합 위한 자립생활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운영
- 차) 고등학교과정 장애학생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39교(급)
-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기간: 6~12월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과정 특수학교(급) 학생
 - 장소: 경산 일원 현장실습 사업체
 - 위탁기관 및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
 - 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범부처(교육부-고용부-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고도화
-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가)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지원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컨설팅, 담당교원 연수,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보급
 - 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장애학생의 요구와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 연계 강화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가)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안내 체계 및 지원 강화
 - 나) 장애자녀 부모지원 정보제공 확대
- 2)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 가) 교육-보육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및 입학 적응 지원 확대

나.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구조화 및 운영 내실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체계 정비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역량 강화
 - 라)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 특수학교 특성화 및 다양화
 - 가)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나) 특성화·전문화된 특수학교 운영 모델 확산
 - 다) 기존 특수학교 재구조화 추진
 - 라) 특수학교-지역사회 간 교류 확대
- 2)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가)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 나)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 3)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나) 특수교육 교원 확충 및 개선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
 - 가)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정비
 - 나) 통합학급 협력교수를 위한 여건 개선
- 2)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가) 일반학교 대상 학교 장애인식지수 적용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 가) 교원 자격·직무연수 시 통합교육 교과목 확대 편성
 - 나) 지역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강화
 - 다)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 확산
-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정다운학교 및 경북형 어울림학교 지원 강화
 - 나)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다양한 장애이해교육 및 학생 동아리 지원
 - 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강화
 -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인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 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 가) AI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환경 조성
 - 나) 에듀테크 활용 장애학생 맞춤 인프라 구축 및 활용
 - 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 연수 지원

- 2) 특수교육 플랫폼 운영
 - 가) 장애학생 맞춤형 플랫폼 열린배움터 운영 안내
 - 나) 건강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안내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확대
 - 다) 문화예술 분야 체험형 교원연수 지원 확대
-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지침 안내
 - 나) 개별화교육계획 현장 지원
 - 다) 학교급·배치유형·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순회교육 지원
 - 라)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실 운영 확대
-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강화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다) 경북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나) 시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강화
 - 다)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여건 개선
 - 라) 특수학교(급) 교원 행동중재 역량 강화
 - 마) 장애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강화
-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가) 치료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여건 개선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다) 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 체제 구축
- 3)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가) 장애학생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나) 교내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가)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직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2) 관계부처(기관)간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시스템 활용 확대
-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가) 특수학교—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운영

경상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목표

-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3. 중점 추진과제

-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조기 진단 지원 확대)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특수학급 6학급 신·증설)
 -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및 담당자 유의사항 안내 실시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 확대(순회교사 6명 증원)

- 4)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장애영아 거점센터, 전환교육지원실, 시청각장애 거점센터)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2024년 39학급 신·증설
- 2)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신·증설 72학급, 노후 27학급)
- 3) 신설 유치원 및 학교 설립 시 특수학급 의무 설치 강화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 가) 에듀테크,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 생태환경교육, 장애영유아, 행동중재, 진단평가, 심리정서 회복 등 연수 확대 운영
 - 다)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11개 특수학교(급) 및 2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운영(19개)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별도의 도단위 유치원 통합교육 자문단 운영(1개)
 - 다)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운영(24년 149명)
 - 교육과정적 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
 - 라) 통합교육 선도 유치원 운영(1개원)
 - 장애유형별 특수-일반교사 협력을 통한 통합교육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 유치원 일상적 장애공감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 공유·확산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원장) 연수 운영(4회, 1,240명)
 -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감(원감) 연수 운영(1회, 300명)
 - 다) 통합교육 행정지원(행정실장) 연수 운영(1회, 300명)
 - 라)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1회, 54명)

- 마)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2회, 100명)
- 바)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격 연수 및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연수 위탁 운영(연중)
-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및 통합교육 지원
 -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1교)
 - 나) 2024년 유치원 통합교육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1종)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인권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
 - 라)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장애공감문화 확산 콘텐츠 활용 및 메타버스 '평평한 세계'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가)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 나)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 다)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인권지원단 운영(21개)
 - 나)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현장지원(특수학교는 연 2회)
 - 다)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실시
 - 라)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더봄학생 선정 및 지원
-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나) 특수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3시간 이상)
 - 다)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 및 강화
 - 라) 학교 단위 장애 공감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 마)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16개 동아리)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 가)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2교) 및 체험관(경남특수교육원) 운영
 - 나) 권역별 특수학교 미래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4개 학교)
 - 다) 특수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열린배움터' 활용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아이톡톡 활용 지원
 - 교수학습자료, 수업나눔,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학교 특성 및 교육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학교 자율적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지원
 - 나) 고등학교 과정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 반영
 - 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가) 교과용도서 및 평가 지원 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2교)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을 통한 컨설팅 실시 및 장학자료 개발·보급
- 4)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 학생의 진로·흥미에 맞춰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현장 지원단 구성·운영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1교)
 - 교사용 자료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학년 초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
 - 전출입 업무 처리 시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처리 기간 준수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연수 지원
 - 온라인 전달연수 실시: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전달연수
 -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사, 관리자, 학부모,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자 등에 대해 연수 이수 독려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
 - 가)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실시
 -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순회교육 지원 강화
 - 다)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가)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순회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지원
 - 나)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등에 대한 연수 강화
 - 다) 순회교육 담당 교사에게 순회교육 활동비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공연부문 17교 203명, 전시부문 8교, 64명)
 -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7교실 8명)
 -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미래 체육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2024. 경상남도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 체력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활용 지원체계 개선

다) 특수교사 대상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진단·평가 지원 강화,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적용)
- 2)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료적 지원 강화를 지역 의료기관 협약 추진
- 4)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도서 및 대체자료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5)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교복귀프로그램 지원
 - 나)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4월)
 - 다) 병원학급 운영(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및 경상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 라) 경남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 6) 행동중재 지원
 - 가)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40교, 40명)
 -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 다)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지원(1교)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1인당 월 12만 원 이내)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지원(469학급)
- 3) 토요프로그램(민간위탁) 및 방학 중 희망나눔학교(지방보조금) 운영 지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원 배치(648명)
- 2) 사회복지무원 배치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나) 사회복지무원 직무교육 실시 강화
- 3) 치료지원 내실화
 - 가) 병의원 치료(물리, 직업, 청능훈련) 및 발달재활치료(언어치료 등)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비 지원(월 15만 원 이내)
 - 나)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119명 배치)

- 4)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 및 대안평가 지원
 - 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내용 삽입
 - 나)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 방안 지원
- 5)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가) 보조공학기기 통합지원시스템 운영(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나) 전시 체험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실 운영(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
- 6)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편의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숙사 숙식비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2교)
 -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11교 48대)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학교별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2)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안전생활체험관)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기회 확대
 - 나)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진로설계관 운영
 -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1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교) 운영
 - 라) 예술·체육분야 중점 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지원(2교)
 - 마) 장애학생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1교)
- 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0교 10명)
- 3)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 서비스지원 협의체 운영
 - 나) 전환교육지원실 운영(7센터) 및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12명)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특수교육 정보전달 및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강화
- 2)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수시 상담 강화 및 무상교육 지원 안내
- 3) 장애영유아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가) 거대과밀 특수학교 해소 및 다양화·특성화·전문화 특수학교 신설 추진
(진해 지역 및 김해 지역 특수학교 개교 예정)
 - 나) 지역별 특수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 장애영유아, 행동중재, 진단평가 등 연수 운영
- 2)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현장 지원 활성화
 - 나) 통합교육 선도유치원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보급
-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정다운학교 대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성과공유회 개최(11월)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 확대
 - 가)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 실시
 - 나)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4)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재구성 방안 모색
- 2)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안내 강화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학급 운영
- 2)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연수 강화
- 3) 특수학급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결보강제 운영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경남 장애학생 문화예술제 개최(10월)
-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컨설팅 실시
- 3) 건강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 4)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연수 운영(1회, 25명)
- 5) 전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성과공유회 운영(11월)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 2) 특수학교 중심의 안정적인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실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 및 원격연수(2회)
- 2) 치료지원 내실화 및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관리 철저
- 3) 학교 단위 정규평가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해 대안적 평가 관리 방안 마련
- 4)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편의 지원

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1) 학교별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시 및 점검 일반화
- 2) 장애학생 등·하교 교출 및 이탈 사고 예방 강화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2) 산업체, 장애 맞춤 훈련기관, 학교 연계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 강화
- 3) 2024.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 및 운영(10월)
- 4) 대학진학 설명회 운영(6개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으로 미래를 여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목표

- 가.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나. 통합교육 내실화로 장애공감문화 정착
- 다. 수요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격차 완화

3. 중점 추진 과제

- 가.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전달체제 내실화
-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4. 제주특수교육의 강조점

- 가.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른다.
- 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른다.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생각하는 힘을 길러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에 충실을 기한다.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건강한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 마.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활동으로 직무능력을 계발하여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한다.
- 바.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환경 변화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사. 화해와 상생, 포용의 4.3평화·인권·통일교육 및 제주이해교육 강화를 통하여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II 2024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2기관
-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 62명 선정·배치 및 55명 치료지원
- 3)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27명(신청자 전원)
- 4) 만3세~5세 장애유아(비특수교육대상유아) 치료비(월16만 원) 지원: 395명
- 5) 유보통합 추진단 T/F팀 구성 및 협의 참여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가)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및 (가칭)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 나)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청각거점지원센터 2개
 - 다)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내 원격화상교육실 구축
 - 라)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내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 지원실 구축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확충
 - 가) 특수학교 교사동 증축
 - (1)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 추진(설계용역 계약)
 - (2)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추진(설계용역 계약)
- 2) 특수학교 전공과 다양화
 - 가) 제주영송학교 전공과 생활자립반 신설 1학급
-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가) 특수학급 신설
 - (1) 유치원: 2학급(신광초병설유치원, 제주남초병설유치원)
 - (2) 초등학교: 1학급(우도초등학교)

(3) 중학교: 2학급(효돈중학교, 서귀포대신중학교)

(4) 고등학교: 1학급(세화고등학교)

나) 특수학급 증설

(1) 초등학교: 6학급(아라초등학교 2학급, 영평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2) 중학교: 2학급(안덕중학교, 서귀포중학교)

4) 특수학교 학급 증설

가) 특수학교: 7학급(제주영송학교 2학급, 서귀포온성학교 5학급)

5) 특수학교(급) 신·증설 현황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합계		
	유			초			중			고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계			
2023	3	0	3	8	1	7	3	0	3	2	0	2	3	1	2	19	2	17
2024	2	0	2	7	1	6	4	0	4	1	0	1	7	0	7	21	1	20

6)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실시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중기학생배치계획 및 과밀학급 현황,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부에 특수교사 증원 배치 요청

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배치: 각급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특수학급 신·증설 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에 54명 배치(유 9, 초 18, 중 5, 고 6, 특 16)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20개 연구회(270명)

나)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10명

다) 특수교육담당교원 대상 행동중재 연수: 260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1)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2)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3)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 대면 연수 1회 개최
-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도교육청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1개교(초)
 - 나)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5개교(유 1, 초 2, 중 2)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장애학생 및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확대 지원: 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신청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추진
-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제주장애학생의 날(매년 6월 5일) 및 장애이해교육주간 운영
 - 나)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도교육청 민간 위탁사업기관 2기관(제주장애인야간학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 추진
 - 나) 공공형 최초 장애인오케스트라 “햇빛” 창단 및 장애인식개선 공연
-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가) 세계 자폐인의 날(4월 2일) 기념 블루라이트 행사 캠페인 참여 및 홍보: 3기관(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나) 장애이해교육 라디오 방송 캠페인 홍보: 1회
 - 다) 미술공모전 및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 (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우수작품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 계획 수립)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가)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1회
 - 나) 도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3명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 나)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특수학교는 연2회 이상)
- 다) 특별지원: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수시 지원
-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3회 대면 연수 실시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 나)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가)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특수학교 1개교 운영
- 2) 장애학생 미래교육환경 역량강화 지원
 - 가) 장애학생 미래교육환경 조성 지원: 특수학교 3개교
 - 나) 중학교 1학년 입학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 1노트북 지원(희망자에 한함)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수학교 3개교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제주이해교육 반영 '2024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적용 지원: 특수학교 3개교
 - 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원 연수 운영: 1회
 - 라) 2024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운영 안내서 내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 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
 - 가)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선진학교 시찰 및 교육과정 운영 사례 공유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점검: 1학기 1회
-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1학기 1회 이상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가) 특수학교 재택 순회교육: 18명(초 9, 중 5, 고 4)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130명(유 42교, 초 29교, 중 5교, 고 2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특수학교 3개교, 민간위탁사업 운영 1기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특수학교 1개교, 장애인체육회와 연계 지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2센터

나)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2)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3개단

나) 특수학교(급) 교사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10명

3) 중도중복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수학교 2개교

사. 방과후교육·늘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수요조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120교)

2)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화

가) 특수학교: 특수학교별 계절학교 운영(3개교)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절학교 운영(2센터)

다)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계절학교 운영[2기관(제주시, 서귀포시)]

3) 초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늘봄학교 운영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평가 연 1회 실시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교육(지원)청별 집합 연수 2일 실시

3) 사회복지무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배치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16시간 이상)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 4) 치료지원 내실화 운영
 - 가)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주희망나눔카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나)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점검 실시(상반기 1회)
- 5)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21회)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연 2회 이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장애학생 윈스톱 취업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 나)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3명(특수학교별 1명)
- 2)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학교내 장애학생(전공과) 일자리사업 운영: 특수학교 3개교
 -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3) 제주어린이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바리스타 직업체험교실 운영
- 4) 제주발달장애훈련센터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
- 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직업센터(위탁기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도내 특수학급 및 전공과 학생 취업지원

III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2기관: 주기적인 홍보 실시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 추가 선정 배치를 통한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3)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시 추가 지원
- 4) 만3세~5세 장애유아(비특수교육대상유아) 치료 지원 신청시 추가 지원
- 5) 유보통합 추진단 T/F팀 협의 참여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가)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를 통한 전문성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 다)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청각거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1) 특수학교(급) 확충
 - 가) 특수학교 교사동 증축
 - (1)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사전기획 결과에 따른 설계용역 추진
 - (2)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사전기획 결과에 따른 설계용역 추진
- 2) 특수학교 다양화
 - 가) (가칭)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T/F팀 구성 운영
-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가) 특수학급 신설: 증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추진
 - 나) 특수학급 증설: 증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설 추진
- 4) 특수학교 학급 증설: 증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설 추진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 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54명 배치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강화
 - 나)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여름방학 중 연수신청자 10명에 대해 연수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통합교육지원단(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 학교에서 통합교육 컨설팅 요청시 수시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을 통한 상시 지원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가) 교육부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1개교(초) 통합교육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나)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2개교(초 1, 중 1) 통합교육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가) 장애학생 및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확대 지원: 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신청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지속 추진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가) '햇빛'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장애공감문화 확산

- 나) 공공형 최초 장애인오케스트라 "햇빛"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 실시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가) 미술공모전 및 백일장 등에 교육감 후원명칭 승인 요청시 승인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우수작품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가)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나) 도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통한 상담 및 인권지원 내실화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운영 내실화
 - 나)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지원
 - 다) 특별지원: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수시 지원
-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 나)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지속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학교에서 신청시 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4)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특수교육교원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연수 여름방학 중 추진
 -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적용 지원: 특수학교 3개교
-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도움자료 개발 보급
- 6)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운영: 2회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점검: 2학기 1회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민간위탁사업 운영 기관 및 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 강화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가)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지원

2) 행동중재 지원

- 가) 통합교육지원단(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시 행동지원 전문가단 방문 지원
- 나) 특수학교(급) 교사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방학중 대면 연수) 지원
- 다) 특수학교(급) 교사, 학부모 대상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2회

사. 방과후교육·늘봄 지원체계 강화

-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수요조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추가 지원
- 2)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가) 특수학교: 특수학교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시 계절학교 운영
 -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시 계절학교 운영
 - 다)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시 계절학교 운영[2기관(제주시, 서귀포시)]
- 3) 도내 특수학교 3개교 늘봄학교 운영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학년말 업무평가 1회 실시
-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교육(지원)청별 집합 연수 여름방학 기간 중 2일 실시
 - 나) 온라인연수 상시 지원
- 3) 사회복지무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가) 배치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 4) 치료지원 내실화: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점검 실시: 하반기 1회
- 5)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수시 지원
- 6)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내실화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연 2회 이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가)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 운영 내실화
- 2)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가) 학교내 장애학생(전공과) 일자리사업 운영: 취업으로 인한 수요 추가 발생시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운영
 -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내실화
- 3) 제주어린이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바리스타 직업체험교실 운영
- 4) 제주발달장애훈련센터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
- 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직업센터(위탁기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도내 특수학급 및 전공과 학생 취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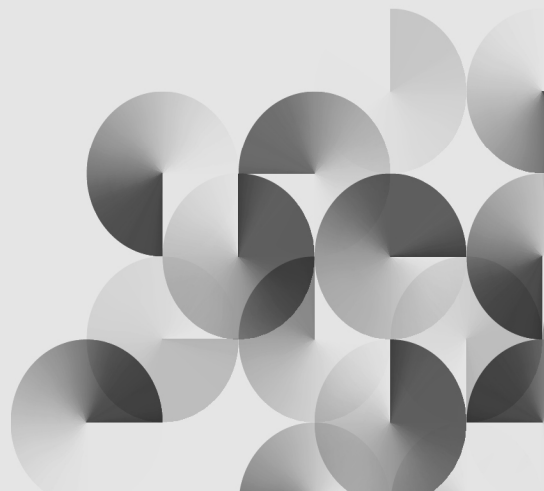


2024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부록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33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3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2024. 2. 27.>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시행일: 2025. 2. 28.] 제2조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2022. 10. 18.>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27.]

[시행일: 2025. 2. 28.] 제21조

-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 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 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24. 2. 27.>
- [시행일: 2025. 2. 28.] 제28조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 5. 29.>

-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 10. 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0. 18.>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4조 삭제 <2016. 5. 29.>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에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중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 5. 29.>]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부칙 <제18992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9.>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 7. 삭제 <2021. 4. 20.>
-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 29.>

-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 6. 21.>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2. 6. 28.]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4. 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목개정 2022. 6. 28.]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 5. 29.>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3. 4. 18.]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6. 28.]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6장 보칙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 1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023년 1월 1일
 -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2023년 1월 1일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3340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각 호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임명해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개정 2022. 6. 2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1.) [교육부령 제269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2. 6. 29.>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9호, 2022. 6. 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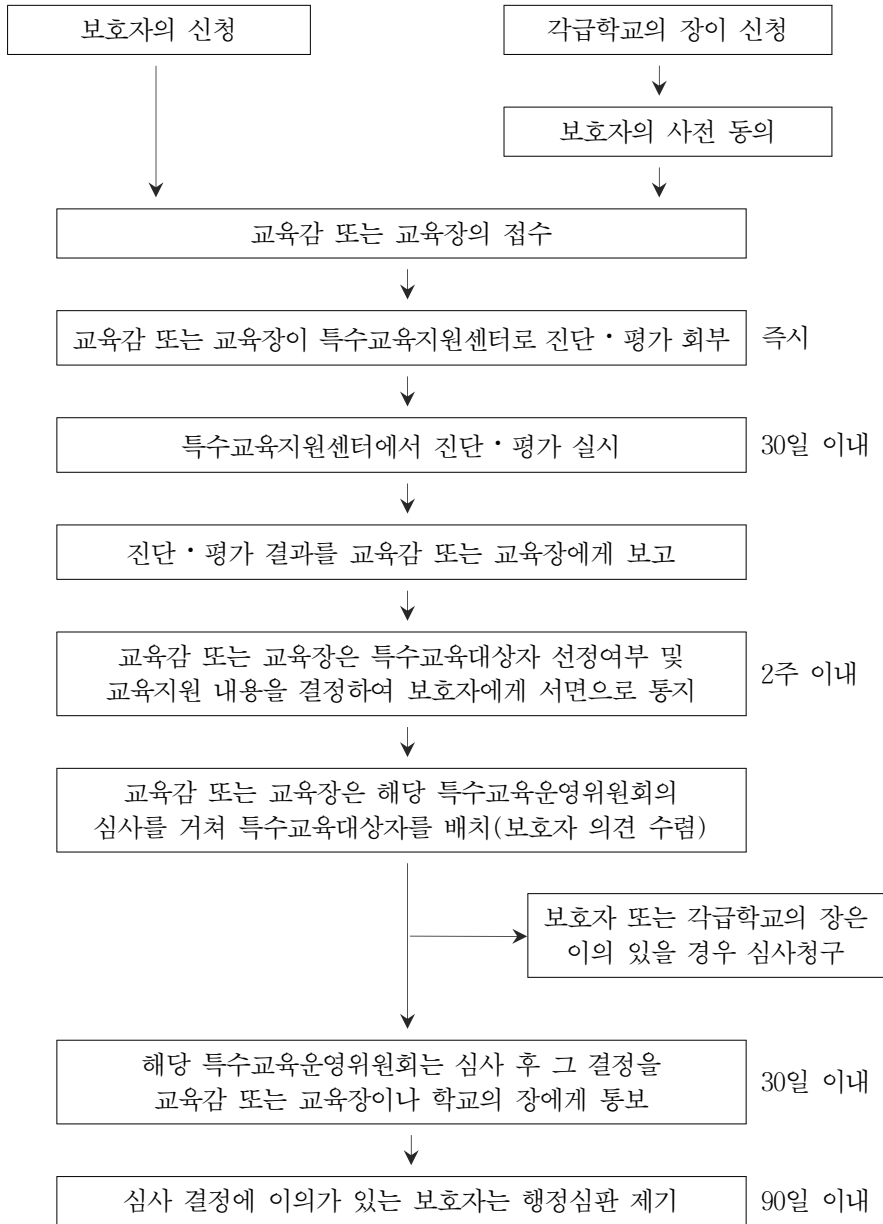
[별표] <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	--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3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4년 8월

발행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 203-6559

인쇄처: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드림사업단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풍덕골길 21-13
(우편번호) 30053
전화 044)862-2922 / Fax 044) 863-1923
